

국민의 삶과 농업의 발전에
연결하는 농업·농촌특별위원회

B

•

R

•

I

•

D

•

G

•

E

Break

농업·농촌에 대한
고정관념을 부순다

Relationship

국민·농민·정부의
융합적 관계를 지향한다

ICT

첨단기술을 기반한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그린다

Development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한다

Global

K-농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Environment

기후변화 대응, 환경친화형 농업과
쾌적한 농산어촌 환경을 추구한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제17차 위원회 -

2023. 7. 6.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17차 위원회

1. 개요

- 일시/방식 : '23. 7. 6.(목), 10시~12시 / 대면회의
- 장소 : 코리아나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5)
- 참석대상 : 위원장, 당연직위원, 위촉위원
- 주요내용
 - 제3기 위원 위촉장 수여식
 - 안 건
 - (심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안)
 - (심의)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확대 방안(안)
 - (심의) 기후·경제·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계획제도 개선(안)
 - (심의) 후쿠시마 관련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결의문(안)

2. 세부 일정(안)

일 정	주 요 내 용	비 고
10:00~10:05 (5')	○ 안내 및 국민의례	총괄기획팀장
10:05~10:10 (5')	○ 참석자 소개 및 성원 보고	총괄기획팀장
10:10~10:40 (30')	○ 3기 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단체사진 촬영	-
10:40~10:45 (5')	○ 위원장 인사말씀 및 개회선언	위원장
10:45~11:05 (20')	○ 특별 주제 발표 (김창길 위원) - “농어업·농어촌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와 시사점”	-
11:05~11:35 (30')	○ 안건 심의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안) -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확대 방안(안) - 기후·경제·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계획제도 개선(안) - 후쿠시마 관련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결의문(안)	사무국장 농수산분과장 산림특위장 김성호 위원
11:35~11:50 (15')	○ 위원회 기타활동 보고 * 정책연구용역 상반기 추진결과 보고	사무국장
11:50~12:00 (10')	○ 기타 사항 논의 및 폐회 - 논의 정리, 차기 본회의 일정 등	위원장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참고】 참석 대상 명단

위원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장	태	평
위 원	기획재정부장관	추	경	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	황	근
	해양수산부장관	조	승	환
	국무조정실장	방	문	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	유	경
	농협중앙회장	이	성	희
	산림조합중앙회장	최	창	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회장	이	학	구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이	승	호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이	숙	원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김	성	호
	한국수산회 회장	정	영	훈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	최	무	열
	청년농업인연합회 회장	서	인	호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회장	박	다	정
	건국대 식품유통공학과 교수	김	민	경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김	용	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김	종	덕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	김	창	길
	전남대 해양생산물리학과 교수	김	태	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김	한	호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류	방	란
	보성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문	병	완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우	수	영
	서울대 식품동물생명공학부 교수	이	기	원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	장	판	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한	두	봉

목 차

< 주제 발표 >

- 농어업·농어촌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와 시사점 1

< 심의 안건 >

- 제2023-2호 19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안)
- 제2023-3호 31
 -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활성화 방안(안)
- 제2023-4호 53
 - 기후경제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계획제도 개선(안)
- 제2023-5호 97
 - 후쿠시마 관련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결의문(안)

< 위원회 기타활동 보고 >

- 정책연구용역 상반기 추진결과 보고 105

제 17 차 위 원 회

주 제 발 표

농어업·농어촌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와 시사점

농어업·농어촌 정책 국민 인식조사 조사결과와 시사점

김 창 길 농어촌분과위원장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



목 차



농어업·농어촌 정책 국민 인식조사 개관



농어업·농어촌 정책 국민 인식조사 결과



인식조사 결과의 시사점

[I]

농어업·농어촌 정책 국민 인식조사 개관

1. 연구과제 추진 개요

■ 연구과제명

- 농어업·농어촌 정책 국민 인식조사

■ 연구수행 기관

- GS&J 인스티튜트(책임자: 서진교 원장)

■ 연구기간

- 2023.3 ~ 2023. 5(3개월)

■ 연구목적

- ▶ 농업인과 국민이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해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어떤 정책을 기대하는지 등에 대한 조사분석
-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따른 새로운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 정립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조사 범위 및 방법

- 조사 대상을 농림어업 종사자, 일반 국민, 전문가 등 3개 패널로 구분하여 접근

<설문조사 방법 개요>

구분	농림어업 종사자		일반 국민	전문가
	농업인	임.어업인		
조사 대상	현재 농업을 주 소득원으로 하는 국민	현재 임.어업을 주 소득원으로 하는 국민	만 19세 이상 성인 남·여	농·어업 관련 전문가
조사 방법	KREI의 설문 결과를 활용	현장 방문 면접 조사 온라인 조사	온라인 패널 조사	웹, 이메일 등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조사 독려)
표본의 수	850명	150명	1,000명	200명

자료: 서진교 외 3인, 「농어업·농어촌 정책 국민 인식조사」, GS&J인스티튜트, 2023. p.3.

5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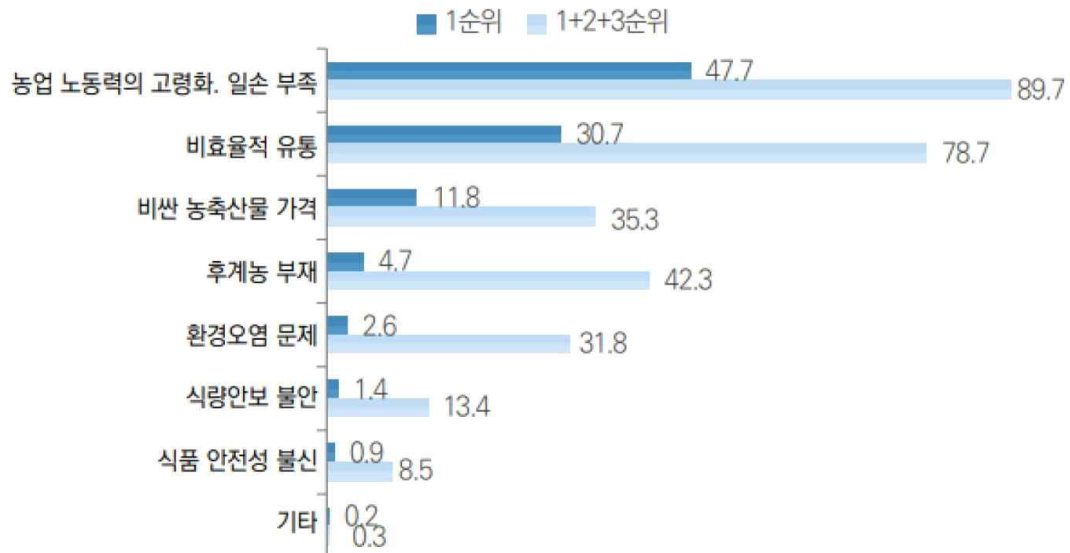
농어업·농어촌 정책 국민 인식조사 결과

1. 일반국민의 인식조사 결과

일반국민

▶ 우리 농업의 가장 큰 문제는?

- 농업노동력의 고령화 및 일손부족(47.7%), 비효율적 유통으로 인한 비싼 농산물 가격(42.5%) 등을 큰 문제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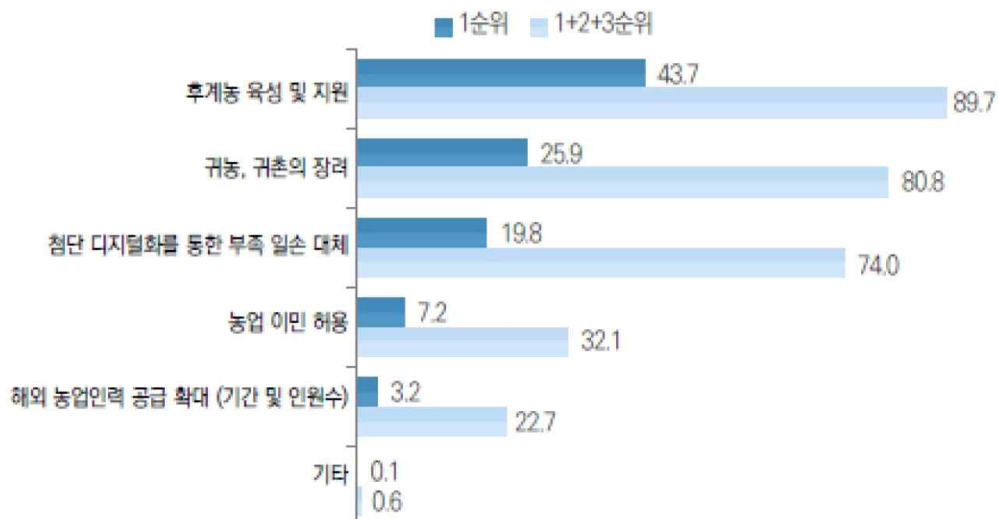


7

일반국민

▶ 농업노동력 고령화, 일손부족 문제의 해법은?

- 후계농의 육성지원(43.7%), 귀농·귀촌의 장려(25.9%), 디지털농업(19.8%), 농업이민 허용(7.2%), 해외 농업인력 공급 확대(3.2%) 등으로 제시



8

▶ 비싼 농산물 가격 문제 해결을 위해 역점을 둘 분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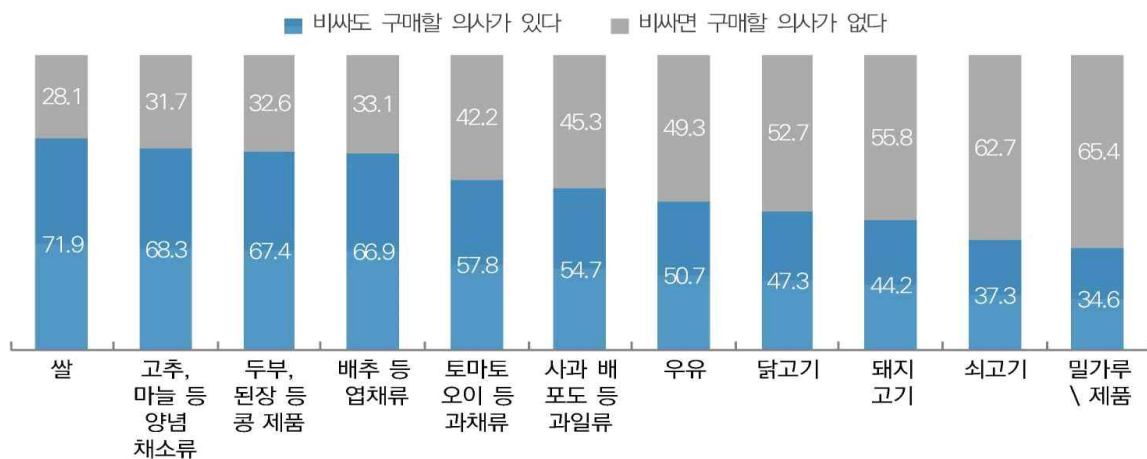
- **과도한 유통 마진 축소(54.1%)**, 해당 품목의 수입확대(14.7%), 생산성 높여 국내공급 확대(11.3%), 정부 비축제 운용(10.2%) 등 제시



9

▶ 국내산 농식품에 대한 지불의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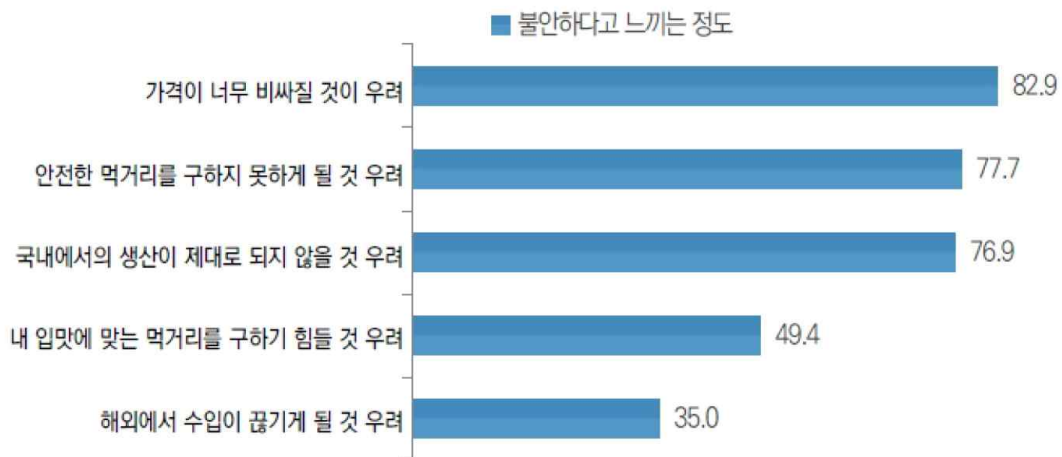
- **안전성과 신선도, 품질 등의 이유로 수입 농산물보다 비싸도(약 20%) 국내산을 구입할 의사는 분명하며, 특히 쌀, 고추·마늘 양념채소류 등의 순으로 구매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10

▶ 식량안보에 대한 인식은?

- 식량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경우 61.4%, 그렇지 않은 경우 22.8%
- 불안감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격이 너무 비싸질 우려(82.9%)**, 안전한 먹거리를 구하지 못하게 될 것 우려(77.7%) 등으로 제시



11

2. 농어업인 인식 조사결과

▶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농림어업정책**은?

- 농림어업인 모두 **적정한 소득·생활수준의 보장**을 역점 추진 정책으로 제시 → **농림어가 소득안정 정책 확대 추진 필요 시사**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 농업인의 적정한 소득과 생활수준 보장 69.5% • 식량의 안정적 공급 보장 7.1% • 일손부족 문제 해결 6.2% • 농업의 성장 잠재력·경쟁력 제고 6.1% • 농업재해보험 확대, 가격안정화 5.6%	• 임업인의 적정한 소득과 생활수준 보장 72% • 산림 휴양 및 여가 활동 기능강화 14% • 임산물 및 목재의 안정적 공급 8.0% •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탄소중립 이행 4.0% • 임업 일손부족 문제 해결 2.0%	• 어업인의 적정한 소득과 생활수준 보장 52.0% • 수산 일손 부족 문제 해결 17.0% • 안전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보장 15.0% • 어업재해보험 확대 및 수산물 가격안정 7.0% • 수산업의 성장잠재력 및 경쟁력 제고 4.0%

12

▶ 불만족하는 농림어업 정책은?

- 농림어업인 모두 **현장 일손 부족 문제**를 가장 큰 제시
→ 농어촌 인력문제 해소가 **현안 과제로 인식하고 과감한 대응 필요 시사**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 일손 부족 문제 67.4% • 농업인의 적절한 소득과 생활수준 보장 59.6% • 농업의 성장 잠재력 및 경쟁력 제고 55.5% • 농업재해보험 확대, 가격안정화 49.3% • 식량의 안정적 공급 보장 5.6%	• 임업 일손 부족 문제 해결 74.0% • 임산물 및 목재의 안정적 공급 44.0% • 임업인의 적절한 소득과 생활수준 보장 42.0% •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탄소중립 이행 30.0% • 산림 생태계 보전 26.0%	• 수산 일손 부족 문제 해결 60.0% •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대응 57.0% • 어업 후계인력 확보 및 창업지원 35.0% • 어업재해보험 확대 및 수산물 가격안정 31.0% • 어업인의 적절한 소득과 생활 수준 보장 28.0%

13

▶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농어촌 정책**은?

- 농업부문은 **농촌지역 인구감소(소멸) 대응**, 어업부문은 **어촌 지역의 복지 및 의료시설 개선** 대응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
→ **농어업위와 삶의질위원회와 통합 후 적극적으로 대응 해야할 방향 시사**

농업인	어업인
• 농촌지역 인구감소(소멸) 대응 35.9% • 농촌지역의 복지 및 의료시설 개선 33.9% •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9.9% • 농촌지역 주택, 상하수도 등 거주시설 개선 5.5% • 농촌지역의 경관보전 4.5% • 농촌지역이 교육 및 문화시설 개선 3.9%	• 어촌지역의 복지 및 의료시설 개선 51% • 어촌지역의 인구감소(소멸) 대응 21% • 어촌지역의 교통 및 편의시설 개선 11% • 어촌지역의 일자리 창출 8.0% • 어촌지역의 경관보전 4.0% • 어촌지역의 교육 및 문화시설 개선 3.0%

14

▶ 농림업 소득증대를 추진 방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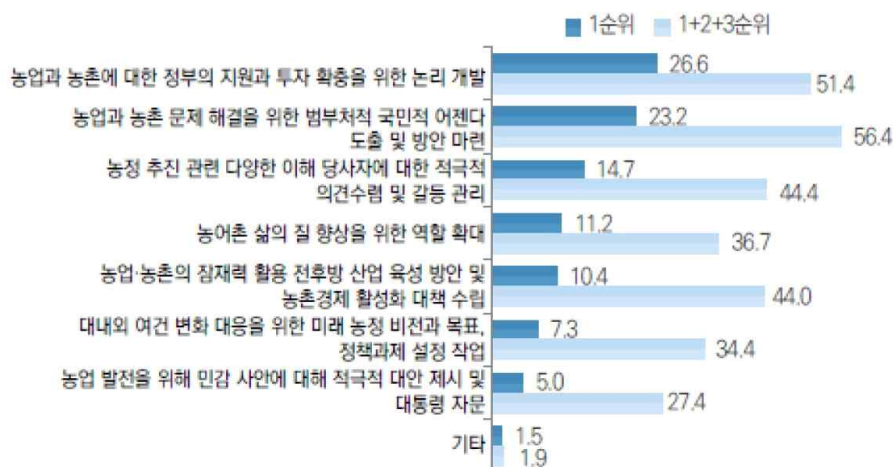
- 농업부문은 **고소득 작목전환**, 가공·판매유통 강화, 생산자 조직화
- 임업부문은 **민박·휴양·관광시설 추가 운영**, 가공·판매 사업 병행
- **농가·농업소득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검토 필요 시사**

농업인	임업인
• 고소득 작목전환 33.5% • 가공 및 판매 유통 강화 19.6% • 생산자 조직화를 통한 판로 확대 14.5% • 경영규모의 확대 14% • 투입시설의 첨단디지털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10.6% • 민박, 체험농장, 휴양시설 등을 추가 운영 4.5%	• 민박, 휴양, 관광시설 추가 운영 38.0% • 가공 및 판매 사업 병행 32.0% • 다른 고소득 작목으로 전환 14.0% • 경영규모의 확대 8.0% • 투입시설의 첨단 디지털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8.0%

15

▶ 농어업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지는?

- 농어업위에 대한 인식: **알고 있다 30.5%**, 모른다 43.1%
- 농어업위의 중점 추진 역할로 **농업과 농촌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투자 확충을 위한 논리개발**, **범부처적 국민적 어젠다 도출 및 방안 마련** 등으로 제시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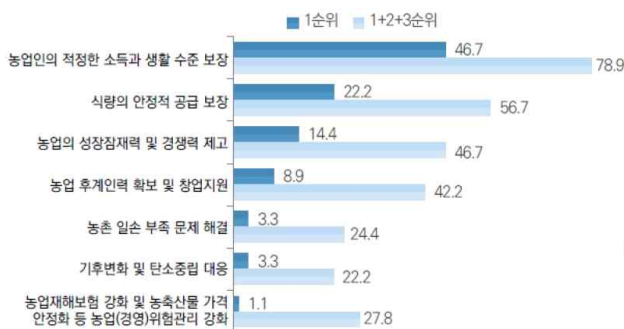
3. 전문가의 인식 조사결과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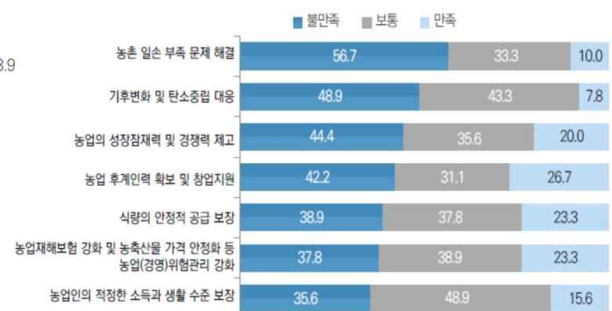
▶ 농어업정책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농어업 정책으로 **농업인의 적절한 소득과 생활수준 보장**, 식량의 안정적 공급
- 농어업정책의 경우 **농촌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가장 큰 불만족**,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대응, 농어업의 성장잠재력 및 경쟁력 제고

<농어업정책에 대한 인식>



<농어업 정책에 대한 평가>



17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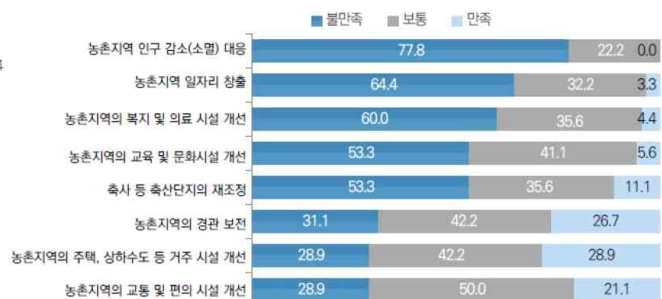
▶ 농어촌정책에 대한 인식은?

-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농어촌 정책으로 **농촌지역 인구감소(소멸) 대응**(48.9%), 농촌지역의 복지 및 의료시설 개선(14.4%) 등으로 제시
- 농어촌정책 평가에서도 **농어촌지역 인구감소(소멸) 대응**,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등에 **불만족이 큰 것으로** 나타남.

<농어촌정책에 대한 인식>



<농어촌정책에 대한 평가>



18

▶ 농어업의 혁신 주체와 탄소중립, 비농업기업 진입에 대한 전문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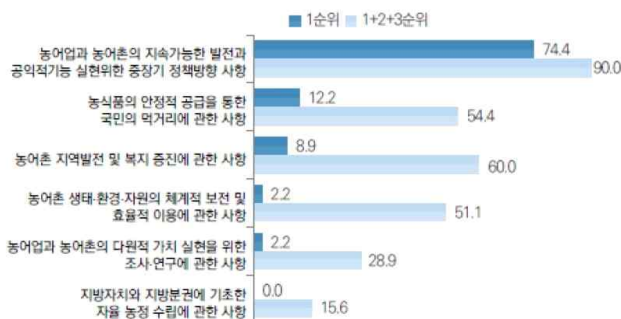
- 농어업의 성장을 위해 **내부 혁신이 필요**하다는데 대부분이 동의(93.3%), **내부 혁신의 주체로** 혁신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33.3%), **청년농(31.0%)** 등으로 제시
- 농업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 스마트 정밀농업으로 전환에 동의(90.0%)**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업생산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기술과 자본,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는 형식의 비농업기업의 농업계 진입에 대해 동의(76.7%)**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농업인은)** 생산에 참여하지 않고 기술과 자금, 노하우, 투입재 지원 등의 방식으로 진입에는 **대체로 동의(66.1%)**
(예시) 서산특구 그린바이오 스마트시티 내 청년농·스마트팜 육성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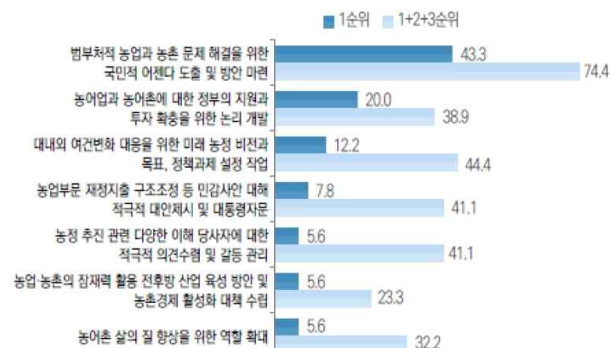
▶ 농어업위의 중요한 미션?

- 전문가들의 농어업위의 중요한 기능으로 **중장기 정책방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으로 범부처적 농업·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 아젠다 도출(43.3%), 투자 확충 논리개발(20.0%), 미래농정 비전·목표·정책과제 설정(12.2%)**

<농어업위의 중요 기능>



<농어업위의 역점 추진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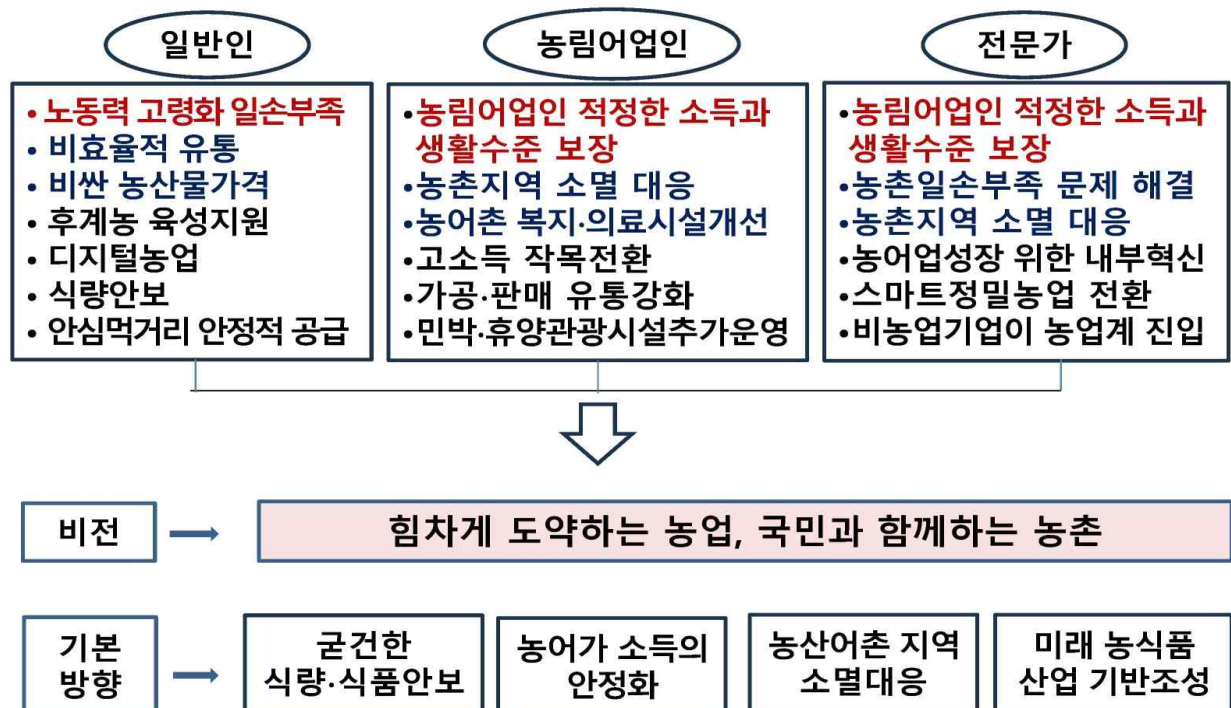


20

[III]

인식조사 결과의 시사점

1. 비전과 기본방향



2. 정부 중장기 중점 추진과제

기본방향	추진과제
굳건한 식량·식품안보 확보	• 식량자급률·자주율(해외생산 포함) 제고 •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 농수산물 유통구조 및 수급관리 체계 개선
농림어가 소득의 안정화	• 농업소득의 획기적 증대 방안 • 고소득 타작물전환을 위한 생산 및 금융 여건 정비 • 재해·이상기후 등의 위험관리를 통한 농업경영 안정화
농산어촌 지역 소멸 대응	•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림어촌공간 재구조화 • 관계인구, 생활인구 등을 활용한 농촌활성화 • 농산어촌 융복합산업 및 농림어촌관광 활성화
미래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	•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디지털농업으로 전환 • 혁신성장을 주도할 청년농업인의 지속적 육성 •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23

3. 농어업위의 핵심과제

■ 농림어가 소득 안정화

- 농업인 소득정보 기반 정책 고도화, 농업 금융투자 시스템의 개선, 비품고가역 등을 통한 획기적 소득증대 방안 모색
- 전략작물직불제 추진으로 수입의존 작물 생산기반 조성, 첨단기술 접목을 통한 생산성 향상

■ 농림어업 인력의 안정적 공급

- 출입국 및 이민제도 개선으로 획기적인 외국인력 도입 방안 모색

■ 농산어촌 지역 소멸 대응

- 농어업인삶의질향상위원회 통합으로 체계적인 대응방안 추진
- 관계인구(지방에 제2의 거주지 소유), 생활인구(통근·통학·관광 등 지역 방문 체류) 등 지원 확대로 농산어촌 활성화

■ 미래 농식품 신성장동력 창출

- 규제개선 및 융복합 기술 접목을 통해 식품산업 육성
- 주요 수출산업으로 발전을 위한 성장 비전 제시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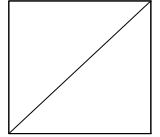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25-e

제 17 차 위 원 회

심 의 안 건
(4 건)

공 개



의안번호	제2023-2호	의 결 사 항
심 의 연 월 일	2023. 7. 6. (제 17 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 출 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장 태 평
제출 연월일	2023. 7. 6.	

1. 의결주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결

2. 개정이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3. 5. 9.)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위원장이 지명 하도록 변경되었기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가. 사무국장과 중복되는 직위인 부국장 관련 사항을 정비 (안 제9조 제3항 및 제4항, 안 제10조제2항)
- 나. 향후 농어업인 삶의질위원회 통합 대비 및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 (안 제10조제2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운영세칙)

*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1) 및 개정안 전문(붙임2)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 한다.

제9조제4항 중 “국장, 부국장 외에”를 “국장 외에”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사무국장, 사무부국장 및”를 “사무국장 및”으로 하고, “10명 이내로”를 “15명 이내로”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5장 사무국 제9조(구성) ① ~ ② (생략) ③ 사무국에 부국장을 두며, 부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④ 사무국은 <u>국장, 부국장 외에</u>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단체·연구소 등에서 파견된 직원 및 별도로 채용된 전문임기제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⑤ ~ ⑥ (생략) 제6장 운영위원회 운영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생략)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분과위원장, <u>사무국장, 사무부국장</u> 및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u>10명 이내로</u> 구성하며,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을 겸직한다. ③ ~ ⑤ (생략)	제5장 사무국 제9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④ ----- <u>국장 외에</u> ----- ----- ----- ----- -----.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6장 운영위원회 운영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사무국장 및</u> ----- ----- -- <u>15명 이내로</u>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2023. 7. 00.

제정 2019. 6. 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제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집 및 운영

2. 위원회의 안건 결정

3. 위원회의 의사 진행, 조정 및 결정

4.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대행하거나, 위원장이 지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 1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사전에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상정에 앞서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안건내용을 검토하게 하거나 조사·연구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기 개최하는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법 제3조제3항제1호의 당연직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안건 제출) ①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안건의 보고는 그 안건을 발의한 자가 한다. 다만 발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그 중 1명을 대표로 선정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분과위원회

제5조(구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의 분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분과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단체의 관련 전문가
2. 소비자·시민사회단체, 생활협동조합 등의 관련 전문가
3. 학계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4.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관련 분야 전문가

② 분과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분과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분과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은 분과위원이 법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분과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소분과 구성 및 운영) ① 분과위원회는 특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내 소분과를 둘 수 있다.

- ② 소분과의 장(이하 "소분과장"이라 한다)은 소관 분과위원장이 분과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 ③ 소분과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분과위원회에서 정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특별위원회

제7조(구성 및 운영 등) ① 특별위원의 임기는 각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 ② 기타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③ 위원장은 특별위원이 법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④ 특별위원회는 회의 시 참석자, 논의사항 등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 ⑤ 특별위원장은 특별위원회 논의사항을 수시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사무국

제8조(기능) 법 제9조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협의안건의 기획 및 정책개발
2. 위원회 개최 및 회의자료 준비
3. 분과·특별위원회 개최 및 회의자료 준비

4. 위원회, 분과·특별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협의·조정
5. 각 위원에 대한 회의 자료의 배포
6. 위원회, 분과·특별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고
7.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평가
8.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구성) ① 사무국은 총괄기획팀, 농어업정책팀, 농어촌정책팀, 농수산물식품팀, 대외협력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사무국장은 제8조에 따른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자문 및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사무국에 부국장을 두며, 부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사무국은 국장, ~~부국장~~ 국장 외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단체·연구소 등에서 파견된 직원 및 별도로 채용된 전문임기제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④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사무보조, 번역, 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둘 수 있다.

⑤ 기타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 운영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분과위원회 간 협의·조정과 의사일정 협의 및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분과위원장, ~~사무국장, 사무부국장~~ 사무국장 및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10명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을 겸직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사무국의

총괄기획팀장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논의사항 등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11조(경비집행) ① 위원회 위원, 분과위원, 특별위원 및 전문가 등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조사·연구·자문에 대한 수당·여비·사례금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연도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조사·연구·자문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직책수행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위원회 파견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인사 및 복무 등) ①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사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 및 복무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회는 농어업·농어촌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복지 향상 등에 공훈이 많은 자(단체를 포함한다), 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무국의 직원에 대하여 훈장·포장·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의 추천 또는 상장·부상의 수여 등을 할 수 있다.

제13조(그 밖의 세부사항) 이 운영세칙의 시행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이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19.6.18.>

(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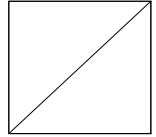
(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7.00.>

(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	
담당자	이행은 총괄기획팀장
연락처	전 화 : 02-6260-1211 E-mail : spica0040426@korea.kr

공 개



의안번호	제2023-3호	의 결 사 항
심 의 연 월 일	2023. 7. 6. (제 17 회)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활성화 방안(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 출 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 위원장)	장 판 식
제출 연월일	2023. 7. 6.	

1. 의결주문

-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결

2. 제안이유

- 어린이집 급식 문제 개선 및 국정과제(46번-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추진을 위해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확대’ 관련 정책 제안
- 「학교급식법」 개정(’22.6.), 지자체별 지원 확대 등으로 인해 유치원-어린이집, 어린이집 간의 급식 격차 심화
- 최근에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성장기 영유아의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해서는 어린이집 급식의 질 개선, 친환경 전환 등이 필요하다는 학부모들의 요구 급증
- 모든 아동에게 공정한 발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 급식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

3. 주요내용

- (시범사업) 어린이집 학부모의 요구가 높고,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친환경 쌀’ 우선 전환 실시, 이를 위한 제도 마련
- (지원 체계 합리화) 동일 연령의 아이들이 동일한 교육비를 지원 받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 추진 및 제도 개선 필요
- (플랫폼 활용) 안정적 배송, 식재료의 안전성을 이유로 어린이집이 선호하는 기존 대·중소기업 유통 채널과 친환경식재료 공급에 특화된 공공급식 통합플랫폼을 함께 활용, 장기적으로 통합플랫폼 구축

4. 참고사항(관계부처 협의 등)

- 어린이집 급간식비 · 조달체계 현황 분석과 친환경 급식 전환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22.10.19)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 농특위 주관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22.11.11., 국회의원회관)
 - * 정희용 의원 주최, 송언석 의원, 구자근 의원, 배현진 의원,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복지부, 농식품부 참석
- 관계부처 의견수렴 · 협의(2023.6.7.~6.15.)
 -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대면 및 서면 검토
- 농특위 농수산물식품분과위원회 검토 및 의결(2023.6.20.)
 -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워킹그룹 회의, 제18차 농수산물식품분과위원회 의결

※ 본 의안 의결 이후 해당 부처 및 기관과 이행계획 등을 위한 협의 예정

5. 첨부

-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활성화 방안(안) 요약 1부
-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활성화 방안(안) 전문 1부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활성화 방안(안) 요약

- (추진배경) 부실 급식, 유치원과의 격차 등 어린이집 급식 관련 문제가 지속적 발생함에 따라, 정부도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국정과제 46)'을 위해 각종 정책 추진 중
 - 모든 아동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 급식 질 개선 및 친환경 급식 전환 등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
- (현황) 어린이집은 정부 지원 보육료에 급간식비가 포함되어 함께 지급되고, 교사의 급간식비도 포함되어 함께 책정
 - 어린이집은 식재료의 품질과 안정적이고 원활한 구매 기준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식재료를 조달 중
- (형평성) 동일 연령의 영·유아가 소속된 기관의 성격 및 지역에 따라 차별화된 급간식을 제공받게 되는 불평등 발생
 -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식재료 조달·관리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에 있어 공급의 안정성과 품목의 다양성 확보가 곤란
- (목표)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확대로 어린이 건강 먹거리 보장
 - 단기과제① 친환경 쌀 전환 시범사업 실시
 - 학부모의 요구가 높은 '친환경 쌀' 우선 실시, 제도 마련 및 예산 확보
 - 단기과제② 보육료와 급간식비 지원 체계 합리화
 - 급간식비 별도 지원, 집행 점검 등 유치원 및 학교급식과의 격차 최소화
 - 단기과제③ 유통업체 및 기존 플랫폼의 활용
 - 급식재료 안심구매제도 및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등 수급체계 다양화

※ 중·장기 제언 과제

- ① 친환경 식재료 구입 지원 확대
 - 친환경 식재료 구입 시 차액 지원 품목 단계적으로 확대
- ② 대체조리원 등 운영 지원 확대
 - 급간식의 질 제고와 안정적 공급을 위해 인건비 등 추가적 지원 방안 검토
- ③ 공공급식 플랫폼 확대·운영
 - 어린이집이 윈스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활용 협조 방안 마련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활성화 방안

2023. 7.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목 차

I. 추진 배경	40
II. 현황 및 문제점	41
1. 현황	41
2. 문제점	44
III. 목표 및 추진방안	45
IV.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46
1. 단기 과제	46
2. 중·장기 제언	48
V. 향후 계획	49
[참고 1] 과제별 담당 부처	50
[참고 2] 시·도 급간식비 지원사례 및 조달체계	51

I. 추진 배경

- 부설 급식, 유치원과의 차이 발생 등 어린이집 관련 급식 문제가 지속적 발생함에 따라, 정부도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국정과제 46)'을 위해 각종 정책 추진 중

* 보육교사 지원을 위한 임금체계 정비('23~), 급간식비 지원 확대,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 어린이집 공간 개선('23~), 공공보육 이용 확대 추진 ('27)

- 하지만 대부분 급간식비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인 어린이집 급식 공급체계에 대한 대책은 다소 미흡

- 「학교급식법」 개정('22.6.), 지자체별 지원 확대* 등 급식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유치원-어린이집, 어린이집 간의 급식 격차 심화

* (현금 예) 서울(10~14.4천원/월), 전북(5~7), 경북(9.5), 제주(10), 광주(300~600원/일)
(현물 예) 경기 안양시 쌀 현물(163원/일), 아산시 쌀 현물(180원/일)

- 유치원(원아 50인 이상)이 「학교급식법」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어린이집 급식의 질(質)이 상대적으로 저하

- 어린이집의 유형, 운영 지역 등에 따라 설정한 급·간식 단가의 격차가 커, 어린이집 간 급식 차등도 심각한 상황

* 1일 최대 4,265원의 단가 차이(서초구 직장 6,285원, 가정 2,020원) 발생('22.11, 숙명여대)

- 최근에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어 성장기 영유아의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해서는 어린이집 급식의 질 개선, 친환경 전환 등이 필요하다는 학부모들의 요구 급증

* 부천시 자체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 92%가 친환경 학교급식 실시에 만족

- 일부 지자체는 학부모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경기도), 학부모 친환경 급식 요리 교실(의왕시) 등을 개최

⇒ 모든 아동에게 공정한 발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 급식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

II.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 어린이집 급식 관련 기본 현황

- (어린이집 현황) 전국 어린이집 33,246개소(국·공립 5,437개, 민간 10,603개, 가정 어린이집 13,891개)에 총 1,184,716명의 영유아 재원 중('21년 기준)
- 저출산으로 전체 어린이집과 영유아 수는 감소 추세이며, 보육 영유아의 62% 이상(74.5만 명)이 소규모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재원

(단위: 개소,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어린이집	계 (전년대비, %)	39,171(-2.7)	37,371(-4.6)	35,352(-5.4)	33,246(-6)
	국·공립	3,602	4,324	4,958	5,437
	민간	13,518	12,568	11,510	10,603
	가정	18,651	17,117	15,529	13,891
	기타	3,400	3,362	3,355	3,315
보육아동	계 (전년대비, %)	1,415,742(-2.4)	1,365,085(-3.6)	1,244,396(-8.8)	1,184,716(-4.8)
	국·공립	200,783	232,123	253,251	268,967
	민간	711,209	664,106	578,196	535,428
	가정	302,674	273,399	230,444	208,842
	기타	201,076	195,457	182,505	171,479

- (급간식비 현황) 어린이집은 정부 지원 보육료에 급간식비가 포함되어 함께 지급되고, 교사의 급간식비도 포함되어 함께 책정

*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은 영아 1,900원, 유아 2,500원('22년, 1인당 1급식·2간식 기준)

** 유치원은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분리되어 제공되고, 교사 급량비 역시 별도 책정되어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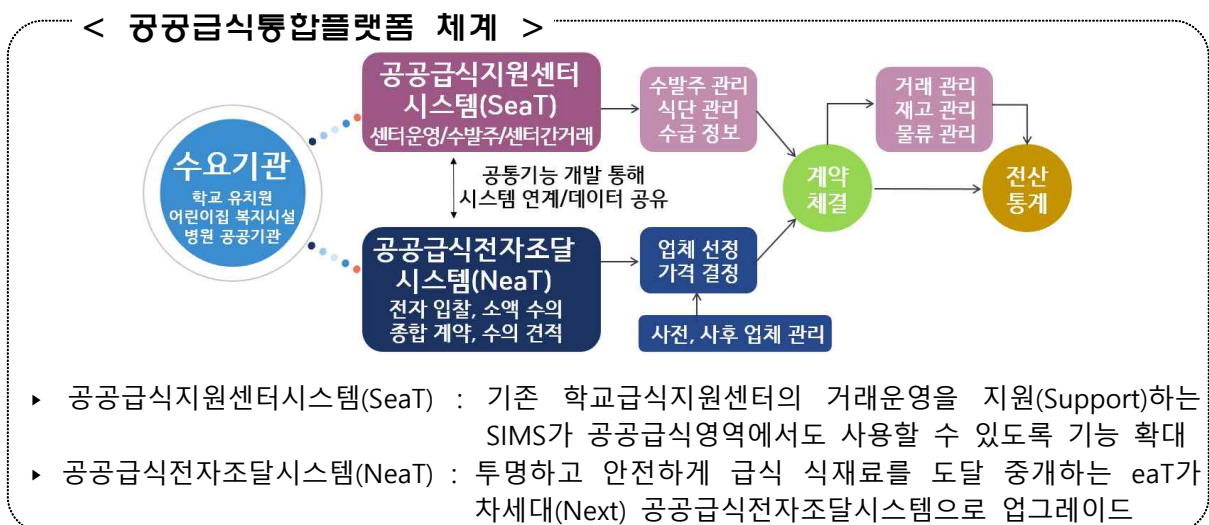
- 일부 지자체는 물가 상승 보전, 친환경 식재료 공급 등을 위해 추가로 급간식비를 지원하는 '특수보육시책'*을 추진 중

* 13개 시도의 133개 시·군·구는 급식비 지원,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 지원 및 현물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142개) 진행

- (운영) 어린이집 영유아의 정원만을 고려한 급간식비를 산정하나, 대부분 보육교직원(교사, 조리원 등)의 급간식비 포함하여 지출
 - * 지자체별 보육교사 급식비 지원(대도시 58.9%, 중소도시 2, 읍면지역 1.2)
- 질 높은 급간식 제공을 위한 영양 관리와 식단 관리, 조리를 담당할 전문 인력 확보, 처우 개선 및 결원 시 대체 인력 지원 필요

□ 어린이집 식재료 조달체계 현황

- (업체 선정기준) 어린이집은 식재료의 품질과 안정적이고 원활한 구매 기준을 우선시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식재료를 조달 중
 - * '어린이집 급식 현황 연구(2022, 숙명여대)' 조사 결과, 식재료는 우수한 품질을 우선순위로 하고, 시간과 노력 절감, 소량 식재료 구매 가능, 관련 서류 구비 준비 순으로 선정
- 소규모 식재료를 구입하는 어린이집 특성에 따라 ①식재료 공급 대기업, ②친환경 전문업체, ③소매 유통업체를 주로 활용
 - * 어린이집은 안정적·정확한 배송과 식품위생법 기준 준수, 사고 시 즉시 대응, 대체 조리인력 지원 등을 위해 특히 대기업 공급업체 선호
- (플랫폼 활용) 일부 어린이집이 농식품부가 구축한 '공공급식지원 센터시스템'(SeaT)'을 활용하고 있으나, 특화된 플랫폼은 부재
 - * ICT 기술을 활용한 선진화된 급식 식재료 거래시스템으로 전국 학교의 80%와 경북·경남·제주의 34개 '급식지원센터'가 활용 중(농식품부 구축, aT 운영)
- SeaT의 경우 간편거래 기능(발주계약, 매입/재고관리, 긴급 발주, 다양한 보조금 정산 방법 등)이 있어 어린이집과 같은 소규모 기관이 활용 가능
 - * 제주도 전체 어린이집 거래 규모: ('16)84억원→('17)119→('18)121→('19)131→('21)150



□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현황

- (이용 현황) 친환경 식재료의 이용률은 높으나 품목의 제한 등으로 전체 식품비 중 친환경 식재료비의 비중은 현저하게 저조
 - * 어린이집의 94.6%가 한 품목 이상 친환경 식재료를 이용하나, 전체 식품비에서 친환경 식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43.4%에 불과('15, 영남대 조사)
 - 대다수 어린이집이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용할 의향이 있으나, 품목의 한계와 급간식비 단가 상승으로 실제 이용은 저조
 - * 조사 어린이집 82.7%가 친환경 식재료 이용을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19, KREI)
 - 또한, 안정적으로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해줄 수 있는 시스템의 부족으로 지속적인 친환경 식재료 사용이 곤란
- (지자체 지원)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원(경기 부천시), 지역내 친환경농민과의 협업(충남 홍성군) 사례 등이 있으며, 지역별 차등 발생
 - 서울시는 13개 구와 농촌 지자체가 연대하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을 통해 어린이집 급식용 식재료를 직거래 수급(~23년 말까지)

[제주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 위탁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친환경전문업체(생협 등)를 통한 식재료 조달
- 원아 100인 이하 어린이집으로 영양사 채용 의무가 없으나 자체 예산으로 채용
 - * 1일 단가 3,303원(친환경 식재료 이용 비율 50%, 직접 조리 비율 62%)

구분	영유아	원장	교사	장애전담	연장보육	누리지원	보조	조리원	운전기사
인원	92	1	8	3	3	1	1	2	1

[경기도 부천시(유치원)]

- (광역)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차액 지원
 - (조건) 사업 대상 학교가 지원 품목(도 친환경농산물, G마크, GAP, 유기가공식품, 경기미, 기타)을 식재료로 이용하는 경우 지원
 - [농산물] 학교공급가격의 30~50% [가공식품] 학교공급가격의 15~30%
 - [경기미] 공급가격과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학교)의 차액 지원
 - * 지원한도(20kg): 유기농 20,000원, 무농약 19,000, G마크・GAP 12,000
- (기초)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유기농 김치, Non-GMO 가공식품

- ① **형평성 문제** : 동일 연령의 영·유아가 소속된 기관의 성격 및 지역에 따라 차별화된 급간식을 제공받게 되는 불평등 발생

<유치원 ↔ 어린이집>

- 유치원은 교육비 외 시도교육청(지자체)에서 급식비가 별도 지원되나 어린이집은 보육료에 통합 책정되어 인건비 등 운영비에 우선 배정되는 근본적·구조적 문제점 존재
- 원아가 50인 이상인 유치원은 「학교급식법」과 지자체 조례로 우수 식재료 무상급식이 지원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차별 심화

<어린이집 ↔ 어린이집>

-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등에 대한 중앙 정부의 지원이 없어 개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상이하게 지원, 지역별 급식의 질 차이 발생

* (현금 예) 서울(10~14.4천원/월), 전북(5~7), 경북(9.5), 제주(10), 광주(300~600원/일)
(현물 예) 경기 안양시 쌀 현물(163원/일), 아산시 쌀 현물(180원/일)

- 어린이집의 운영 주체*에 따라 급간식비 산정, 영양사 및 조리원 배치가 상이해서 동일 지역 어린이집 간에도 차등 발생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직장, 가정, 협동, 민간으로 구별(「영유아보육법」 제10조)

** 통상 직장어린이집이 민간·가정어린이집 보다 급간식비가 높고, 조리사 자격증 보유자가 조리

- ② **안전성 문제** :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식재료 조달·관리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에 있어 안전·위생 문제 발생 가능

- 소량 다품목을 발주해야 하는 특성상 우수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업체 섭외가 곤란하고, 소규모 업체에 개별 주문을 통한 식재료 확보로 공급의 안정성과 품목의 다양성 확보가 곤란

- 「학교급식법」에서 의무적용되는 HACCP 기준, 친환경 기준* 등이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권고'로 안내되어 안전·위생상 위험 상존

* 제4조(학교급식 대상)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제2조 제2호) 「초·중등교육법」의 학교(제2조 제1호부터 제4호, 제52조, 제60조의 3) 등

Ⅲ. 목표 및 추진방안

목표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확대로 **어린이 건강 먹거리 보장**



기본 방향

- ❖ 단계적 친환경 식재료 구입 예산 지원으로 **점진적 전환 유도**
- ❖ 합리적 급간식비 체계 개선으로 **급간식의 질 제고**
- ❖ 식재료 공공조달체계 강화로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접근성 보장**



추진전략 및 과제

[추진전략]

단기과제는 즉시 추진하고, 중·장기 제안은 단계적으로 정책화 도모

단기 과제

1. 친환경 쌀 전환 시범사업 실시
2. 보육료와 급간식비 지원 체계 합리화
3. 유통업체 및 기 구축 플랫폼 활용



중·장기 제안

1. 친환경 식재료 구입 지원 확대
2. 대체조리원 등 운영 지원 검토
3. 공공급식 플랫폼 확대·운영

IV. 추진전략 및 세부 과제

1 단기 과제

① 친환경 쌀 전환 시범사업 실시

↳ 어린이집 학부모의 요구가 높은 '친환경 쌀' 우선 실시 기반 마련

○ 어린이집과 학부모의 전환 요구가 높고,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지역산 또는 친환경 쌀 지원사업 추진 필요

* 1순위 '쌀(65.22%)', 2순위 '채소류(34.78%)'와 '잡곡류(21.74%)', 3순위 '과일류(39.13%)', 5순위 '축산물(26.09%)', 6순위 '수산물(21.74%)'

-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친환경(지역산) 쌀' 전환 지원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적인 전환·확산 추진

* 어린이집 급식 관리와 관련된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또는 조례 활용

<친환경쌀 전환 시 필요 금액 추정(안)>

- 1인 1식 당 쌀 소비량은 55g, 지원단가는 친환경쌀 가격 1g당 3.54원('22년 학교급식 공급단가)과 일반쌀 2.56원('22년 aT 소비자 평균가격)의 차액 0.98원
- 어린이집 영유아 수는 '21년 1,185천명 기준 최근 3년간('19~'21) 감소율(5.8%) 적용

추정액	$55g(1식) \times 0.98(원) \times 1,040천명(영유아수) \times 20(일) \times 12(개월)$	13,453,440,000원
-----	--	-----------------

② 보육료와 급간식비 지원 체계 합리화

↳ 유치원 및 학교급식과의 격차 최소화를 위한 제도 마련

○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사업을 통해 어린이집 대상 유아반 급식비 추가 지원 추진

* '23년 4개 선도교육청(인천, 충북, 전북, 경기)에서 관내 지자체와 협력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사업 추진 예정

○ 관계 기관간 긴밀한 협의로 급간식비 지원 체계 합리화 추진

3 유통업체 및 기존 플랫폼의 활용

↳ 기존 급식재료 안심구매제도 및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등 수급체계 다양화

○ 기존 채널의 한계로 지적되는 친환경 식재료의 수급 체계 미흡과 공급 안정성과 품목의 다양성 미흡 등을 개선한 조달체계 구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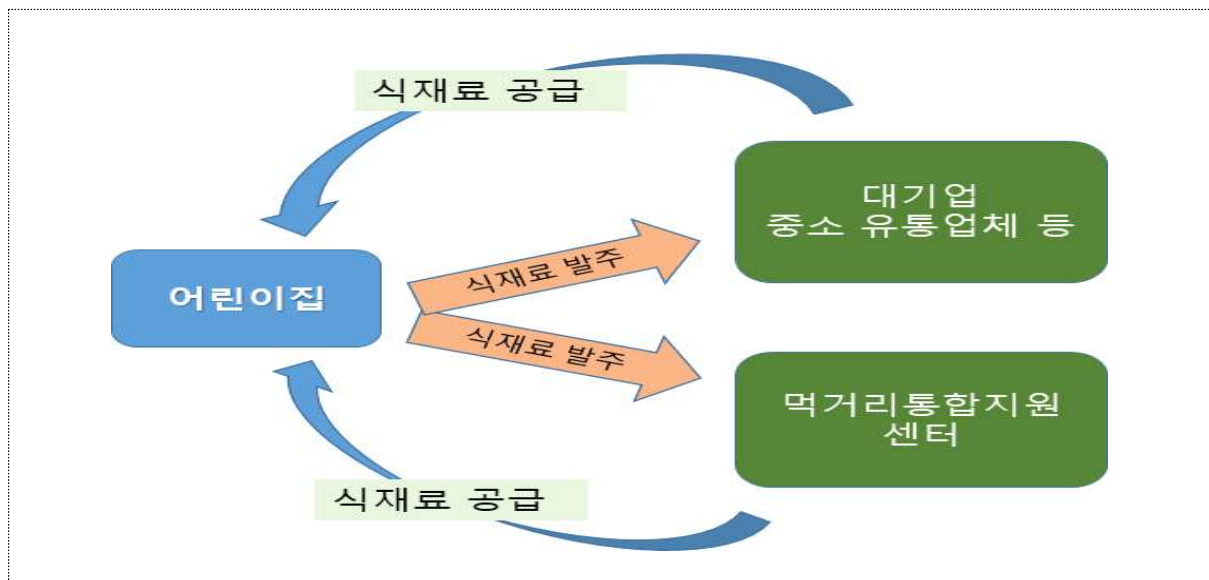
* 어린이집의 학부모 및 운영자의 친환경 식재료 전환 요구는 50~60%로 높으나 안정적인 공급시스템의 부족으로 친환경 식재료 이용의 한계 발생

- 안정적 배송, 식재료의 안전성 등으로 어린이집이 선호하는 기존 대·중소기업 유통 채널과 친환경식재료 공급에 특화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함께 활용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역할 관련 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역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의 체계적 관리
2. 농산물 생산자 조직화 및 안전성 관리 / 3. 먹거리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
4. 먹거리 관련 거버넌스 운영·지원 / 5. 그 외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2 중·장기 제언

① 친환경 식재료 구입 지원비 확대

↳ 친환경 식재료 구입 시 차액 지원 품목의 단계적 확대

- 친환경 ‘쌀’에서 단계적으로 품목을 확대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가칭)친환경 식재료 차액 지원 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 및 예산 마련
 - 어린이집은 친환경 식재료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47.8%) 이용 확대를 위한 차액 지원을 실시
 - * 대다수 어린이집이 친환경 식재료 이용 및 확대(85.7%)할 계획이나 비용 문제, 안정적인 공급의 어려움과 품목의 다양성 한계(30.4%)로 미이용

② 대체조리원 등 운영 지원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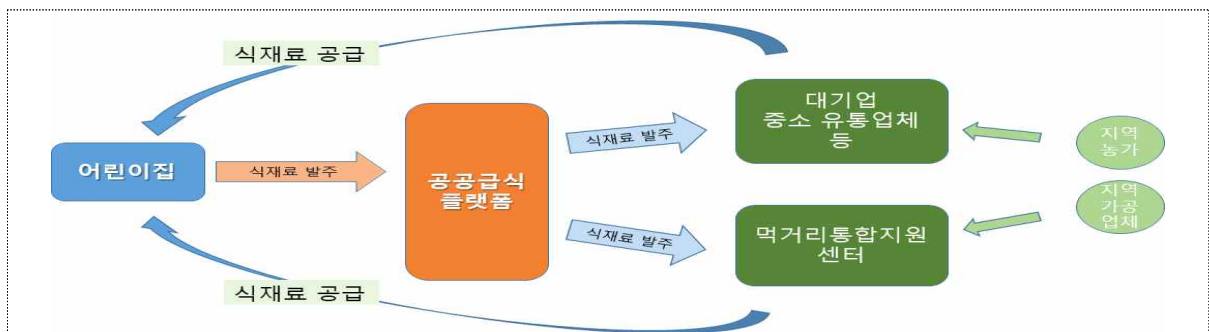
↳ 급간식의 질 제고와 안정적 공급을 위해 인건비 등 추가적 지원 방안 검토

- 질 높은 급간식 제공을 위한 영양 관리, 식단 구성, 급간식 조리 등을 담당할 전문인력(조리원)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검토
 - * 현재 조리원 인건비는 표준보육비용에 포함
 - 어린이집 급식의 질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 배치 지원 제도 도입, 현장 적용 방안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조리원 공백 발생시 안정적 급식 제공을 위한 대체 조리원 지원 검토
 - * 육아정책연구소는 급식 공백을 대처할 가이드라인을 급간식 지원 관련 개선 요구의 우선 과제로 제언(『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 개선 방안』, 2022)
 - ** 대다수 어린이집은 대기업 식재료 조달 이용 시 ‘대체 조리원 지원 제도’ 활용의 이점 강조

③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확대·운영

↳ 어린이집이 원스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활용 협조 방안 마련

- 공공급식 플랫폼을 중심으로 급식재료 안심구매 제도와 먹거리통합 지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식재료를 조달하는 공공조달체계 확대
 - * 기존 대기업 및 중소 유통업체, 친환경 유통업체 등도 활용



V. 향후 계획

□ [단기 과제] 관계부처 이행계획(안) 마련

- 본회의 의결 후(7.6) 단기과제는 관계부처(농식품부, 복지부 등)가 이행계획안을 마련하여 제출(8월 중)
 - 반기별 이행현황 제출 및 분과위원회의 점검 실시
 - 점검 결과 및 이행 완료 여부 본위원회 최종 보고

□ [중·장기 제안] 위원회 추가 검토 및 의제화

-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확대·운영 등 제안내용에 대해 분과위원회 차원의 추가 검토 후 의제화 추진

참고1

과제별 담당 부처

추진전략	주요과제	담당부처
① 단기과제	◦ 친환경 쌀 전환 시범사업 실시	농식품부 복지부
	◦ 보육료와 급간식비 지원 체계 합리화	교육부 복지부 지자체
	◦ 유통업체 및 기존 플랫폼의 활용	농식품부 복지부
② 중·장기 제언	◦ 친환경 식재료 구입 지원비 확대	농식품부 복지부 지자체
	◦ 대체조리원 등 운영 지원 검토	복지부 지자체
	◦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운영	농식품부 복지부

참고2

시·도 급간식비 지원사례 및 조달체계

<급간식비 지원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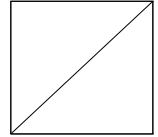
시·도	대상	규모 (명)	주기	기간/ 횟수	금액 (천원)	보조율 (%)	세부 지원기준
인천	어린이집 영유아	66,824	월	12회	10~14.4	70	- 영아 10천원, 유아 14.4천원
광주	어린이집 영유아	36,000	일	250회	0.515	100	- 공동구매 참여 어린이집 대상 1인당 1일 515원으로 지원
대전	어린이집 영유아	40,000	일	250회	0.3~0.6	80	- 0~2세 1일 300원, 3~5세 1일 600원 - 시간제보육 아동 제외
세종	어린이집 영유아	13,004	일	250회	0.5	100	- 간식비
충남	영유아	57,187	일	250회	0.3	30	- 간식비(방과후, 시간제, 시간연장형 보육 대상은 제외, 방과후 보육대상자 중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원)
전북	어린이집 영유아	39,162	월	12회	5~7	30	- 영아 5천원, 유아 7천원
경북	어린이집 영유아	51,000	월	12회	9.5	30	- 간식비 - 당월 1일 시스템에 등록된 아동 기준
제주	어린이집 영유아	25,712	월	12회	10	100	- 간식비- 해당 월 1일 기준

<어린이집 식재료 조달체계>

조달업체	식재료별 비율(%)										평균(%)
	쌀	잡곡류	채소류	과일류	축산물	수산물	김치류	가공식품	양념류	기름류	
대기업 식재료 공급업체	30.43	39.13	39.13	34.78	39.13	39.13	34.78	47.83	47.83	47.83	40.00
친환경 전문업체	17.39	21.74	21.74	17.39	13.04	13.04	17.39	21.74	21.74	17.39	18.26
소매 유통업체	8.7	13.04	21.74	26.09	17.39	8.7	4.35	21.74	8.7	8.7	13.92
공공급식 지원센터	8.7	4.35	8.7	13.04	8.7	8.7	8.7	8.7	8.7	4.35	8.26
농수축협	8.7	8.7	13.04	13.04	4.35	8.7	0	8.7	8.7	8.7	8.26
기타	4.35	8.7	8.7	8.7	8.7	8.7	0	8.7	8.7	4.35	6.96
직접 담금	0	0	0	0	0	0	26.09	0	0	0	2.61
농가/생산자 직거래	0	4.35	4.35	4.35	0	0	0	0	0	0	2.18
지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0	0	4.35	0	4.35	4.35	0	0	4.35	4.35	2.18
중소규모 식재료 공급업체	4.35	0	0	0	0	0	4.35	0	0	0	0.87
공동구매	0	0	0	0	0	4.35	0	4.35	0	0	0.87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	
담당자	도윤정 농수산식품팀장
연락처	전 화 : 02-6260-1231 E-mail : ykdo@korea.kr

공개



의안번호	2023-4호	의결사항
심 의 연 월 일	2023. 7. 6.	

기후·경제·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계획제도 개선(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 출 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미래산림특별위원회 위원장) (정 은 조)
제출 연월일	2023. 7. 6.

1. 의결주문

- 「기후·경제·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계획제도 개선」에 대한 의결

2. 제안이유

- 우리나라는 과거 산림녹화 정책의 성공으로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사유림 경영이 방치된 실정
 - * 국토 면적 대비 63%, 630만ha의 산림 비율은 OECD 중 4위, ha당 임목축적 165m³으로 OECD 평균 131m³를 상회(2020년, FAO)
 - * 전체 산림 중 66% 차지하는 사유림의 84%가 경영 의사가 없다는 조사 결과 확인
- (환경) 파리협정체결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하고 감축 이행에 동참하여야 함
 - * 2050년 탄소중립 NDC 달성 탄소흡수원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2024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정부의 탄소중립이행 목표 달성을 위해 기초 지자체별 산림 관리가 체계화 되어야 함
 - *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18년 대비 40% 감축) 291백만톤CO₂ 중 32백만톤(11%) 산림 기여
- (경제) 파편화된 사유림으로는 규모의 경제가 어렵고, 현재와 같은 이용 규제와 국유림 위주의 정책으로는 산림의 선순환 경영(심기→가꾸기→수확→이용) 및 산림자원량에 걸맞은 산림서비스 제공에 한계
 - 산림 소유자 총 219만명 중 88%(188만명/109만ha)가 3ha 미만의 산림 소유자이며, 산림경영이 가능한 규모 50ha 이상 소유자는 5천명(70만ha)에 불과함
- (사회) 우리나라의 109개 시·군의 산촌에 해당되는 읍·면 466개 중 417개(89.5%)는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방소멸 대응 제고 필요
- 미래 산림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군 산림계획제도 도입」과 「계획의 실행」을 함께 제안함

3. 주요내용

- 기초 지자체 중심으로 사유림을 위한 산림계획의 법제화
- 시군 산림계획 수립과 이행에 있어 「사유림을 위한 산림경영」 조례 제정 등 지원체계 마련
 - 지역산림경영위원회 구성, 전문인력 매칭 등 지역 거버넌스 구축
 - 기초지자체의 분산된 규모화 사업 등을 권역 내 “순환형 산림경영 네트워크 모델”로 조성·운영하도록 육성
- 시군 산림(기본)계획의 실행력 담보를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
 - 기존산림정책사업과 연계성 확보, 유관기관 정책사업과도 연계
 - 기존제도를 활용하고 기금 등 신규제도 도입 추진(농촌협약제도, 기후대응기금, 산림환경양여세 등)
- 지역 내 목재이용 의무화 지원
 - 공공부분 건축물의 지역 내 국산목재 이용 의무화
 - 1차 가공목재 이용뿐만 아니라 임목부산물 활용방안 강구
-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지원
 - 지역 여건에 맞게 벌기령 탄력 운영, 국유림 연계 공동산림사업 확대
 - 시군 산림계획 수립지역에 우선투자 및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4. 참고사항(관계부처 협의 등)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산림혁신특별위원회 논의 : '22.4~'23.4
 - 「순환형 산림경영 실현화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산림계획제도 개선」 정책연구용역 추진('22.9~12, 한국산림과학회 : 박주원 책임연구)
- 「산림계획제도 개선」 임업 관계자 등 의견 수렴(3회) : '22.9~'23.3
 - 홍천 및 괴산지역 토론회('22. 9.28, 11.29), 정책토론회('23.3.9)
- 관계기관 의견 수렴 : 산림청 및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23.5.1~'23.5.22)

5. 첨 부

- 기후·경제·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계획제도 개선(안) 요약
- 안전 전문

기후경제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계획제도 개선(안) 요약

-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탄소중립과 산촌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산림 면적과 산림 자원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66%나 되는 사유림(4,159천ha) 산주 등은 84%가 산림경영 의사가 없다 조사됨
 - 사유림경영 최소 규모인 3ha 미만의 소규모 산지가 86% 수준으로 파편화된 사유림이 많아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렵고, 산림경영 수익도 낮음
- (현황) 국유림 위주의 산림경영 정책으로는 경영 사각지대의 농인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할 수 없어 산림 자원량에 걸맞은 적극 활용과 다양한 산림 서비스의 국민이용·확대에 제한으로 작용
 - 산림이용 규제 수준이 높은 현 상황에서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산림 탄소흡수원 등 강화된 공익 실현은 사유림의 참여 없이 어려움
 - 풍부한 산림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행 사유림 경영(시군 산림계획 없이 산림행정권 집행, 지역배분방식 사업)으로는 순환산림경영*으로 나아갈 수 없음
 - 순환산림경영 개념은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좋은 나무를 심고 가꿔, 적기에 수확해 쓰고, 더 좋은 나무를 다시 심는 산림의 선순환 경영을 바탕으로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는 모델임
- (목표) 산림서비스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산림계획제도 개선
 - ① 기초 지자체 중심으로 사유림을 위한 산림계획의 법제화
 - ② 시군산림계획 수립이행에 있어 「사유림을 위한 산림경영」 조례 제정 등 지원체계 마련
 - 지역산림경영위원회 구성, 전문인력 매칭 등 지역 거버넌스 구축
 - 기초지자체의 분산된 규모화 사업 등을 권역 내 “순환형 산림경영 네트워크 모델”로 육성
 - ③ 시군산림(기본)계획의 실행력 담보를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
 - 기존 산림정책사업 및 유관기관 등의 정책사업과도 연계성 확보
 - 기존제도를 활용하고 기금 등 신규제도 도입 추진
 - ④ 지역 내 목재이용 의무화 지원
 - 공공부분 건축물의 지역 내 국산목재 이용 의무화(목재이용비율, 목재문화지수측정)
 - 1차 가공 목재 이용뿐만 아니라 임목부산물 활용방안 강구
 - ⑤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지원
 - 지역 여건에 맞게 벌기령 탄력 운영, 국유림 연계 공동산림사업 확대
 - 시군 산림계획수립지역에 우선투자 및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 그간 추진경과

< 산림혁신특별위원회 >

- 2차 전체회의 및 워크숍에서 의제안건(5건) 발제 및 논의(4.15)
- 의제(안) 의견조회 및 전문가 자문(5.10~5.17)
- 제3차 전체회의 의제에 관한 위원 간 논의(6.2)
- 제4차 전체회의 의제* 최종 결정(7.6)
- 농특위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사통과(7.6)
- 농특위 정책연구용역 입찰공고(7.26~8.8) 및 재공고(8.8~8.19)
- 농특위 정책연구용역 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8.29)
-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및 위원 논의(9.1)
- 순환형 산림경영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현장간담회(홍천·춘천 9.28)
- 세부과제별 소위원회 개최(10.7, 10.12)

* (1과제) 순환형 산림경영과 지역 산림자원 활용 활성화, (2과제) 산림계획제도 개선방안 도출

-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위원 논의(11.1) 및 지역 현장토론회(괴산 11.29)
-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 및 위원 검토(12.13.)

< 미래산림특별위원회 >

- 미래산림특별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개최('23.3.9)
- 미래산림특위 정책토론회 결과 반영 의제(안) 확정(전체회의, '23.3.28)
- 미래산림특위 의제(안) 데이터 자료 보완(전체회의, '23.4.25)
- 부처 의견조회 및 내용 보완('23.5.2~5.22)
- 미래산림특위 본회의 상정여부 심의·결정(전체회의, '23.6.21)

- 심의·결정 : 수정안*으로 가결

· 미래산림특별위원회 재적위원 15명, 참석위원 15명 모두 찬성(현장 11, 영상 4)

· 참석자 22명[특위 15명, 본위원 우수영, 최무열(본위원, 특위위원), 산림청 신운정 외 2, 사무국 엄성준 외 2)

(당초) 기초지자체 중심의 산림계획의 법제화 → (수정안)*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사유림을 위한 산림계획 법제화
(당초) 시군구 계획수립과 이행을 위한 조례제정 등 지원체계 마련 → (수정안)* 시군구 계획수립과 이행에 있어 사유림을 위한 산림경영조례제정 등 지원체계 마련

□ 「산림계획제도 개선」 본회의 상정(안) 의결추진 체계

의제(안) 도출	○ 본 위원, 분과위, 특별위, T/F	수시 (정책팀)
의제(안) 검토·확정	○ 분과위, 특별위, T/F - 해당 위원회 의견 수렴(토론) 후 운영위 제출	수시 (정책팀 → 총괄팀)
관련 부처/단체 협의	○ 사무국 - 본 위원, 관련부처, 농어업인 단체 등 의견 수렴	수시 (정책팀)
상정(안) 심의·결정 [6.21]	○ 분과위, 특별위 - 제안설명 → 질의·토론 → 의결 * T/F는 해당 분과위 제출하여 의결 - 수정안으로 참석위원 15명 전원 찬성	본위원회 개최 2주 전 (정책팀)
상정(안) 검토·확정 [6.30]	○ 위원장 - 상정 여부 결정, 운영위원회 보고	본위원회 개최 10일 전 (총괄팀)
안건 상정·의결 [7.6]	○ 본 위원회 - 제안설명(소관 위원회의 장) → 질의·토론 → 표결	(총괄팀)
의결 안건 처리	○ 사무국 - 의결사항 정책팀으로 알림 공문 시행 - (필요시) 대통령 보고	(총괄팀 → 정책팀)
관계 행정기관 통보	○ 사무국(소관 정책팀) - 소관 정책팀 관계 행정기관에 의결사항 통보 및 의결사항 추진계획 수립 요청 공문 시행 - 소관 정책팀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협의	(정책팀)
의결사항 이행관리계획 수립	○ 사무국(소관 정책팀) - 의결사항 이행관리계획 수립 및 보고	(정책팀)
추진실적 점검·평가	○ 사무국(소관 정책팀) - 정책팀 의결사항 추진실적 정기 점검·평가 - 이행점검·평가 결과 운영위 정기 보고 - 최종평가 후 종결처리	정기(분기별 필요시 수시) (정책팀)

기후·경제·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계획제도 개선

2023. 7.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목 차



1. 배경 및 필요성	64
2. 기본방향	65
3. 개선과제	66
4. 기대효과	71
[참고1] 산림계획제도 정책연구 및 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72
Ⅰ. 제도 도입 필요성	72
Ⅱ. 현황 및 여건	75
Ⅲ. 개선과제 도출	81
Ⅳ. 임업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결과	89
[참고2] 우리나라 산림 및 임업통계 자료	92
[참고3] 지방소멸지역(위험) 인구감소 현황자료	95

기후·경제·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계획제도 개선

1.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산림녹화 성공으로 탄소중립과 산촌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산림면적과 산림자원량 보유
- 국토면적(10,043천ha) 대비 산림비율 63%(6,294천ha)로 OECD 국가 중 4위에 해당(핀란드 74%, 스웨덴 69%, 일본 68% 순)(FAO, 2020년)
- 총 임목축적(1,040백만 m^3)과 산림의 울창한 정도를 나타내는 ha당 임목축적(165.2 m^3)은 OECD 평균 131 m^3 상회(FAO, 2020년)

※ ha당 임목축적은 국토녹화 원년(1973년)의 11.3 m^3 에 비하면 14.6배로 비약적으로 증가한 수치임

- 우리나라 산림 면적(6,286천ha) 중 66%가 사유림(4,159천ha)이나 파편화된 사유림이 많아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려움. 또한 이용 규제 수준이 높고, 산림경영에 따른 수익성이 낮아 산주 등의 84%가 경영 의사가 없음(산림청 임업인실태조사, 2019년)
- 사유림 소유자 중 86%가 3ha미만의 소규모 산지 소유자(109만ha/산주 전체 219만명)이고, 최근 임야 소유자 수는 매년 증가하여 소유임야 면적은 매년 감소 추세(산림청, 2020년)

※ 우리나라 사유림 경영계획 수립은 보통 리단위에서 100ha 내외의 임반을 기준하여 사업종별로 소반(1ha 이상)을 구축하여 설계 시업하며, 3ha 이상 산림에서 산림 경영하는 자 등을 임업인으로 정의

※ 소유자수(천명) : ('18) 2,164 → ('19) 2,174 (0.5%) → ('20) 2,181 (0.4%)

※ 면 적(천ha) : ('18) 6,371 → ('19) 6,364 (△ 0.1%) → ('20) 6,356 (△ 0.1%)

※ 1인당 면적(ha) : ('07) 2.3ha → ('20) 1.9ha

-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좋은 나무를 심고 가꾸, 적기에 수확해 쓰고, 더 좋은 나무를 다시 심는 순환 경제가 실현되어야 함
- 기후 위기로 인한 산림 소실 가능성이 높아져 적극 대비가 필요하고, 파리협정 체결로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 감축 이행을 위해 “2050 탄소중립 산림 탄소흡수원” 강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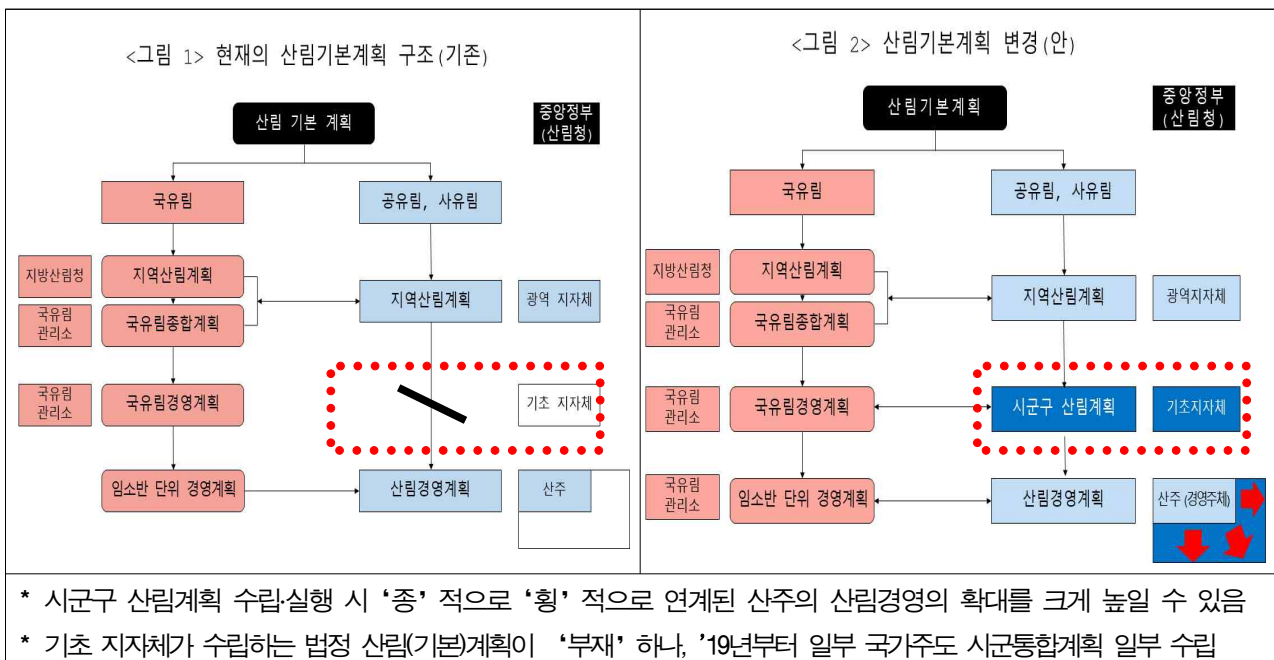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소멸 위험지역 50%(113개/229개 시군구, 2022.3.기준)이고, 109개 시군에 466개 읍면 산촌지역 중 417개(89.5%)가 소멸 고위험에 해당되어 산림자원 활용을 통한 지방 소멸 대응이 절실

➔ 산림서비스의 지속가능성 제고하기 위해 산림경영의 시작과 끝인 산림계획제도가 리모델링 수준으로 개선

2. 기본 방향

- ① 지방자치분권 시대, 규모의 경제 실현의 필요한 공간의 크기, 산물의 적정 이동 거리 등을 고려했을 때, 계획의 공간 단위는 ‘기초 지자체’가 됨
- ② ‘시군구 산림(기본)계획’ 도입을 통해 광역지자체가 수립하는 지역 산림계획과 산주가 수립한 산림경영계획을 수직적으로 연계하고, 국유림관리소가 수립한 국유림경영계획과 수평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함
- ③ ‘시군구 산림(기본)계획’은 ‘지역별’ 차별화, ‘지역내’ 통합을 목표로 해야 함

※ 시군구 산림(기본)계획* : 시군구 기초 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산림계획에 대해 법정계획 용어 정의가 필요하며, 현재 시군기본산림계획, 시군산림계획, 시군산림종합계획, 시군산림경영계획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동 보고서는 시군산림계획 또는 시군(기본)계획으로 용어를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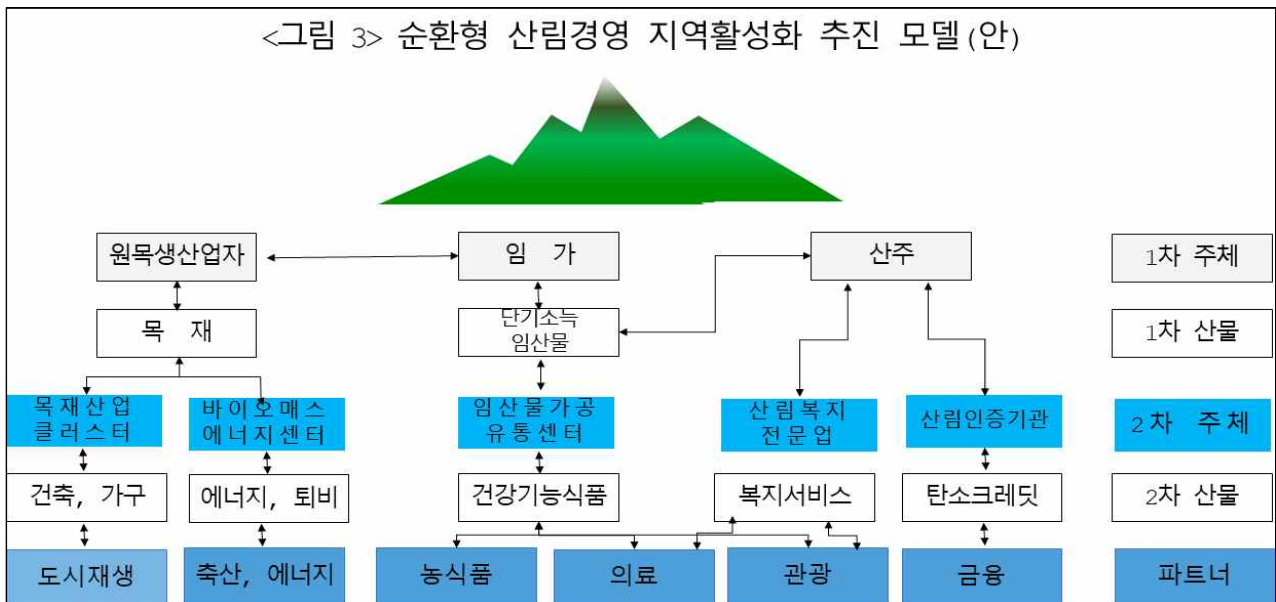


④ 계획 수립부터 이행, 평가, 환류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 필요

○ 충분한 인력과 예산 지원*은 물론 과감한 규제 완화 필요

○ 지역 내 다양한 창조적 활동으로 지역별 산림자원기반의 서비스가 ‘확장 및 특화되고, 다른 분야와 융복합’ 되며, 민간 자본(금융)까지 유치되도록 해야 함

* 산림분야 유형별 이해관계자 대표자에 대한 표적집단 면접 결과 : 지자체 산림사업 및 순환형 산림 경영을 위한 시군 산림계획 필요성 공감대 형성(박주원 외, 2022)



3. 개선과제

① (법률 개정) 기초 지자체 중심으로 사유림을 위한 산림계획의 법제화

- 일정 산림면적, 산림율, 사유림 비율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계획수립 의무를 부여, 그 외 기초지자체는 계획수립 시 인센티브 제공
 - 「산림기본법」 제11조 제5항에 차등 지원 대상을 시군구 단위로 확대
 - 산림경영계획 수립 시군구를 순환형 산림경영특구로 지정하여 인센티브 차등 지원

- 농촌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법의 지역특구도 활용(농촌특화지구 :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거나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재생·증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

○ 시군 산림계획이 규제가 아닌 기회로 활용되도록 산림기본계획의 모든 내용*을 다루기보다 필수 대상만 제시

- ‘자원의 조성 및 육성’,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필수 사항을 제시하고 나머지 내용은 지자체 특성에 맞게 하도록 함

* 현행 「산림기본법」 제11조 산림계획 수립 대상 규정 발췌 내역

- ①산림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②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③산림의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④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항 ⑤산사태·산불·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의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⑥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 ⑦산림의 이용구분 및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⑧산림복지의 증진에 관한 사항 ⑨탄소흡수원의 유지·증진에 관한 사항 ⑩국제산림협력에 관한 사항

○ 시군 산림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의무화

○ 계획의 공간 단위를 모듈화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 계획과 최대한 연계되도록 유도

- 마을단위에서 수립한 계획, 산주가 수립한 산림경영계획 등이 시군 산림계획에 종합·반영되도록 지원
- 기초지자체의 통합 계획(시군 관리계획) 및 타부처 계획(「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시군구 계획)과 연계하여 실행력 담보
- 「2050 탄소중립 산림흡수원」이 강화됨에 따라 시도 5년 계획 수립·시행, 지자체별 흡수량 산정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산림계획이 충실히 작성·측정·검증·보고 되어야 함

○ 2019년부터 시범 추진되는 ‘국공사유림 통합 산림기본계획’의 평가 결과를 충분히 반영(20개 기초지자체, 2022년)

- 2022년에 배포된 가이드라인(국공사유림을 통합 시군산림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적극 활용

* 시군 행정구역 내 산림전체를 공간범위로 10년 기준 6대 기본원칙 수립 : ①산림자원 순환경제 실현 ②산림의 보전과 이용 조화 ③공간 고려 ④특화사업 발굴 ⑤타 계획·사업과 연계 ⑥공공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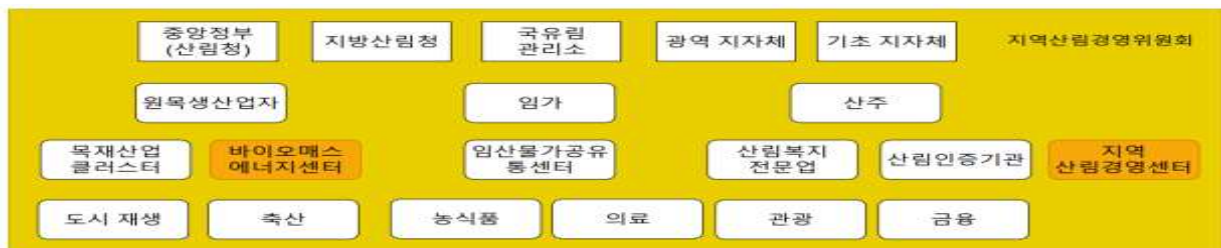
② 시군구 산림계획의 수립·이행에 있어 사유림을 위한 산림경영 조례제정 등 지원체계 마련 : 지역 거버넌스 구축(위원회 구성, 전문인력 매칭 등)

○ 지역 내 경영계획 수립, 경영계획에 따른 사업의 실행 주체 형성 및 전담 부서 신설을 통한 전문가 배치

○ 관련 주체 간 연계 강화 및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 체계 형성

- 지역 연구기관 및 거점대학과 국립산림과학원 연계 강화
-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의 공공기관, 산림조합 등의 지원기관의 자본과 기술이 투입될 수 있도록 유도

<그림 4> 순환형 산림경영 거버넌스 구성을 위한 다양한 경영주체 (예시)



▷ **지역산림경영위원회** : (가칭)지역산림경영센터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군 단위 산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위원회 구성

- 행정기관 대표 / 산주 대표 / 지역주민 대표 / 전문가
- 임업인 대표(1차) / 가공업체 대표(2차) / 서비스업체 대표(3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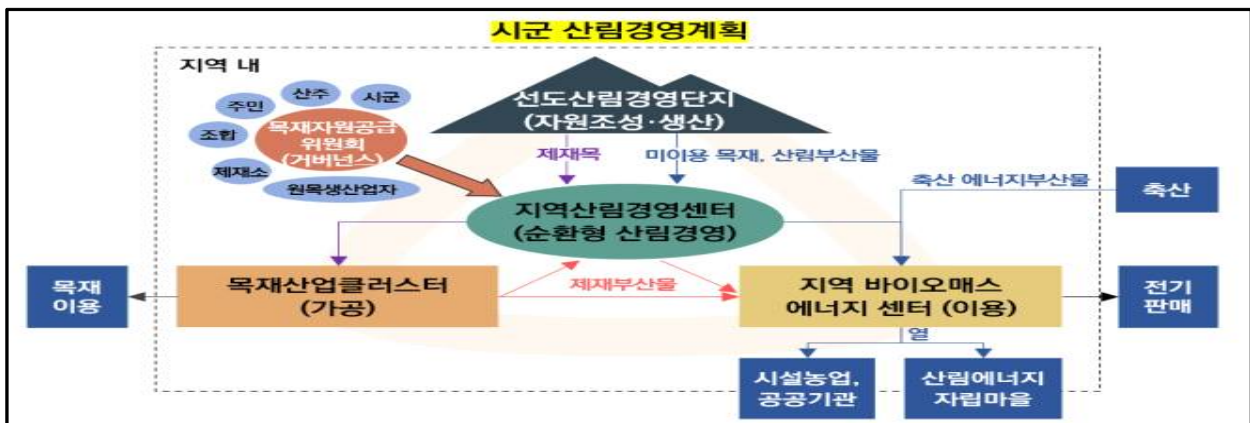
▷ **(가칭)지역산림경영센터** : 지역 내 목재수요와 공급량에 대한 정보 취합·공유 역할

▷ **바이오매스 에너지 센터** : 미이용 목재, 산림·에너지 부산물을 활용하여 생산한 열·전기에너지의 수급 연계 담당

* 축산분뇨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농식품부 소관으로 산촌지역의 축산분뇨와 산림 목재 바이오매스의 공동 활용을 위한 농식품부와 산림청의 협력 체계 구축

- 기초지자체의 분산 추진되는 선도산림경영단지, 목재 산업클러스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을 하나의 지역(또는 권역) 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순환형 산림경영 네트워크 모델”로 육성
 - 타 부처 사업(축산농가축산분뇨와 미이용 산림바이오에너지화)과도 공동사업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 연계 추진

<그림 5> 순환형 산림경영 네트워크 모델 사례



③ 시군구 중심의 산림기본계획 실행력 담보를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

- (연계성 강화) 기존 산림 정책 사업과의 연계성 확보, 유관기관의 정책 사업(도시, 축산, 식품, 관광 등)과도 연계되도록 추진
- (충분성 확보) 기존 제도를 활용하고, 기금 등 신규제도 도입 추진
 - 기존 제도 활용 : 농촌협약제도, 고향사랑기부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물이용부담금, 지방소멸대응기금, 기후대응기금 등의 사용처로 특정

- * 농촌협약제도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결하는 협약으로 농촌의 365 생활권 조성 등을 위해 지자체 계획수립, 정부와 지자체 협업을 이행하는 제도
- * 고향사랑기부제 : 지자체 인구감소에 따른 재정악화를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청소년지원, 문화예술진흥, 공동체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제도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를 산림 외 용도로 사용하려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부담 비용
- * 물이용부담금 : 5대강수계법 상류지역에 대한 수질개선과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 구역 지정으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상수원댐 상류지역 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주민 소득증대사업, 주택개량, 수변 구역의 토지매입비로 활용, 기타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등에 지원
- * 지방소멸대응기금 : 지방소멸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22-31년까지 한시적 운영)
- * 기후대응기금 :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기금(2조 5천억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4대 핵심 분야(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생태계, 공정한 전환, 제도기반 구축 지원) 사업에 지원, 기재부)

- 신규 재원 마련 추진 : 일본의 산림환경(양여)세, 산림 탄소 기금 등 검토, 생산자(산주, 임업인)와 수요자(지역주민, 국민)의 연계 강화(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

④ 지역 내 목재 이용 의무화 지원 : 공급 지원보다 잠재목재 수요의 유효화를 위한 수요 확대 필요

- 공공 부분 건축물의 지역 내 국산 목재 이용 의무화(목재이용법 개정)
- 1차 가공 목재이용 뿐 아니라 임목부산물을 활용한 에너지, 바이오 매스의 지역 내 이용 활성화 방안 강구

※ 일본은 2050 탄소중립과 2030 온실가스감축(2013년 대비 46% 감축) 실현을 위해 건축분야의 에너지 절약대책을 가속화하고, 목재수요의 약 40%인 건축분야 목재이용 촉진 정책이 중요(코트라 '23.5.12. 뉴스)

⑤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지원

- 지역 여건에 맞게 별기령을 탄력적으로 하고, 국유림 연계 공동산림 사업*의 유연성 및 범위 등 확대
 - 지역산림경영위원회에서 의결 및 산림청 승인과정을 거쳐 제반 규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

* 공동산림사업은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해 국유림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

- 시군 산림계획 수립 지역에 대한 우선 투자 및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 산림 경영기반(임도, 기계 등) 확대 및 산림 산업(목재, 산림 복지, 6차 사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4. 기대효과

□ 지역 내 경제·사회·환경의 특수성을 고루 반영한 산림경영 실현으로 경제, 환경, 사회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작용

○ (경제) 우리목재를 제대로 이용하면 목재 자급율 향상(현 16% 수준→25%)

- 임업인과 산주의 산림자원가치 증가 및 소득 증대
- 산림복지 서비스, 산림 생물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으로 확장
- 산림에서 청년과 여성을 위한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
- 지역별로 산림과 임업분야의 유니콘 기업과 스타 임업인이 출현

○ (환경) 산림 공익기능의 경제적 환산가치 증진

- 국가 기후변화 대응 목표(NDC) 달성에 효과적으로 대응
- 콘크리트, 철근, 플라스틱을 대체하여 환경 부하를 경감

○ (사회) 지역의 문제도 점진적으로 해결 가능

- 지역 내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창출되어 소멸 위기의 산촌 지역이 국민의 일터, 쉼터, 삶터가 될 것임
- 산촌은 도시민이 찾는 힐링의 ‘장’ 으로, 국민산림 행복시대로 성장

I. 제도 도입 필요성

- ‘과거’ 성공적인 녹화사업으로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
- 우리나라 산림면적은 약 628만ha로 전 세계의 0.15%를 차지하고 있고 66.4% 산림율은 전 세계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비교적 풍부한 산림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국내 목재 소비량(0.22%, 세계 대비)은 우리나라 산림면적(0.15%, 세계 대비)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국내 목재 생산량(0.12%, 세계 대비)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목재 소비량 대비 부족한 공급량은 해외 산림자원을 사용하여 들어왔으며 국내 산림자원의 낮은 활용으로 인해 국내 산림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한 시점임.

<표 1> 전 세계 대비 우리나라의 산림자원 보유 및 이용 현황

항 목	세 계	우리나라 (세계 대비%)	출 처
산림면적	40억 59백만ha	6.28백만ha (0.15%)	FAO, 2020
산림면적 비율(%)	31.1	64.4	FAO, 2020
목재소비량	3,973,611천m ³	8,858천m ³ (0.22%)	FAO, 2019
목재생산량(공급량)	3,964,352천m ³	4,605천m ³ (0.12%)	Kosis/산림청, 2019
산림 재적	137.1m ³ /ha 556,526백만m ³	165m ³ /ha 1,019백만m ³ (0.18%)	FAO, 2020
총 에너지 발전량	27,005TWh	563,040GWh (2.1%)	KOSIS, 2019
바이오에너지발전량 (총 에너지 대비 비율%)	589TWh (4%)	10,416GWh (1.8%)	IEA/KOSIS, 2019

자료: FAO(2019-2020), Kosis/산림청(2019), IEA/KOSIS(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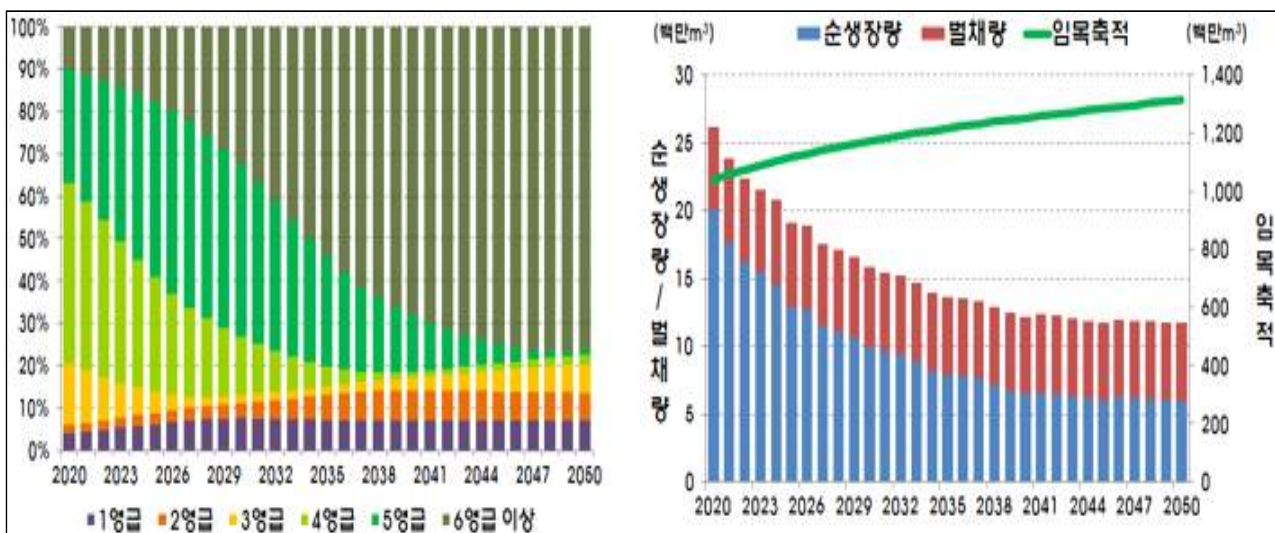
- 하지만 이용규제가 많고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현재’ 66%를 차지하는 사유림의 84%가 경영의사 없이 방치되고 있어 지금과 같은 국유림 위주 산림정책으로는 산림자원량에 걸맞은 산림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없음
- 파편화된 사유림 비율이 높아 규모의 경제 실현이 절실하고,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좋은 나무를 심고 가꾸, 적기에 수확해 제대로 쓰고, 더 좋은 나무를 심는 순환경제가 실현되어야 하지만 수확과 공급 및 이용 부문에 있어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 파리협정 체결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수립하여야 함.

- 현 추세로 산림 관리 시 노령목의 증가로 2050년 우리나라 국내 산림 온실가스 흡수량은 1,400만톤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산림계획 작성 시 NDC 달성을 위한 산림 탄소흡수원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임

* 6영급(51년생~60년생) 이상 산림면적 비율은 2030년 33%, 2050년 72%로 증가하여 임분의 노령화로 연간생장량 감소가 전망됨

<그림 1> 우리나라의 산림자원의 미래 전망



자료 : 국립산림과학원 2019

- (환경) 탄소흡수, 수자원 함양, 야생동물 서식처 제공 등 다양한 공익기능 간 조화가 필요하며, 기후 위기로 인한 산림 소실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적극적인 대비 필요
- 특히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산림 탄소흡수원이 지금보다 더 체계적 관리 강화 필요

□ 지방소멸이 심각한 수준으로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산림자원의 활용을 통한 산촌 유지, 임가소득 개선 등의 지역 활성화 필요

- (사회) 우리나라의 소멸 위험지역은 약 50%(113개/229개 시군구, 2022년 3월 기준)로 지방소멸이 심각한 수준으로 지방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하락하고 사회보장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한국고용정보원, 2022). 이중 산촌 109개 시군의 89.5%가 소멸 고위험에 해당되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산림자원 활용성 제고 필요
- 소멸위험 기초지자체는 전국 대비 높은 산림율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 산림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내 순환 경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표 2> 지방소멸 위험지역 상위 5개 시군구의 산림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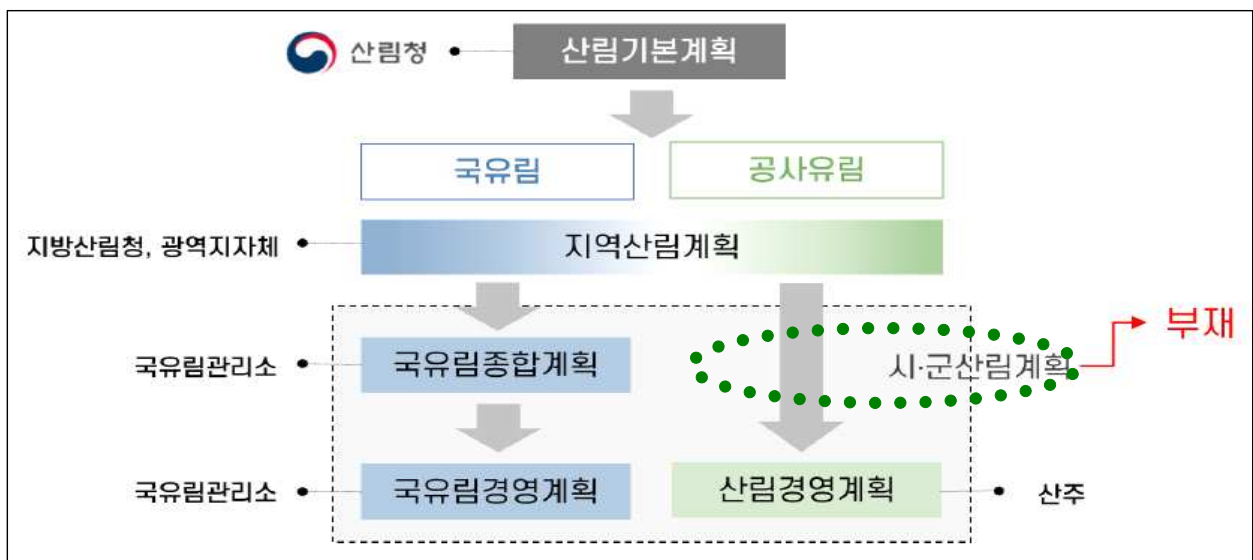
시도	시군구	지방소멸 위험지수	지방소멸 위험분류	산림율 (2020)
경상북도	군위군	0.11	소멸고위험지역 (5)	75.17%
경상북도	의성군	0.11	소멸고위험지역 (5)	67.06%
전라남도	고흥군	0.12	소멸고위험지역 (5)	56.79%
경상남도	합천군	0.12	소멸고위험지역 (5)	72.51%
경상북도	봉화군	0.12	소멸고위험지역 (5)	81.47%
상위 5개 시군구		0.12	소멸고위험지역 (5)	70.60%
전국 평균		0.71	주의단계 (3)	62.72%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22), 산림청(2020)

II. 현황 및 여건

1. 시군 산림계획의 법정계획 부재[시군산림계획제도의 비법정화]

- (국내) 시·군 산림계획은 비법정계획으로 광역단위 산림계획 이후 지역 단위의 계획 없이 개별 산주의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공·사유림의 경우 광역단위의 지역산림계획을 바탕으로 개별 산주가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구조로 시·군 단위에서 광역단위와 개별 산주를 연결할 수 있는 계획이 부재한 실정임
 - 국유림의 경우 지역산림계획을 통해 추진되는 산림사업은 지역 산림현황을 반영한 지역사회와의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기보다 자원조성 및 관리에 치중된 경향을 보임
 - 국유림의 지역산림계획은 지방산림청에서 작성하며, 그 공간적 범위가 행정구역상 여러 광역지자체에 걸쳐 있음
 - 지자체별로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현 상황에서 국유림이 실질적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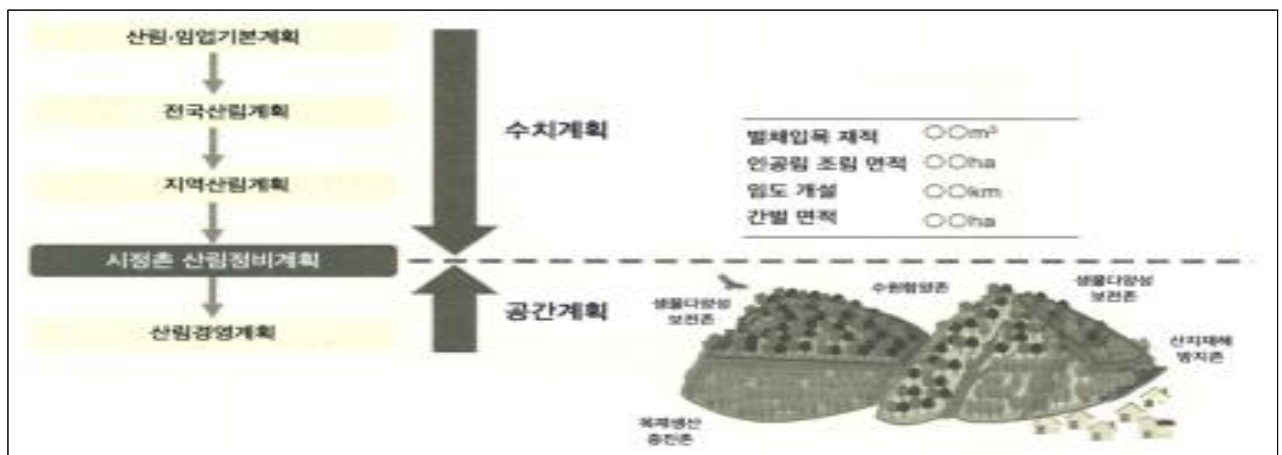


자료 : 한국산림과학회 2022

□ (해외 사례) 시군 규모의 지역산림계획 제도를 수립하여 지역 현황을 반영한 산림경영 세부 목표와 사업량을 정하고, 체계적으로 경영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시정촌 산림정비계획을 통해 기초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산림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기초지자체가 5년마다 10년 계획으로 작성하여 지자체의 산림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실질적으로 구속력 있는 벌채 및 조림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산림관리의 기본 구상이며 이를 바탕으로 구역화(Zoning)와 산림 시업의 표준 방법, 임도 정비 등을 포함한 산림 관리 마스터플랜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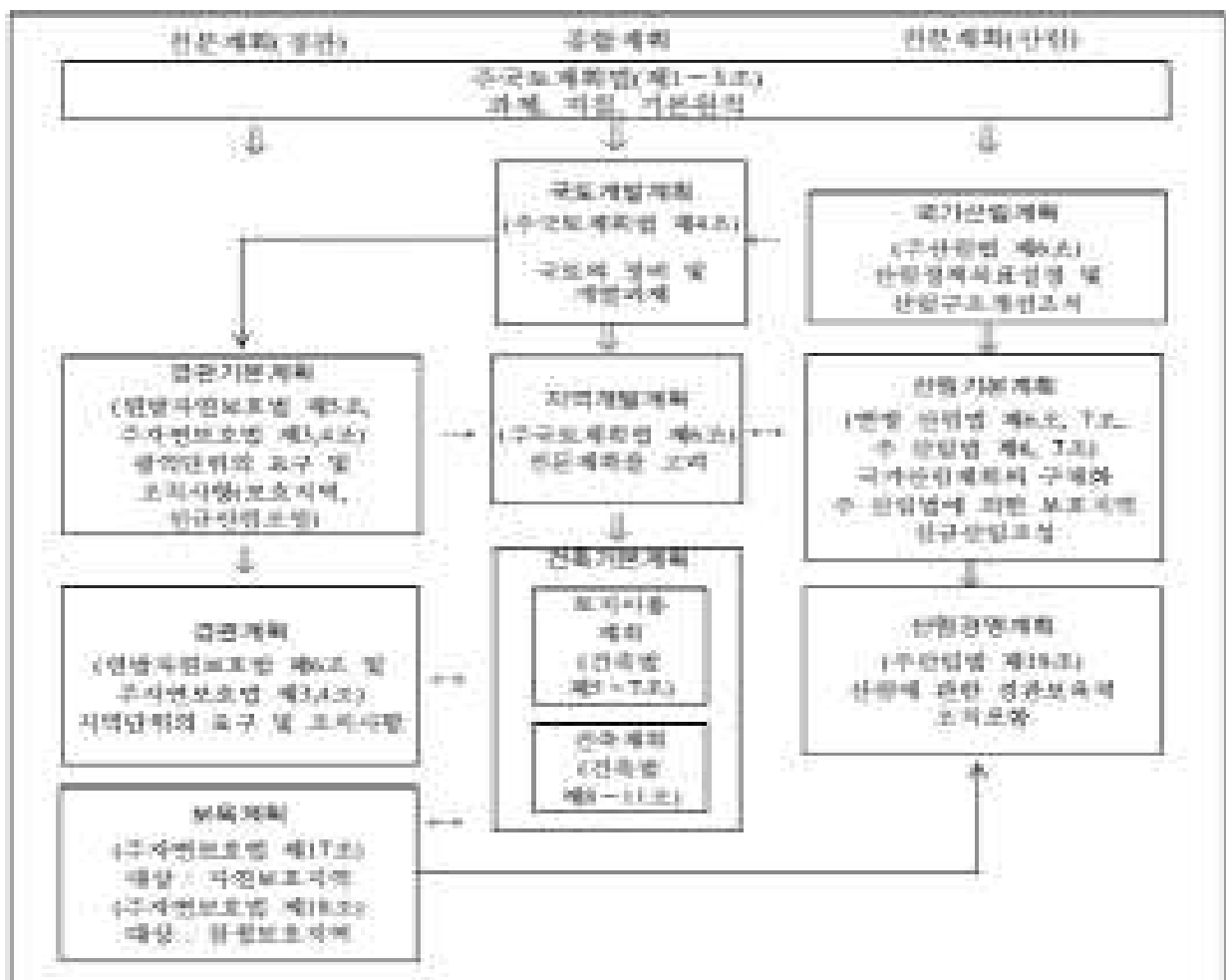
< 그림 2> 일본의 산림·임업 기본계획 체계 및 시정촌 산림정비계획 위치



- 일본의 산림계획제도는 1998년 개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있음.
- 산림계획제도 체계는 계층구조로 단계적으로 전달하는 체계를 가짐.
- 시정촌 산림정비계획은 톱다운형과 바텀업형의 계획이 서로 합쳐지는 중첩점 역할을 함.
 - 전국산림계획과 지역산림계획은 톱다운형 공적 성격을 보임.
 - 산림경영계획은 개별 산림소유자가 작성에 직접 관여하는 계획으로 개별 시업의 장소 정보도 포함하는 바텀업형 사적 성격을 가짐.
- 지역 실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 상위 광역지자체나 임업 관계자와 관련 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산림관리를 추진함.

- 독일의 경우 국가산림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및 지침에 따라 지역 실정을 반영한 세부 정책 목표 및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독일의 산림계획은 국가산림계획-산림기본계획-산림경영계획의 3단계로 주 단위로 수립하고 있음
 - * 독일은 연방국가로서 헌법상 입법 권한이 주 정부에 있어 국토개발계획, 경관 기본계획, 국가산림계획 등이 주 단위로 수립, 시행되고 있음
- 산림기본계획(ForstlicherRahmenplan)은 지방정부가 국가산림계획을 구체화하여 작성하는 계획으로 국가산림계획에서 제시한 정책 목표 및 지침을 지역 차원에서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정책목표와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림 3> 독일의 산림기본계획 체계



2. 지자체 산림 사업의 한계

□ (국내) 풍부한 산림자원을 제대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현행 지역 배분 방식의 산림경영으로는 순환 산림경영으로 나아갈 수 없음

- 선도산림경영단지는 경제림육성단지 내 규모화·집단화된 산림경영 사업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이루고자 추진 중인 사업임
- 2022년 기준 총 29개소를 운영 중이며 지방자치단체(시·군)가 시행 주체로 참여하고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10년 기간 동안 사업비 총 75억원 규모로 시행 중임.

<그림 4> 선도산림경영단지를 통한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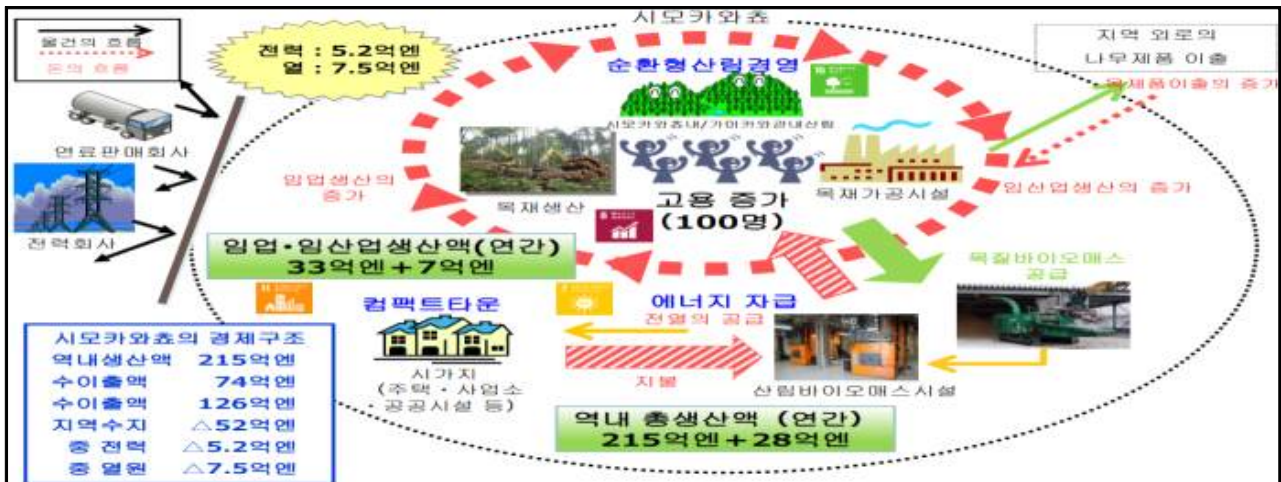
- 목재산업클러스터는 시설·기술지원 및 집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뿐 아니라, 목재산업을 지역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 특화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임
- 2022년 기준 전국 3개 지역(강원 춘천, 전남 화순, 충북 제천)에서 실행하고 있음.

-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은 에너지 취약지역 중 하나인 산촌에서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난방과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에너지자립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임
 - 2022년 기준 4개 지자체(강원 횡성, 경기 양평, 전북 완주, 충북 괴산)에서 실행하고 있음.
- 위의 해당 사업들은 각각 지역 배분 방식의 개별적인 사업 추진으로 산발적이고 분산되어 사업 간 연계가 부족하여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음
 - 선도산림경영단지는 목재생산, 목재산업클러스터는 목재가공 및 유통,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은 목재이용으로 순환형 산림경영의 각 연결고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한 지역 또는 권역 단위에서 집약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분산되어 조성되거나 운영되는 실정임

□ (해외 사례) 지역 목재 사용 활성화를 위한 산업특구를 지정하여 순환형 산림경영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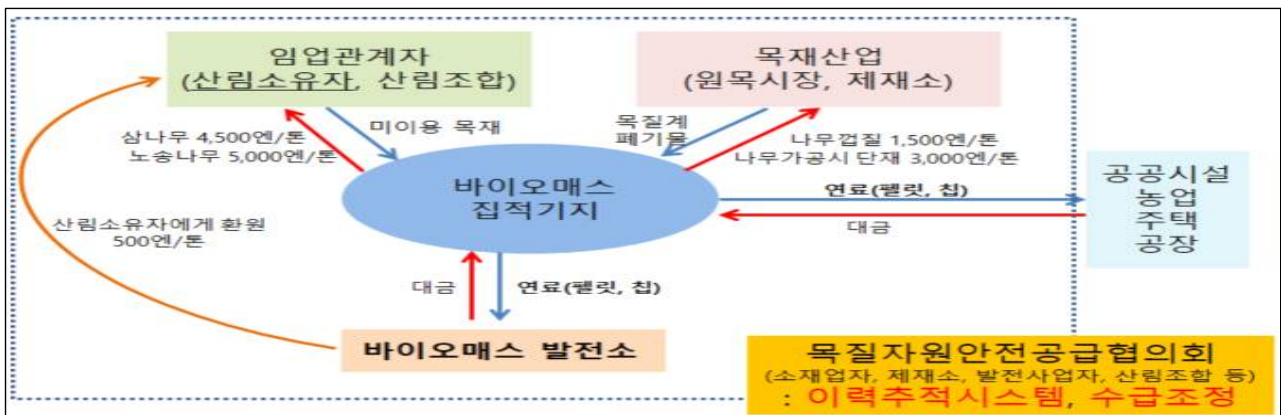
- 일본의 시모카와초는 2011년 산림종합산업특구로 지정, 지역목재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아 환경미래도시특구로 지정하여 지역 내에서 베어낸 나무를 ‘전부 사용’ 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 목재를 생산·이용하는 순환형 산림경영을 추진하고 있음
 - * 생산된 원목은 인테리어용재나 내장재 등으로 우선 사용하며 사용 후 남은 부분을 펄릿 등 바이오매스로 활용하고 있음
 -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순이익은 약 2천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100여개의 안정적인 산림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
 - *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을 통해 연간 약 2억원의 연료 비용을 감축하고, 감축 비용으로 학교 급식 개선 등의 사회 환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5> 시모카와초 순환형 산림경영 모식도



- 일본의 마니와시는 바이오매스 집적기지 설립을 통한 순환형 임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음
 - 소재업자, 제재소, 발전사업자, 산림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질자원안전 공급협의회를 통해 지역 내 목재 이력추적시스템을 구축하고, 수급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에너지 자급률은 11.6%에서 32%로 향상되었고, 연간 24억엔의 역외 유출 감소 및 6.7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효과를 창출함
 - 바이오매스 집적기지 건설을 통해 임업관계자와 목재산업시장,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연계하는 역할을 함. 이를 통해 수익을 산주에게 환원 하며 고용창출과 청년유입의 효과를 얻고 있음

< 그림 6> 마니와시 바이오매스 집적기지 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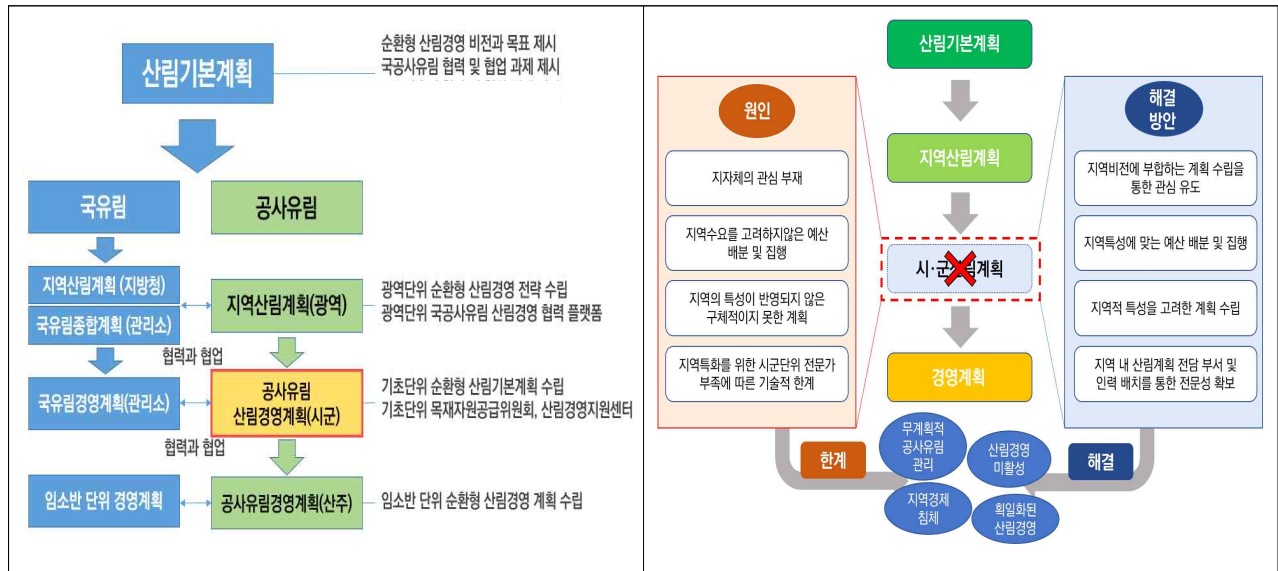
- 오스트리아 귀싱마을은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인프라 부족 등 불리한 산업 입지조건을 극복하고 지역 내 필요한 에너지를 100% 자급자족하는 데 성공함
 - 우드칩을 활용한 지역난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유럽 최초 재생에너지로 마을 내 필요한 에너지의 100%를 자체 조달하는 순환형 시스템을 구축함.
 - * 재생에너지 이용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연 4만톤 이상의 지역 목재를 활용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5년 수준에서 93% 감소하였으며, 지역 에너지 자립정책을 시작한 지 15여년 만에 목재건조 공장 등 50여개의 기업이 들어서고, 1,1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나타남
- 핀란드의 북카리알라 지역은 풍부한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의 산림바이오매스 자원을 이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
 - 지역 내 산림바이오매스 자원을 이용하여 지역에 필요한 에너지, 섬유, 바이오제품 소비재 등을 시장에 공급하는 경제구조를 구축하고 있음
 - 목조건축을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노력을 기울여 2018년 한해 완성된 건물의 39%가 지역에서 생산된 목재를 이용하여 건설됨

III. 개선과제 도출

- **현행 산림계획 수립 체계는 국가 주도적 녹화복원 위주로 맞춰져 있어 자치분권 시대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산림경영 실현이 어려움**
- 중앙정부 중심의 산림계획체계는 각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임업 경쟁력 향상 및 지역 임업 활성화 기여에 어려움이 있음

- 현재 공사유림 계획은 시·군단위의 산림계획 부재로 인해 광역단위의 지역산림계획에서 산주가 작성하는 산림경영계획으로 시달되지만 지역산림 현황을 반영한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그림 7> 산림계획제도 개선(안) 및 시군산림계획 부재로 인한 한계 및 해결방안



자료 : 한국산림과학회 2022

□ 기후·경제·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순환형 산림경영과 지역임업 활성화에 적합한 산림계획제도로 개선

- 당면 과제인 기후·경제·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내 산주, 임업인,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산림계획제도’ 개선 필요
-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흡수원인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환경 임업),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돈이 되는 산림 산업이 되어야 하고(경제 임업),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촌이 활성화되어야 함(사회 임업)
- 이를 위해서는 경영 사각지대에 놓인 사유림 경영이 적극적으로 활성화 되어야 하며, 그 시작은 지역 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시군 중심의 산림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에 있음

<표 3> 국내 산림계획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현행 제도			문제점	개선 방향
지역 산림계획	국·유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에 소재한 산림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산림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행정구역과 지방산림청의 관할 구역의 차이로 인한 공간적 범위 설정의 한계 • 실제 사업 추진 시 지역과의 연계 확보 한계	• 광역단위 계획을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구조 마련 필요
	공·사유림		• 광역단위 계획 이후 지역 단위 계획이 부재하여, 개별 산주가 경영계획을 수립	
시·군 산림계획	국·공·사유림 통합	비법정 계획으로 산림청에서 몇 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적인 수립을 지원 중 (괴산군의 경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함)	• 법정계획이 아니므로 수립과 이행의 의무가 없음 • 시범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의 경우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주체가 부재함 • 나아가 실제로 계획을 이행한 선례가 부재함	• 법정화를 통한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의무화 필요 • 지역단위에서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이행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주체 육성 필요 • 실제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 선례를 형성하고 모니터링, 향후 타 지자체에게 가이드 라인 제공 필요

- 시·군 산림계획 법제화를 통한 지역 산림현황을 고려한 비전 수립 및 예산 집행을 수반한 계획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법률 및 제도 개선

- 산림기본법 제11조에 시·군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사유림 산림계획 수립을 적극 추진하도록 법제화 반영
- 산림기본법 제11조 제5항에서 차등 지원대상을 시·군단위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함

산림기본법 제11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산림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기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산림기본법 제11조 제5항

⑤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 제13조 제6항을 근거로 공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수립 지자체에 산림경영 평가를 통한 예산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함
- 인가받는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에 제공되는 지원을 인가받고자 하는 경영산주에게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도록 함

(현행)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稅制)·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혹은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산림소유자에게 비용·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稅制)·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이용법)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에서 요구하는 목재수급 계획 수립 단위를 장기적으로 시군단위로 확대하도록 반영
- 목재수급계획 상 국내산 원목 수요와 산림경영계획의 원목 수확 및 공급 계획 간 일정 수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명시

(현행)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전국시행계획(이하 "전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국시행계획에는 매년의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전국시행계획(이하 "전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국시행계획에는 국내산 원목 수요와 산림경영계획 상 원목 수확 및 공급 계획을 고려한 매년의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시군단위 지자체에서 지역 목재 사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 제정을 지원할 것을 반영
 - 지자체 공공건물 건축 시 국산재 혹은 지역재 우선 사용 비율을 제시하도록 함
 - 지역별 목재문화 확산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목재문화지수(WCI)를 활용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목재 문화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 ① 산림청장은 시·도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 순환형 산림경영 모델

- 현재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선도산림경영단지, 목재 산업클러스터, 산림에너지자립마을사업을 하나의 지역(또는 권역) 내 에너지 중심 순환형 산림경영 네트워크 모델로써 추진
- 지역특구법을 활용하여, 순환형 산림경영 특구 지정을 통한 지역단위 산림경영계획 수립 시군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유림 산림 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로 드론, LiDAR 등을 활용한 ICT 기반 정밀산림자원조사 서비스 우선 지원 및 정밀산림 자원조사 주체를 민간-학계-연구기관 주도로 하여 산학연계 산림 신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 일본은 사유림 산주를 대상으로 산림경영에 필요한 산림 인벤토리 구축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돗토리현은 산림경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산림 인벤토리 구축을 위한 3D 스캐너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있음.
- 네트워크 모델 구축과 함께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지역 분권형 산림바이오매스산업을 추진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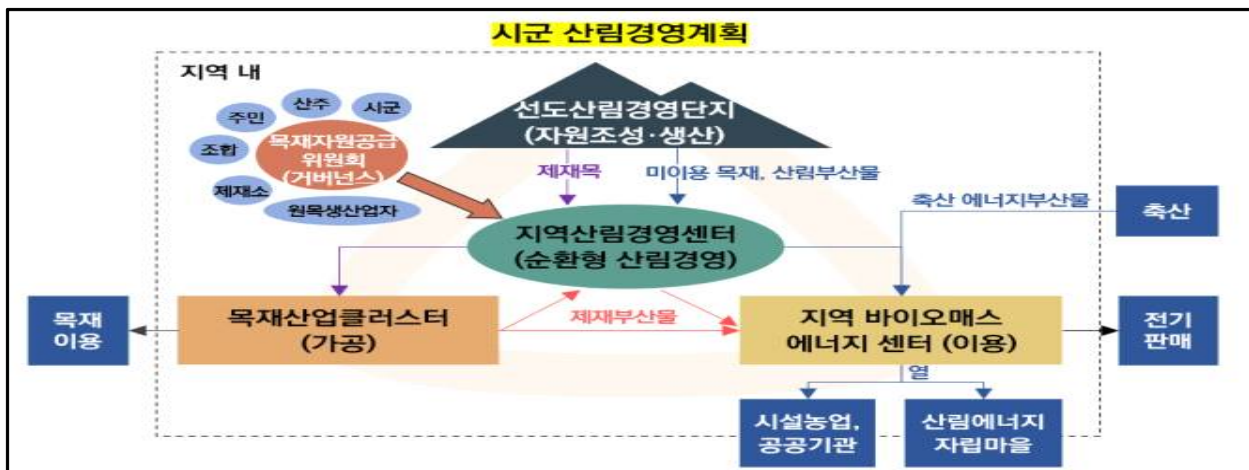
□ 추진 체계 형성

- 권역 내 공사유림과 국유림을 포괄한 지역 단위 수요-공급 연결을 위한 시스템 및 거버넌스 구축과 현장 지원 조직 설립을 추진
 - 지역 내 목재 수요와 공급량에 대한 정보 취합 및 공유 역할을 하는 현장 지원 조직인 (가칭)지역산림경영센터 설치를 제안
 - 시군 단위 이해관계자(산주, 지역주민, 산림산업관계자,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목재자원수급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칭)지역산림경영센터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바이오매스 에너지센터 설치로 선도산림경영단지와 목재산업클러스터, 축산농가 등에서 발생하는 미이용 목재, 산림·에너지 부산물을 활용하여 생산한 열에너지의 수급 연계를 통해 지역 단위 시설농업, 공공기관, 산림에너지자립 마을 등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농림부 소관으로 바이오매스 에너지센터를 통한 산림 지역의 축산분뇨와 산림목재 바이오매스의 공동 활용을 위한 농식품부와 산림청의 협력 체계 구축을 제안함
- * 열에너지 중심의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과 더불어 바이오매스 에너지센터의 수요-공급 예측을 기반으로 전기 생산·판매를 통한 부가적인 수익 창출 모색 가능

<그림 8> 순환형산림경영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경영주체 예시)



- ▷ **지역산림경영위원회** : (가칭)지역산림경영센터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군 단위 산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위원회 구성
 - 행정기관 대표 / 산주 대표 / 지역주민 대표 / 전문가
 - 임업인 대표(1차) / 가공업체 대표(2차) / 서비스업체 대표(3차)
- ▷ **(가칭)지역산림경영센터** : 지역 내 목재 수요와 공급량에 대한 정보 취합·공유 역할 실시
- ▷ **바이오매스 에너지 센터** : 미이용 목재, 산림·에너지 부산물을 활용하여 생산한 열·전기에너지의 수급 연계 담당
 - * 축산분뇨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농식품부 소관으로 산림 지역의 축산분뇨와 산림 목재 바이오매스의 공동 활용을 위한 **농식품부와 산림청의 협력 체계** 구축



자료 : 한국산림과학회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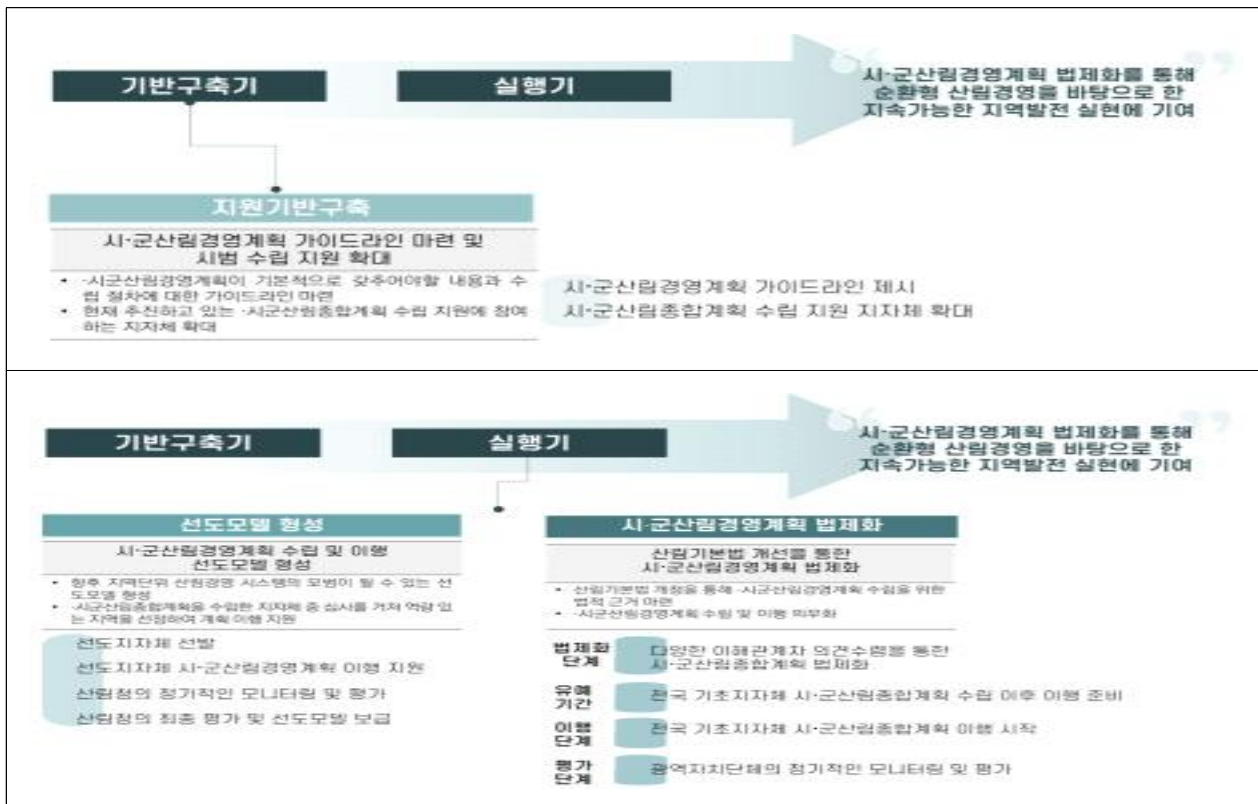
□ 산림계획제도 개선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제시

○ 기반 구축기와 실행기로 구분한 단계별 로드맵

- **(기반 구축기)** 시군산림계획 법제화에 앞서 산림청이 주도하여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가이드라인은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할 시 참고할 수 있는 절차와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함.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시·군 산림계획 수립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계획을 마련한 지자체를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함
- **(실행기)** 선도모델을 형성하고 시군산림계획 법제화를 함께 추진하도록 함. 현재 시군 산림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중 선도 지자체를 선발하여 계획의 이행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단위 산림경영 시스템의 선도 모델을 형성하도록 함

- 아울러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군 산림계획 법제화 시 반영하여야 함. 최종평가 이후 시군 산림계획 수립 및 이행을 준비하는 지자체에 우수사례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림 9> 국내 산림계획제도 개선 단계별 로드맵(上 기반구축기, 下 실행기)



자료 : 한국산림과학회 2022

- 선도모델 형성과 함께 시군 산림계획 법제화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단위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 다양한 영역에 있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제화하고, 기초지자체가 계획 수립·이행에 대한 법적 의무를 지기 전에 유예 기간을 두어 계획 준비 및 이행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군 산림계획을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법적으로 이행하도록 함. 이때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의 계획 이행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수행하도록 함.
-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해 순환형 산림경영 가능성 및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IV. 임업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결과

1. 이해관계자 표적집단면접 결과

- 산림분야 유형별 이해관계자 대표자에 대한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 결과 지자체 산림사업 및 순환형 산림경영을 위한 시·군 산림경영계획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
-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는 광역시도 단위 계획제도로는 지역 상황에 맞는 계획 수립이 어려워 시군 산림 계획의 법정화로 체계적 산림경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함
 - 지역산림의 장단점 분석·진단을 통한 지역 산림관리의 비전과 목표 수립이 가능하고, 중장기 목표달성을 위한 체계와 방법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 제시
 - 국공사유림 통합계획 수립 시 목재생산, 숲가꾸기 등 일련의 순환형 산림경영이 필요하나, 지자체의 관심은 단기적인 수입을 창출하는 산림휴양 및 관광에 치중되고 있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라는 응답을 보임
 - 지자체별로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을 반영한 산림 경영의 비전, 목표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시군 산림계획의 수립을 위해 지역 단위 산림현황 데이터 구축과 산주 등 산림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산림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 산림 현황 파악 및 자료 구축이 부족 하며 특히, 지역 내 목재 수요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보임
 - 수립된 계획의 이행을 위해서는 지역 내 산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가와 지자체, 산주 등의 산림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보임

<표 4>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 유형별 이해관계 대표자 구성

구분	소속
산림청	4개 지방산림청(중부·북부·남부·동부) 담당자
지방자치단체	10개 시/군 지자체 담당자
산림 유관기관(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산주	산림경영인협회 소속 등

2. 산림계획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결과

□ 정책 토론회 개요

- (목적) 지역임업경영 활성화를 위한 시군단위 산림경영계획 제도 도입, 순환형 산림경영 네트워크 체계 구축으로 기후위기,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 (주제) 시군 산림계획제도 개선 및 지역임업 활성화 방안
- (일시/장소) '23. 3. 9.(목), 14:00 ~ 16:40 /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 (참석자) 61명[미래산림특위 10(정은조 위원장 외 9), 산림청(9), 지자체(15), 학계 및 전문가(9), 기타(10), 농특위 사무국(사무부국장 외 7)]

□ 토론회 내용

- (개회사) 미래산림특별위원회 정은조 위원장
- (축사) 경상북도 의성군 김주수 군수,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최무열 회장
- (발제 1) 기후경제·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계획제도 개선(구자춘)
- (발제 2) 시군 산림계획을 통한 지역임업 활성화 방안(이강오)
- 지정토론 : 최병암 좌장 외 9명

* 임업전문가, 농업전문가, 환경생태 전문가, 임업단체, 산림담당과장(산림청 및 지자체) 등

□ 토론 결과

- (임업전문가) 현행 산림기본법 체계에 산림경영 이행, 모니터링 체계 등을 마련하고, 국무회의 심의 대상으로 격상, 추진실적 평가, 예산의 차등지원 등 효과성 제고 방안 강구. 목재이용법, 탄소 중립녹색 성장기본법 등과 산림계획 제도를 연계하고, 지역 목재 이용 지침 마련, 목재의 수공급 매칭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 뒷받침 필요

- (농업전문가) 농업분야 농발계획 수립 시 커뮤니티 계획의 필요성 확인, 분리 영역이 아니라 통합된 유기체적 관점의 계획 수립, 법정계획과 함께 사전 준비 과정이 더욱 중요함. 지자체에 시범 사업으로 작은 규모의 사업부터 추진해 볼 필요가 있음
- (임업단체 1) 임업인 입장에서는 산림계획제도 신규 도입은 규제로 인식이 매우 회의적임. 임업인의 현실을 먼저 개선(시범 사업화 및 컨설팅 강화 등)하려는 인식이 절실함
- (임업단체 2) 임업직불금 도입으로 산림경영계획 수립 보조금이 축소되어 경영계획 수립 비율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시군계획 도입은 산주의 산림경영계획 수립을 더 어렵게 만들 것임
- (환경전문가) 산림경영과 환경, 농업 등은 가치와 가격의 괴리가 커서 매우 어려운 과제로 쉽게 해결하려는 자세는 지양하고, 동해안의 산불피해복원(자연복원과 인공복원 병행 추진) 사례와 같이 시범적 운영 사례를 만들어내고, 변형된 경영모델을 사업·개념화하는 과정 필요
- (산림행정가) 현재 법정 계획도 실행력을 담보 못하는 현실에 비취 산림계획제도 도입에 신중히 접근해야 함. 목재와 비목재를 고려한 모델 필요 및 벌기령은 지역별로 탄력적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참석자) 수요자 관점이 고려되어야 하며, 도시민이 최대 산림이용 수요자측이고, 정부도 공익 수혜자로 비용 지불 의사가 있어야 함

□ 기타사항

- 「시군산림계획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시군에 새로운 규제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미래산림특위 동 안건의 상정 보고서 보완 예정임.

참고 2

우리나라의 산림 및 임업 통계 자료

[산림청 자료]

□ (산림자원) 체계적 산림관리로 임목축적은 증가하지만 산림면적은 감소

구 분	'05년	'10년	'15년	'20년
산림면적(만ha)	639	637	633	630
임목축적(㎥/ha)	79	126	146	165

□ (산림소유) 국유림(국가), 공유림(지자체), 사유림(민간)으로 구분

○ 사유림이 66%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며 국·공유림 순('20)

구 분	면적(만ha)	%	축적(백만㎥)	%	ha당 축적(㎥)
총 계	630	100.0	1,040	100.0	165
국 유 림	166	26.2	301	28.9	182
공 유 림	48	7.7	83	8.1	173
사 유 림	416	66.1	656	63.0	158

○ 사유림은 219만명으로 대부분 3ha 미만의 소규모 산지 보유(21.4%)

구 분	총계	3ha 미만	3~10ha	10~50ha	50ha 이상
산주 수(만명)	219 (100%)	188 (86.0%)	24 (11.0%)	6 (2.8%)	0.5 (0.2%)
소유면적(만ha)	415 (100%)	109 (26.1%)	125 (30.2%)	111 (26.8%)	70 (16.9%)

□ (임가현황) 임가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임가소득은 정체 상태

구분	임가 (만가구)	임가인구 (만명)	임가소득 (만원)	농가 (만가구)	농가인구 (만명)	농가소득 (만원)
'17년(A)	8.4	19.5	3,459	104	242	3,824
'18년	8.2	18.9	3,648	102	232	4,207
'19년	8.0	17.8	3,750	101	224	4,118
'20년	10.3	23.3	3,711	104	231	4,503
'21년(B)	10.4	21.9	3,813	103	222	4,776
증감률(% (B-A)/A)	23.8	12.3	10.2	-1.0	-8.3	24.9

* 임가 (농림어업조사)

- 2021년 12월 1일 현재, 산림면적을 30,000㎡(3ha) 이상 보유하면서 지난 5년 중(2016. 12. 1. ~ 2021. 11. 30.) 육림작업 실적이 있는 가구
- 지난 1년간(2020. 12. 1. ~ 2021. 11. 30.) 벌목업, 양묘업(조림용 묘목 재배업)을 경영한 가구
- 지난 1년간(2020. 12. 1. ~ 2021. 11. 30.) 채취업을 포함하여 직접 생산한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 지난 1년간 판매를 목적으로 산나물, 약용작물, 관상작물, 표고버섯, 유실수(뽕은감, 밤, 호두, 대추, 잣, 은행, 복분자·산딸기)를 일정규모 이상 재배하는 가구, 산나물, 약용작물, 뽕은감, 호두, 대추, 은행, 복분자·산딸기를 각각 1,000㎡ 이상, 표고버섯 800본 이상, 밤 5,000㎡ 이상, 잣 10,000㎡ 이상 재배하는 경우 포함

□ (귀농·귀촌인현황) 귀농·귀촌인은 전년대비 증가

(단위 : 명, %)

구 분	'18	'19	'20(A)	'21(B)	증감 (B-A)	(%)
귀농가구원	17,856	16,181	17,447	19,776	2,329	13.3
귀농인	12,055	11,504	12,570	14,461	1,891	15.0
동반가구원	5,801	4,677	4,877	5,315	438	0.0

* 귀농인 : 동(洞)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 기간(t-1년 11월 1일 ~ t년 10월 31일) 중 읍·면(邑·面)지역으로 이동하여 농업경영체등록명부, 농지원부, 축산업등록명부에 등록한 사람

(단위 : 명, %)

구 분	'18	'19	'20(A)	'21(B)	증감 (B-A)	(%)
귀촌인	472,474	444,464	477,122	495,658	18,536	3.9
귀촌가구주	328,343	317,660	345,205	363,397	18,192	5.3
동반가구원	144,131	126,804	131,917	132,261	344	0.3

* 귀촌인 : 동(洞)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 기간(t-1년 11월 1일 ~ t년 10월 31일) 중 읍·면(邑·面)지역으로 이동한 자 중 학생, 군인, 직장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 귀농인 및 동반가구원, 귀어인 및 동반가구원 제외

□ (귀산촌인현황) 귀산촌인은 5만9천 명으로 전년 수준

(단위 : 명, %)

구 분	'18	'19	'20(A)	'21(B)	증감 (B-A)	(%)
귀산촌인	56,339	57,478	59,294	59,317	23	0.0
귀산촌 가구수	43,155	43,665	46,212	46,347	135	0.3

* 귀산촌인 : '귀농어·귀촌인 통계' 중 산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인, 귀촌인, 귀어인

□ (임산물) '21년 기준 임산물 총생산액은 약 7조 2천억원

- (단기소득임산물) 2조 3,3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

(단위 : 억 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89,652	73,800	65,667	82,855	71,982
단기소득임산물	29,136	29,448	27,278	22,097	23,322
조경재	7,311	7,493	4,608	3,207	3,679
수실류	6,854	6,121	6,211	5,333	5,919
약용식물	5,900	6,148	7,860	6,428	6,237
산나물	4,119	4,732	4,741	3,938	4,071
버섯류	2,481	2,405	2,305	2,261	2,520
수목부산물	2,473	2,550	1,552	930	896
순임목	19,503	20,465	15,686	42,335	29,020
용재	5,111	4,606	4,424	3,806	4,425
조림	993	1,119	1,368	1,444	1,319
양묘	308	398	362	299	337
토석	34,601	17,764	16,549	12,875	13,560

□ 2019년 소유산림 경영계획 수립 여부

1) 소유산림 경영계획 수립 및 숲가꾸기(육림)작업 시행여부

수록기간 : 년 2019 ~ 2019 / 자료갱신일: 2021-10-05 / 주석정보

시점 증감/증감률 행렬전환 열고정해제 새탭열기

특성별(1)	특성별(2)	2019					
		경영계획 수립 여부			육림작업 시행 여부		
		모집단 (명)	그림다 (%)	경영계획이 없다 (%)	모집단 (명)	시행하였다 (%)	작업한적 없다 (%)
전체	소계	6,068	19.8	80.2	1,201	76.3	23.7
집단구분별	독립가	950	50.1	49.9	476	86.8	13.2
	임업후계자	529	44.8	55.2	237	71.5	28.5
	일반산주	4,589	10.6	89.4	488	68.4	31.6
지역별	수도권	634	22.2	77.8	141	75.0	25.0
	강원권	922	10.8	89.2	100	75.0	25.0
	충청권	1,498	25.4	74.6	380	90.9	9.1
	전라권	1,339	33.3	66.7	446	73.3	26.7
	경상권	1,675	8.0	92.0	134	47.1	52.9
산림면적별	3~10ha 미만	4,451	11.5	88.5	513	68.5	31.5
	10~67ha 미만	1,469	39.5	60.5	581	78.8	21.2
	67ha 이상	148	72.5	27.5	107	100.0	0.0

□ 향후 경영계획수립 예정 유무 조사결과

1) 향후 경영계획수립 예정 유무

수록기간 : 년 2019 ~ 2019 / 자료갱신일: 2021-10-05 / 주석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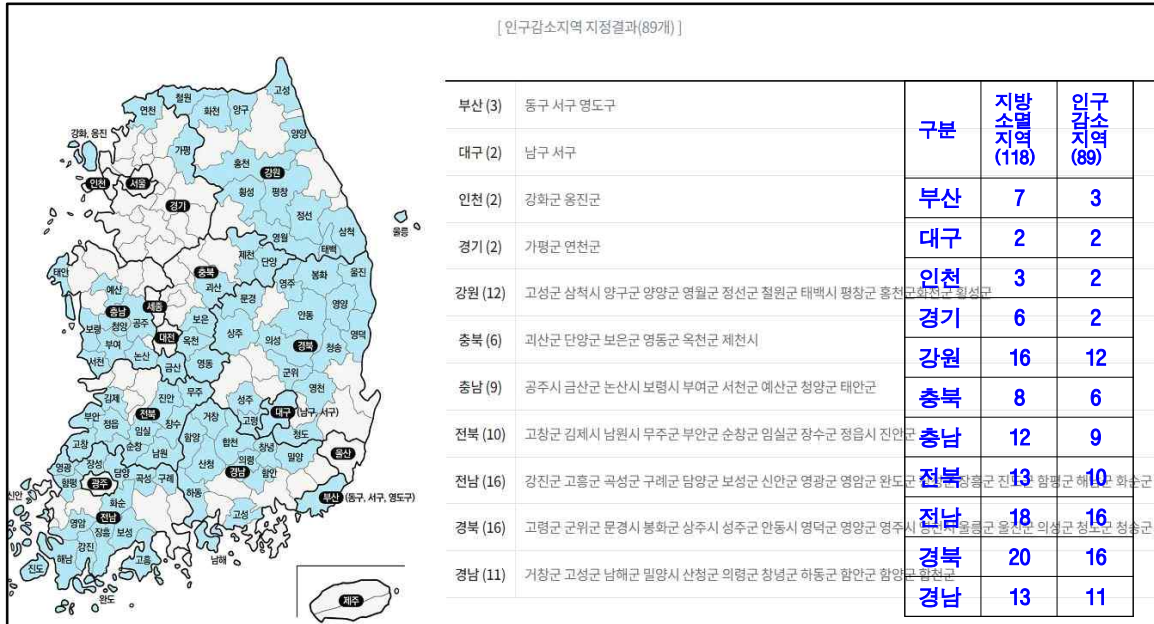
시점 증감/증감률 행렬전환 열고정해제

특성별(1)	특성별(2)	2019		
		모집단 (명)	있다 (%)	없다 (%)
전체	소계	4,867	17.4	82.6
집단구분별	독립가	474	24.7	75.3
	임업후계자	292	27.5	72.5
	일반산주	4,101	15.8	84.2
지역별	수도권	493	0.0	100.0
	강원권	822	13.6	86.4
	충청권	1,118	17.5	82.5
	전라권	893	40.0	60.0
	경상권	1,541	11.7	88.3
산림면적별	3~10ha 미만	3,938	15.9	84.1
	10~67ha 미만	888	25.0	75.0
	67ha 이상	41	0.0	100.0
연령별	40대 이하	224	27.5	72.5
	50대	577	28.6	71.4
	60대	1,702	15.0	85.0
	70대 이상	2,364	15.4	84.6
종사기간별	10년 미만	512	23.4	76.6
	10~20년 미만	931	22.9	77.1
	20~30년 미만	923	18.8	81.2
	30~40년 미만	1,077	17.3	82.7
	40~49년 미만	777	14.9	85.1
전/겸업별	전업	190	11.8	88.2
	겸업	4,677	17.6	82.4

참고 3

지방소멸지역(위험) 인구감소 현황자료

□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지역 현황(행안부 지정 · 고시자료, 2021)



□ 소멸위험지수의 정의

지방소멸위험 분류		지방소멸위험지수	비고
1	소멸위험 매우 낮음	1.5 이상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젊은 여성 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지방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마스다리로아(2014)의 저서 지방소멸의 핵심내용에 착안하여 이상호(2015)박사가 처음으로 개발하여 사용된 것으로 소멸 위험지수는 한지역의 20~39세여성인구의 수를 해당지역의 65세이상 고령인구수로 나눈값이며, 소멸위험지수가 0.5이하이면 소멸위험지역이라 정의함
2	소멸 위험 보통	1.0~1.5 미만	
3	주의 단계	0.5~1.0 미만	
4	소멸 위험 지역	소멸위험진입단계	
5		소멸고위험지역	

□ 지방소멸위험 분류 통계(통계청, 국가통계포탈 자료)

(2023. 2.)

지방소멸위험 분류 등급	시도		시군구		읍면동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전체	17	100	228	100	3,580	100
소멸위험지역(소계)	6	(35.3)	118	(51.8)	1,951	(54.5)
1	0	(0.0)	0	(0.0)	166	(4.6)
2	1	(5.9)	17	(7.5)	328	(9.2)
3	10	(58.8)	93	(40.8)	1,135	(31.7)
4	6	(35.3)	67	(29.4)	778	(21.7)
5	0	(0.0)	51	(22.4)	1,173	(32.8)

□ 국내 인구변화 추이 및 전망(국립산림과학원, 2023 산림과 임업전망)

(단위: 만명)

구분	2020	2025	2030	2040	2050	2060	2070
총인구	5,184	5,145	5,120	5,019	4,736	4,262	3,766
0~14세	631	525	433	443	417	327	282
15~64세	3,738	3,561	3,381	2,852	2,419	2,066	1,737
65세이상	815	1,059	1,306	1,724	1,900	1,868	1,747

*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 5,145만명으로 통계청의 인구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5,120만명, 2050년 4,736만명으로 지속 감소하고, 2070년에는 4천만명 아래로 감소 예측(통계청, 2021.)

□ 인구소멸 고위험 산촌지역 추이(국립산림과학원 2023 산림과임업전망)

(2023. 2.)

비고	명칭	소멸 위험지수	산촌 읍면 개수(비율)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	466 (100.0)	466 (100.0)	466 (100.0)	466 (100.0)	466 (100.0)	466 (100.0)
1	매우 낮음	1.5 이상	1(0.2)	1(0.2)	1(0.4)	2(0.4)	2(0.4)	1(0.2)
2	소멸위험 보통	1.0~1.5 미만	1(0.2)	2(0.4)	0(0.0)	0(0.0)	0(0.0)	1(0.2)
3	주의 단계	0.5~1.0 미만	13(2.8)	13(2.8)	12(2.6)	7(1.5)	6(1.3)	5(1.1)
4	소멸위험진입	0.2~0.5 미만	124(26.6)	124(26.6)	84(18.0)	63(13.5)	52(11.2)	42(9.0)
5	소멸고위험	0.2 미만	327(70.2)	327(70.2)	368(79.0)	394(84.5)	406(87.1)	417(89.5)

* “산촌”은 「산림기본법」제3조에 따라 임야율 70%이상, 경지율 및 인구밀도가 전국 읍·면 평균이하인 읍·면 지역, 109개 시군의 466개 읍·면이 산촌으로 전 국토의 43.5%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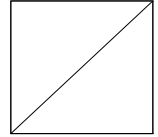
□ 산촌인구의 추이(국립산림과학원, 2023 산림과임업전망)

(단위: 명)

구분	2010	2015	2020	2021	2022
산촌인구	1,459,146	1,438,649	1,401,184	1,383,567	1,368,264
10대 이하	81,153	71,041	60,353	56,548	51,959
10대(10~19세)	126,544	100,193	77,667	74,852	73,433
20대(20~29세)	149,802	133,105	108,149	100,136	92,479
30대(30~39세)	144,621	119,166	102,021	96,311	91,430
40대(40~49세)	204,179	178,743	144,885	137,689	132,511
50대(50~59세)	248,727	274,907	253,166	242,998	234,224
60대(60~69세)	220,136	233,731	300,795	319,644	328,672
70대(70~79세)	204,446	215,842	203,785	199,081	200,161
80대(80+세)	79,538	111,921	150,363	156,308	163,395

* 주. 이상의 자료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jumin.mois.go.kr) 자료 중 466개 산촌 읍·면 인구자료를 발췌하여 작성한 자료임

공 개



의안번호	제2023-5호	의 결 사 항
심 의 연 월 일	2023. 7. 6. (제 17 회)	

후쿠시마 관련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결의문(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 출 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장 태 평
제출 연월일	2023. 7. 6.	

1. 의결주문

- 「우리 수산인과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후쿠시마 관련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결의문(안)」에 대한 의결

2. 제안이유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비과학적인 주장들이 국민 불안을 조성하고, 우리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위원회 차원의 결의문을 제안함

3. 주요내용

- 생산자 단체의 자발적 불안 해소 및 소비 촉진 활동을 지지하며,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비과학적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주장이 우리 수산인과 수산업계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 정부는 우리 수산물과 해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하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한다.
- 국민들께서는 우리 정부의 조치를 신뢰하고, 수산인과 업계에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수산물 소비 촉진에 동참한다.

4. 참고사항

- 농어업위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문 작성의 필요성이 제기('23.6.30)

우리 수산인과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후쿠시마 관련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결의문

2023. 7.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우리 수산인과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후쿠시마 관련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결의문>

(수정 의결문으로 교체)

- 2023. 7. 6.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최근 객관적 정보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들이 국민 불안을 조성하고, 우리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 사고로 유입된 지하수를 다핵종 제거설비(ALPS)로 처리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일부 남아 있는 물질은 희석하여 방류할 계획이다. 그리고 7월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발표했다. 방류 시 안전기준과 절차는 국제기준에 따를 예정이며, 방류된 오염수는 태평양을 돌아 희석되어 측정하기 어려운 수준의 극히 낮은 농도로 4~5년 후부터 우리 해역에 도달하므로 사실상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 해역 200개소에 해양방사성 조사를 확대·실시하고, 기존 100여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수산물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를 전 품목으로 확대 시행한다. 그리고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및 단속을 강화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은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쟁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수산인의 민생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어,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수산인들과 생산자단체의 자발적인 불안 해소 노력과 소비 촉진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이러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한다.
2. 근거가 미약한 비과학적 주장에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주장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수산인과 수산업에 위협적인 요인이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3. 정부는 방류 이후 수산물 안전 관리와 해역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4. 국민들께서는 근거 없는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정부의 조치를 신뢰하고 우리 수산인과 수산업체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여 수산물 소비 확대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

제 17 차 위 원 회

**위원회
기타활동 보고**

정책연구용역 상반기 추진결과 보고

□ 추진 개요

- 장태평 위원장님 취임('22.12.6) 후, 대통령 자문을 위한 농정비전 및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과,
- 향후 농어업위와 농어업인삶의질위 통합에 앞서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개편안 등 대응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 대두

□ 상반기 정책연구용역 과제 추진 내역 (4건)

과 제 명	기 간	소관부서
1 윤석열정부 농정비전 및 중장기 정책방향	22.12.~23.5. (5개월)	농어업 정책팀
2 농어업·농어촌 정책 국민 인식조사	23.3.~23.5. (3개월)	
3 농특위, 농어업인삶의질위 통합에 따른 추진체계 개편 방안	22.12.~23.5. (5개월)	농어촌 정책팀
4 농어촌 삶의 질 지표 개선 및 운영체계 구축	22.12.~23.5. (5개월)	
4건	-	-

□ 연구결과 활용 계획

- 윤석열정부 중장기 정책방향을 포괄하는 농정비전 제시의 근기 및 농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을 위한 다양한 공론화(간담회, 토론회, 워크숍 등)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
- 농어업위와 농어업인삶의질위 관련 기관 협업체계 구축 시 참고 및 위원회 중점 추진과제 발굴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연구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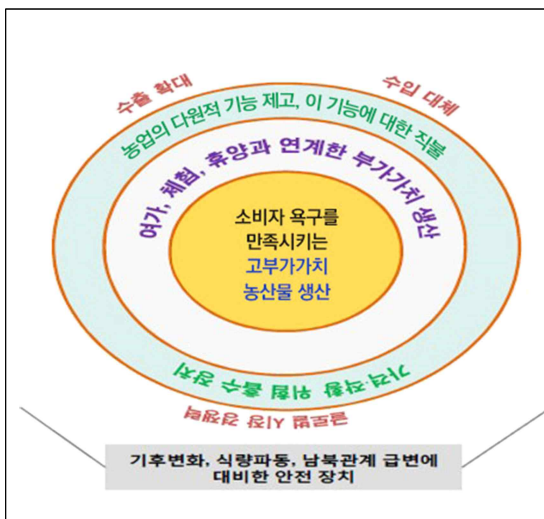
1 「윤석열정부 농정비전 및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 결과

I 연구배경 및 목적

- 윤석열정부의 국정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고, 농어업인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원리에 입각한 큰 틀의 농정비전과 방향 도출
- 고령화 및 인구절벽, 관행농업의 한계, 기후위기, 식량안보 등 농어업 여건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미래지향적 농정을 구현하여야 할 시점

II 농어업 · 농어촌의 비전

□ 시장중심으로 신성장을 이끄는 혁신정부, 농어업인의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



- 시장기능 활성화, 농업의 디지털화, 수출 증대를 통한 글로벌 신성장 산업화 및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농수산물 선택적 생산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 안전한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 농어촌 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농어업인과 국민의 행복 증진

□ 핵심전략과 주요내용

전략	1. 시장기능 활성화	2. 기술 및 경영 혁신	3.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
내용	시장중심 수급 조정과 산업혁신을 촉진, 안전하고 안정적인 농식품 공급 체계 구축	첨단 디지털 및 바이오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밀 농업 확산, 식품 산업 성장 및 K-Food 수출 촉진	경영체 직황 및 가격 위험 완충, 공익형 직불제 확충으로 농어가 소득 안정 및 삶의 질 향상

Ⅲ 중장기 정책방향

핵심전략	정책방향
전략 1 시장기능 활성화	① 진입과 퇴출 원활화 : 농지 유통화 촉진과 농업금융 개혁 ① 농지 이용과 소유규제에 대한 근본적 논의로 농지제도 개선, 경영이양 직불제 강화, 농지은행 농지매입 규모 확대 및 임대차 사업 활성화 ② 농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민간금융의 참여 촉진, 투자 중심의 직접 금융 확대, 농식품 모태펀드 기능 강화 ② 주요 농식품 비축제도 개편: 국제 공급망 기반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 ① 세계적 공급망 차질 등 위기 대응 수단으로 필수 농산물 비축제도 구축 ② 주요 수출국과 협정 체결로 안전장치 확보, 장기적으로 동아시아지역 역내 공동 식량비축제도 검토 ③ 정책 추진 체계 혁신: 정책 대상의 공정한 선별과 시장주의적 관리 ① 소득과약을 위한 농업소득세,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가세 부과 검토 ② 민간 및 시장 중심 지식 창출과 확산, 정부 공공부문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혁신 생태계, 인프라 조성에 집중 ③ 중장기 중점 프로그램 중심 정책 수립 및 법률 형식의 의무적 예산 편성
전략 2 기술 및 경영혁신	④ 디지털 정밀농업 추진: 노지스마트 농업 활성화, 농지 기반 구축 ① 인력부족, 탄소중립 등 당면한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지농업 단계별 디지털화 전략 추진 ② ‘(가칭)디지털 경지정리사업’을 통한 농지기반 구축 등 종합계획 수립 ③ 농업지식혁신체계(AKS) 구축, 주체 간 상호작용, 지속적 학습 및 혁신 능력 강화 ⑤ 식품산업 성장 및 수출 촉진: 푸드테크 산업 육성, KFood 수출산업화 ① 푸드테크 산업 정의, 기본계획 수립, 공통 규격 및 안전·위생기준, 사업지원 근거 마련 등을 위한 ‘(가칭)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② 문체부 등과 협업하는 다부처 사업 및 한류 마케팅 대폭 확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농식품 해외 시장 정보 인프라 구축
전략 3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	⑥ 경영체 소득 안정화: 소득 변동 완화와 재해 및 가격위험 축소 ① 소득 안정을 위한 위험 원충 시스템 구축, 생산성 유지로 소비자 요구 충족 ② 농가단위 소득 변동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정비, 가격 변동 원충 대책 추진 ⑦ 공익직불제 확대개편: 원칙과 목적에 맞게 확대, 시장기능의 보완 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증진, 국민민이 공감하는 다양한 선택형 공익 프로그램 확충 ② 의무이행 조건 준수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 및 정책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 ⑧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농촌특성에 맞는 전문 서비스 강화, 다부처 연계사업 ① 농어촌 자원에 기반하는 다양한 경제활동 기회와 일자리 창출 및 확대 ② 디지털 농촌뉴딜로 365생활권 고도화, 농촌형 서비스 전달체계,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③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의 위상 강화, 삶의 질 정책의 실효성 증진 및 역할 확대

■ 「농어업·농어촌 정책 국민 인식조사」 연구 결과

I 연구배경 및 목적

- 농업분야 디지털화 진전, 기후위기, 글로벌 인플레이션, 미·중 패권 경쟁 등 농어업 정책관련 대내외 환경 급변
- 국민과 농어업인의 정책 기대와 문제 의식을 직접 조사하여, 농어업·농어촌의 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 수립에 활용

⇒ 조사대상 : 농어업인, 일반국민, 전문가 3개군 대상 설문 개발, 조사 (총 2,090명)

구분	농림어업 종사자		일반 국민	전문가
	농업인	임·어업인		
조사 대상	현재 농업을 주 소 득원으로 하는 국민	현재 임·어업을 주 소 득원으로 하는 국민	만 19세 이상 성인 남·여	농·어업 관련 전문가
표본 수	850명	150명	1,000명	90명

II 주요 조사 결과

-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한 정책목표가 될 필요
 - 쌀을 비롯한 밥상에 오르는 전통 농산물에 대해서는 국내 공급이 불안정해져서 가격이 급등(42.5%)할 것을 우려
 - 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지불의사(품목별 평균 54.6%)가 있으며, 이는 안전성(42.2%)과 신선도(21.6%), 품질(18.9%) 등에 기초
 - 일반 국민이 원하는 안전 농식품의 신선도와 품질을 유지, 동시에 충분한 공급을 통해 식량안보에 대한 불안(61.4%)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 저렴한 농축산물 공급으로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유통의 비효율성 제거(86.7%), 국내 생산기반의 정비와 확충(64.3%) 등을 요구
- 모든 국민의 삶의 공간으로서 농어촌지역이 여가와 휴양의 쾌적한 터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목표가 될 필요
 - 농어촌지역의 생태 환경 보전을 위해 국산 농축산물 가격의 인상도 충분히 수용(품목별 평균 71.8%) 가능한 상황

- 농어업이 환경생태 보전과 조화를 이루면서 농어촌이 쾌적한 여가와 휴양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음.
- 농어가 소득의 안정화(농업인 69.5%, 임업인 72.0%, 어업인 52.0%가 1순위 과제로 지목) 또한 중요한 정책목표가 될 필요
 -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쾌적한 여가와 휴양공간의 제공은 농어업인의 존재 없이는 불가능, 농어업인의 존재는 안정적 소득이 뒷받침되어야 함.
- 농업인들은 시장원리에 의한 생산 및 가격 조정(70.2%*), 기업의 농업 분야 진출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66.1%)하고 있음.
 - * 쌀가격 하락이유 : 소비감소(53.1%), 쌀 수입 지속(17.1%)
- 쌀문제 관련 시장 원리를 상당 부분 정확히 인지, 타작물 전환(20.8%)과 가공식품 활성화(19.4%)를 주요 대안으로 지목하여 정부 정책에 동의

Ⅲ 정책적 시사점

- 농업 생산 기반 및 금융 여건의 정비 : 고소득 타 작목으로의 전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생산(기반) 및 금융 여건의 정비
- 농업계의 진입과 퇴출의 원활화(장벽 제거 등) : 의욕이 있는 누구라도 농업에 진입해 제약 없이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각종의 규제와 장벽을 제거(농지 유동화 촉진 및 농업금융의 접근성 확보)
- 기술 농업으로 전환(첨단 기술의 내재화) : 일손 부족과 고령화 문제 해결,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첨단 과학기술에 근거한 디지털 정밀 농업으로 전환이 불가피, 연구개발은 현장 문제 해결중심으로 추진
- 농어가의 경영위험을 완화 : 농업경영에 따른 위험(재해 및 이상 기후로 인한 단수 및 가격 급등락 등의 위험)을 완충해 주는 제도적 장치 필요
- 농어촌 공간의 재구조화 : 쾌적한 농어촌 생태 환경에 대한 요구와 기대를 정책에 적절히 반영
- 농어업의 성장 및 수출산업화 :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생산, 판매, 가공, 수출)하고, 푸드테크 등 식품산업의 성장을 통해 농어민 소득 증진으로 연결

3 「농어업위, 삶의질위 통합에 따른 추진체계 개편방안」 연구

I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22.7.5)에 따라 총리 소속의 '농어업인 삶의질위원회'를 폐지하고 대통령소속 '농어업위'로 기능 이관 결정
 -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법」 및 「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접수('22.9.30, 정부발의) 및 법안소위 계류 중('22.11.10)
- 농어업인 삶의질 대책과 농어업·농어촌 위기 대응 등 농정 주요 정책을 효과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농어업위 역할·기능에 대한 재정립 필요
 - 양 위원회의 미흡한 기능을 보완하고, 법 개정안 통과 후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안착 될 수 있도록 기능 및 운영체계 개편 필요

II 추진방안

- ① 효과적 정책 추진을 위한 위원회 기능 강화
 - (미래 의제 주도) 농어업·농어촌 위기 대응, 삶의 질 향상 등 다부처 협업, 중장기 정책방향, 사회적 합의 필요 과제를 논의 강화
 - 미래 농어업·농어촌 정책 의제를 주도하면서 원활한 농어업·농어촌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중장기 발전계획*을 담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농어업인 삶의질 기본계획 등
 - (이행력 제고) 삶의 질 업무 전 과정에 관계부처 참여를 확대하고, 대통령 주재 회의(보고) 정례화 등 안전의 이행력 확보
 - 삶의 질 기본계획 등 추진실적이 저조한 과제에 대한 개선조치 등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 주재 회의 정례화
 - (협업 강화) 타 위원회 및 관계부처와의 협업으로 공감대 제고
 - 타 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등), 관계 부처(국장급)와 정기(반기 1회) 간담회 추진으로 농어업위 안전 상황 공유 및 의견 수렴

② 전문성 제고를 위한 분과위·사무국 조직 개편

- (분과위) 삶의 질 업무 수행을 위해 **삶의질분과위**를 설치하고,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국장***을 당연직 분과위원으로 위촉

* 분과위 관계부처 국장급(삶의질분과위: 복지부, 국토부, 교육부, 행안부 등)

- (사무국) 단-국-과* 3단계 형태로 개편(안) 검토

* 국(2급)→ 단(1급), 팀(4급)→ 과(3·4급), 개인사무 분화 및 팀 개편

- 정책기획·조정, 삶의질 기본계획 수립 및 조사·분석 기능 수행을 위해 **별도의 국(삶의질지원국), 과 신설** * (현행) 1국-5팀 → (개편) 1단-2국-9과
- 삶의질 업무의 조정기능 강화, 효과적 심의를 위해 **관련분야**(보건복지, 문화, 지역개발, 환경, 교육 등) **소속 공무원 파견 및 전문인력 확보**

* 현재 농어업위 인력은 농식품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광역지자체 소속 공무원 및 관계기관(농협, 수협, 농어촌공사, AT, 마사회, 복지진흥원 등) 파견으로 구성

③ 적정 규모의 예산 확대

- 통합 위원회 예산은 사무국 업무 수행과 삶의질위 조사 및 평가 분석 기능 확장에 따라 **92.8억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

- 농특위 사무국 36.5억원, 삶의질위* 업무 20.0억원, 조직개편에 따른 추가 인건비 및 운영비 등 36.3억원 * 민간위탁사업비

Ⅲ 향후 논의 과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법 개정방향(안)

- ① "농어업위가 「농어업·농어촌 관련 국가장기발전계획」수립한다."
- ② "농어업·농어촌 국가장기발전계획은 부처별 법정계획을 수립하는데 근거가 된다."
- ③ "관계기관은 농어업·농어촌 국가장기발전계획의 농어업·농어촌 정책환경과 정책방향에 근거하여 국가법정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한다."
- ④ "농어업위는 농어업·농어촌 국가장기발전계획의 달성을 위해 관련 국가법정계획의 적정성 심의와 관련 사업의 정책평가를 수행한다." 명시
- ⑤ 농어업위에 설치되는 삶의질정책국과 삶의질정책과가 과거 삶의질위의 실무위원회를 대체한다는 사항을 포함

4 「농어촌 삶의 질 지표 개선 및 운영체계 구축」 연구

I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정부는 농어업인,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나, **도농 대비 삶의 질 격차***는 여전

* '22년 농어촌 주민 정주만족도 조사 결과 도시 지역 만족도 평균 6.4, 농어촌 지역 만족도 평균은 5.3(KREI, 2022)

- 농어업·농어촌 사회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도출하기 위해 **과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지표·지수, 통계 기반 구축과 체계적인 평가** 필요
 - 각 기관에서 다양한 통계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등을 적기에 보여주고 기본계획 등 정책과 연계된 지표·지수는 미흡한 상황

⇒ **농어업위 중심으로 농어촌 삶의 질 지표·지수를 구축·관리하고, 삶의 질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자체 차원의 정책 근거자료로 활용 필요**

II 농어촌 삶의 질 지표·지수 구성(안)

- 지표·지수 체계 구성 기본원칙

- ① (신뢰·지속가능)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통계로 구축
- ② (정책 포괄성) 농어업·농어촌 삶의 질 기본계획 영역을 포함
- ③ (단순성) 지표·지수 항목 구성 시 많은 통계를 포함하지 않도록 함
- ④ (개방성) 사회 및 정책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방성 유지

- 농어촌 삶의 질 지표·지수 구성을 위한 **영역 및 항목**

- 농어촌 삶의 질 지표는 5개 분류를 기반으로 19개 세부지표 도출
 - 5개 분류는 ①경제 ②보건·복지 ③환경·안전 ④문화공동체 ⑤지역회복으로 구분
 - 분류 영역은 핵심지표와 일반지표로 구성

- 핵심지표는 각 분류 영역에서 1개씩 선정하여 총 5개로 구성
- 일반지표는 각 분류 영역별 지수화 시 활용

< 농어촌 삶의 질 지수 세부지표 >

분류	세부지표	정의	핵심지표 선정기준
경제	1인당 지역내 총생산 (Key Indicator)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지역내총생산(GRDP)은 시군구별 주민등록인구로 나누어 산출	농어촌 주민의 삶, 생활 수준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것은 소득 관련 지표이나, 현재 시군구별로 발표되고 있는 지표가 부재하여 동 변수를 대리 변수로 활용
	고용률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천명당 사업체 수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인구 대비 지역사회 사업체 수	
	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	
보건·복지	자살사망률 (Key Indicator)	해당 지역 내 자살 사망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인구 십만 명당)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상단에 위치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며, 중고령층과 노인의 자살률이 높은 상황임. 특히 농촌지역은 고령인구가 도시에 비해 높으므로 조치가 필요
	기대수명	특정 연도의 0세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	
	긴급복지지원건수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건수	
	보건복지예산비율	지자체 당해연도 전체 예산 중 보건 및 복지예산이 점유하는 비율	
문화·공동체	삶의 만족도 (Key Indicator)	지역 주민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	지역 내 주민 삶의 질과 지속적인 거주 의사 결정을 판단함에 있어서 활용 가능
	문화여가 시간	주당 평균 여가 활동 시간	
	사회적 네트워크	도움이 필요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친척, 친구가 있는 비율	
	가사분담비율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비율	
환경·안전	빈집 (Key Indicator)	빈집(=주택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시설)비율	지역 내 빈집은 주거 또는 생활환경과 주변 경관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개선 및 관리 지표로 활용 가능
	인구 만명당 5대 주요 범죄 발생 건수	지역에서 발생하는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발생 건수	
	하수도보급률	총인구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통해 처리되는 하수 처리구역 내 하수처리인구의 비율	
	주민 1인당 생활계 폐기물 처리량	주민 1인당 배출하는 생활계 폐기물의 처리 양	
지역회복	합계출산율 (Key Indicator)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은 지역의 소멸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며, 농어촌 사회에 있어서 여성인구의 생활과 아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측정 가능한 지표
	인구순이동	인구 전입에서 전출을 제외한 인구 : 하위지표로 연령 혹은 성별 순이동수 고려	
	교통접근성지표	집계구 중심에서 서비스 시설까지 승용차 또는 대중교통 등을 시간대별로 측정하여 지표화(생활시설)	

Ⅲ 향후 과제

- ① (모니터링) 경제,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환경·안전, 지속가능의 5개 영역별로 일정 규모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지수(표)검토위원회’ 운영
 - ② (인센티브) 농어촌 삶의 질 지수가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자체 재정적 지원 연계 방안 모색
 - ③ (평가 연계)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25~’29)부터 농어촌 삶의 질 지표·지수를 평가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④ (법·제도) 지표·지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법」에서 통계수집·관리, 모니터링 등에 관한 법적 명시 필요
- 후속 과제 「농어촌 삶의 질 지수 예비조사 및 모니터링 모델 마련」 추진계획
- 19개(+a) 세부지표별 조사 및 분류별 지수화(9월까지)
 - 예비조사 중 필요에 따라 일반지표 수정 및 추가 가능

참고 1

「윤석열정부 농정비전 및 중장기 정책방향」 보고서[요약]

I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 ☐ 고령화 및 인구절벽, 관행농업의 한계, 기후위기, 식량안보 등 농어업 여건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미래지향적 농정을 구현하여야 할 시점
- ☐ 윤석열정부 국정비전과 국정목표를 담아 낸 중장기 농정비전 및 정책방향 도출 및 제안을 통해 위원회 역할 및 기능 확대
- ☐ 농어업인, 일반국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정책 기대와 요구를 확인*하여 농어업위 산하 각급 위원회 의제 선정 및 논의에 참고

* 「농어업·농어촌 정책 국민 인식조사(‘23.3.8~5.10)」 실시 및 결과 반영

2. 연구 목적

- ☐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원리에 입각한 혁신적 농어업·농어촌 정책 추진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방향 도출
- ☐ 한국 농어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위한 중점 추진 과제 제시
- ☐ 농어업·농어촌 분야 다부처 협력과제 등 농어업위의 중점 추진 의제 및 역할 확대 방안 연구 등

II

주요 연구 결과

1. 농정기조 전환의 필요성

- ☐ 한국 농업의 도전 과제 : 농업 생산 성장 정체 및 제약 요인
 - (환경부하) 세계 최고 수준의 토지생산성 이면에, 비료와 농약 세계 최고 수준 투입, 높은 가축 밀도를 유지해 온 결과로 환경적 부담이 큼

-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세계적인 탄소배출 감축 이행도 농업생산에 부담으로 작용
- (농업인력) 농업인력의 고령화가 최고점에 도달해 앞으로 감소 속도가 급격히 높아질 우려

□ 새로운 시대의 전개 : 농업 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인력 흐름 변화

- (부가가치) 2010년 이전에는 '농림어업생산 증가 - 실질 총소득 감소'의 괴리가 발생했으나, 2010년 이후부터 농림어업생산은 정체 - 실질 총소득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향후 농업분야 부가가치 증대 가능성
- (규모화) 2020년 기준 3ha 이상의 농가는 전체 농가의 약 7%에 불과하지만, 총 경지면적의 약 42%를 점유하고 있음(5ha 이상은 3%이지만 총 경지면적의 28.1%를 차지)
- (인력유입) 2000년대 들어 저성장구조로 접어들어 따라 퇴직자의 귀농은 물론 20대부터 귀농이 시작되어 최근 10년간 귀농률이 연평균 6.3%대에 이르고 있으며, 30~40대에서도 귀농률이 증가

2. 국정과제의 방향과 국민 인식조사의 시사점

□ 120대 국정과제의 방향 검토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6개의 국정 목표와 23개의 약속, 120개 국정과제 내용을 검토, 농어업 및 농어촌과 연계성을 갖는 과제를 확인
 - 국정 목표 2, 3, 4, 6이 농어업 및 농어촌과 연계*
 - * 2. 농어업에서 정부와 시장의 역할 정립, 3. 치유 및 돌봄 농업, 휴양 및 관광 농어업, 수출산업화, 4. 탄소중립, 스마트 농어업, 6. 농촌 재생(소멸 방지, 농촌교육 포함) 등

□ 2023~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시사점

- **식량안보 확보**를 강조 : 식량자급률 제고 및 국내 비축 및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고품질 먹거리 공급
- **농식품산업의 육성**을 중점 추진 : 미래 세대 농업인 육성, 미래 신성장 동력 강화
 - 첨단 디지털 및 바이오 기술에 기초한 스마트 정밀농업의 추진, 그린바이오 산업 및 푸드테크 육성과 수출 촉진, 청년농, 스타트업 등 농식품 벤처를 위한 정책 펀드 조성
- **튼튼한 농가경영 안전망** 구축·강화 :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 및 농업직불제를 확대·개편, 농가별·품목별 수입·매출 정보 기반 경영안정 프로그램 단계적으로 도입
- **농촌주민·도시민을 위한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공간 조성** 강화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 농촌 맞춤형 사회 서비스 보장,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규모 확대

□ 농어업위 국민 인식조사 결과의 시사점

- **농업 생산 기반 및 금융 여건의 정비** : 고소득 타 작목으로의 전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생산(기반) 및 금융 여건의 정비
 - 다만, 타 작목으로 전환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하므로 모든 중장기 정책은 시장기능과 모순되지 않아야 함.
- **농업계의 진입과 퇴출의 원활화(장벽 제거 등)** : 의욕이 있는 누구라도 농업에 진입해 제약 없이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각종의 규제와 장벽을 제거(농지 유통화 촉진 및 농업금융의 접근성 확보)
- **기술 농업으로 전환(첨단 기술의 내재화)** : 일손 부족과 고령화 문제 해결,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첨단 과학기술에 근거한 디지털 정밀 농업으로 전환이 불가피, 연구개발은 현장 문제 해결중심으로 추진

- **농어가의 경영위험을 완화** : 농업경영에 따른 위험(재해 및 이상 기후로 인한 단수 및 가격 급등락 등의 위험)을 완충해 주는 제도적 장치 필요
- **농어촌 공간의 재구조화** : 쾌적한 농어촌 생태 환경에 대한 요구와 기대를 정책에 적절히 반영
- **농어업의 성장 및 수출산업화** :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생산, 판매, 가공, 수출)하고, 푸드테크 등 식품산업의 성장을 통해 농어민 소득 증진으로 연결

3. 선진국 농정과 시사점

<동향>

- EU 공동농업정책(CAP)은 초기 가격지지를 통한 농업소득 보장 및 생산 확대에서 직불제(제1축)를 도입하여 농업소득 보장을 가격지지와 분리하고, 농업의 환경 기여를 강화하는 한편 최근 들어서는 농촌 활성화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 환경 문제에 대한 대처를 강화
- 대외 시장 지향성이 높은 네덜란드와 자급률 유지 및 농업의 환경적 가치를 강조해온 스위스 양국 모두 ‘지속가능성’ 의제를 중시
- 미국 농정에서 주요 정책 대상 농산물에 대한 가격하락(수입 손실) 위험을 흡수하는 농가경영 및 소득안정 지원 제도가 농정의 핵심으로 자리매김

<시사점>

- 2020년 공익직불제 개편 이후 쌀 목표가격제 폐지, WTO 체제와 주요국과의 FTA 체결을 통한 농산물 시장개방 심화, 극심한 기후변화 등 농산물 생산 및 가격조건 악화와 농가소득 및 경영위험이 높아지는 국내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도 농가의 경영 및 소득 안정망 확충에 관심을 두어야 함
-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으로 인한 되풀이되는 가격 폭락 현상을 줄이기 위해, 농업의 근간이 되는 쌀 포함 기초 농산물을 적절히 선별하여 정책 대상 지원 품목을 확대해 나가면서 논 활용 대체 작목을 육성해 나갈 필요

- 미국의 생산비 연계로 운영되는 가격손실보상(PLC)과 수입손실보상제도(ARC)와 같이 농업생산의 불확실성과 시장가격 위험으로부터 농가의 가격 및 수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
- 중장기적으로 미국과 같이 농업보험, 비보험작물지원제도와 긴급재해 지원 제도를 확충하여 이들 주요 정책 수단 간의 조화로운 연계 방안을 찾아 농가가 직면하는 경영 및 소득위험 관리 정책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필요
- 농업생산자가 정부정책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농업자원 및 환경보전관련 최소한의 이행조건을 발굴하고, 기본적 의무 준수를 전제로 농가 지원책을 연계해 나갈 필요
-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한 농가와 지역 특성을 감안한 메뉴형의 다양한 공익형 프로그램 유형을 개발하고 도입
 - 농가의 환경보전 의무이행 조건 준수에 대한 효과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성과관리
- 미국과 같이 다양한 국민영양 및 취약계층에 대한 농식품 지원 정책에 대한 예산을 확충하여 국산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의 핵심적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 나가야 할 것임
- 우리나라의 농업재정지출 방식도 미국과 같이 법률에 기반하여 최소한 연간 재정지출의 변동성이 높은 가격하락 대응 경영지원제도나 농업재해보험사업을 우선적으로 법정 의무지출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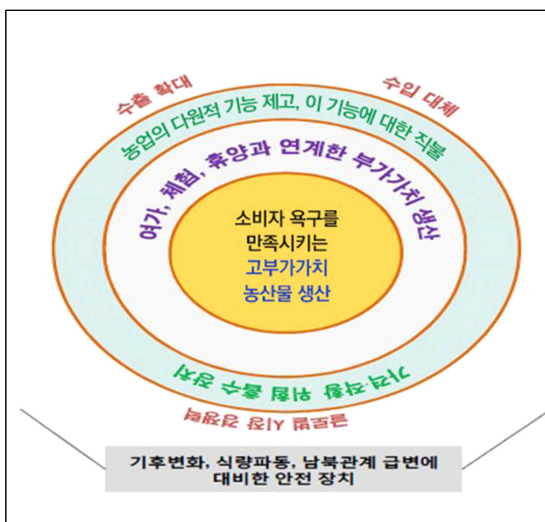
Ⅲ

농업 · 농촌의 비전과 중장기 정책방향

1. 농업 · 농촌의 비전

시장중심으로 신성장을 이끄는 혁신정부, 농어업인의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

- 한국 농어업의 존재이유는 기본적으로 농어업인을 포함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음.
- 한국 농어업은 농어촌의 자연과 문화와 연계하여 달걀 구조를 구축



- 시장기능 활성화, 농업의 디지털화, 수출 증대를 통한 글로벌 신성장 산업화 및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농수산물 선택적 생산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 안전한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 농어촌 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농어업인과 국민의 행복 증진

-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위해 농어업의 경영을 든든히 보장하며, 농어업이 시장기능 중심으로 성장 산업화하는 윤석열정부의 농어업·농어촌 분야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함
-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지향점 다음과 같음
 - 먹거리 안보 :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 쾌적한 여가와 휴양 공간 제공 : 생태환경 보전과 지역 특성과 연계
 - 지속 가능한 경영체 발전 : 농가소득의 안정화

2. 추진 전략

1. 시장기능 활성화 2. 기술 및 경영 혁신 3.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

□ 시장기능 활성화 : 수급 조정과 혁신 유발 기능의 촉진

-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농어업이 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상품의 종류와 특성, 생산량이 변화하여 수급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
- 농어업이 국민의 삶을 높이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체 간, 조직 간, 지역 간 생산성, 상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위한 경쟁과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혁신이 이루어져야 함.

□ 기술 및 경영 혁신 : 첨단 디지털 및 바이오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밀농업

- 농어업·농어촌의 프론티어가 확장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밀농업으로 전환을 목표로 설정하고, R&D, 금융, 교육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이러한 전환은 농업노동력의 고령화 및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기후 변화 대응 탄소중립 농업으로의 이행을 촉진시켜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대

□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 : 농가 경영안정 및 시장기능의 보완

- 정부는 개별 경영체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작황 및 가격의 변동 위험을 완충하는 역할에 집중
- 정부는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는 안정적 먹거리 공급과 환경생태 보전, 탈탄소 등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또 다른 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필요
- 정부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이 위협을 받는 경우나 혹은 생태환경의 보전이 위협을 받는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3. 중장기 정책방향

전략 1	① 진입과 퇴출 원활화 : 농지 유동화 촉진과 농업금융 개혁
시장기능 활성화	② 주요 농식품 비축제도 개편: 국제 공급망 기반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
	③ 정책 추진 체계 혁신: 정책 대상의 공정한 선별과 시장주의적 관리
전략 2	④ 디지털 정밀농업 추진: 노지스마트 농업 활성화, 농지 기반 구축
기술 및 경영혁신	⑤ 식품산업 성장 및 수출 촉진: 푸드테크 산업 육성 KFood 수출산업화
전략 3	⑥ 경영체 소득 안정화: 소득 변동 완화와 재해 및 가격위험 축소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	⑦ 공익직불제 확대개편: 원칙과 목적에 맞게 확대, 시장기능의 보완
	⑧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농촌특성에 맞는 전문 서비스 강화, 다부처 연계사업

① 진입과 퇴출 원활화 : 농지 유동화 촉진과 농업금융 개혁

○ 농지 이용과 소유규제에 대한 근본적 논의로 농지제도 개선

-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라 향후 많은 고령농의 은퇴가 현실화되고, 상속으로 인한 비농민 농지소유 비중은 급속히 증가 전망
- 비농민 소유 농지가 신규농업인에게 쉽게 이전되도록 농지법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특히 고령 은퇴 농가 소유의 농지가 쉽게 유동화 되는 방안 마련)

○ 고령농가의 은퇴 촉진과 농지 유동화를 활성화하는 경영이양직불제 강화

- 지불 대상 연령 및 영농경력 조건 조정, 지불 단가의 인상과 지불 대상 농지의 요건을 더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
- 경영 이양 지원은 구조조정 차원이 아니라 은퇴를 원하는 농업인의 은퇴 장벽을 제거하는 데 목표*

* 시장기능과 농가의 영리적 선택에 따라 농업구조는 대농 중심으로 빠르게 개편되고 생산도 조절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농정의 역점

○ 농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민간금융의 참여 촉진, 투자 중심 직접 금융 확대

- 농업 혁신성장인 농업경영체의 규모화, 첨단화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민간금융의 농업 부문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혁신생태계 조성
- 신규창업농, 기술 기반 농업경영체에 대해 사업성에 기반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 부문도 직접금융 시스템 및 농식품 모태펀드 기능을 강화(장기적으로 산업진흥-기술금융 통합 검토)

② 주요 농식품 비축 제도 개편 : 국제 공급망 기반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

- 세계적 흉작, 국제 분쟁, 글로벌 공급망 장애 등으로 일시적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그 지속 기간, 품목별 공급 부족량 등을 판단하여 이를 국내에 비축하는 방안을 확립
- 곡물 수요의 상당한 부분을 해외 조달에 의존상황에서 자급률 향상 중심으로 식량안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성 낮음.
- 농산물은 곡물 뿐만 아니라 과일, 축산물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자급률이 높은 농산물도 대흉작 등에 대응하여 필수 비축제도 운용을 검토 (민간 기업 등의 비축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비용을 보전)
- 비상시 국내 기업이 확보한 곡물을 안정적으로 국내에 반입하기 위해 수출국과 필요한 협정을 체결하여 안전장치를 마련
- 현재 정치 외교적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 역내 공동 식량비축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검토

③ 정책 추진 체계 혁신 : 정책 대상의 공정한 선별과 시장주의적 관리

- 소득파악을 위한 농업소득세,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가세 부과 검토
 - 농정이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되려면 정책 대상인 농업경영체 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농업소득 파악이 핵심
 - 부가세 도입(영세율 감안)거래관계의 투명성이 높아져 수입농산물의 부정 거래, 원산지 위반, 수급관리를 위한 유통정보의 파악 등이 가능하여 농산물 가격안정에도 기여
- 민간및시장중심 지식 창출과 확산, 정부 공공부문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혁신 생태계, 인프라 조성에 집중
 - 개별경제 주체에게 귀속되는 이익을 위한 지식 창출과 확산은 민간과 시장에 맡김
- 중장기 중점 프로그램 중심 정책 수립 및 법률 형식의 의무적 예산 편성
 - 정책은 프로그램 중심으로 수립하고 프로그램은 법률로 규정하여 예산을 의무적 지출 중심으로 편성.
 - 농정을 주요 분야별로 정책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각 프로그램은 법률에 규정하며, 법률에 지원의 방식과 기준을 규정하여 필요 예산이 매년 자동으로 산출되도록 함.

④ 디지털 정밀농업 추진 : 노지스마트 농업 활성화, 농지 기반 구축

- 인력부족, 탄소중립 등 당면한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지 농업 단계별 디지털화 전략 추진
 - 현재 시설농업 중심으로 스마트 농업이 확산되고 있으나, 당면한 농업환경 여건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지 농업의 디지털화가 중요
- ‘(가칭)디지털 경지정리사업’ 을 통한 농지기반 구축 등 종합계획 수립
 - 자율주행 농기계가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농로, 기본적 센싱 시설 등이 마련된 농지의 구획화 등을 재추진하고, 기술 개발사업화를 지원하는 추진체계를 구축

○ 농업지식혁신체계(AKIS) 구축, 주체간 상호작용, 지속적 학습 및 혁신 능력 강화

- 정부 중심의 농업 연구개발과 보급지도 체계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왔으나, 새로운 시대의 혁신 요구에 부응하는 데는 한계 존재
- 농업 지식혁신체계 내 수요자의 영향력 확대 및 주체 간 상호작용 강화
- 농기업과 농가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주체 간 파트너십과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농업기술 혁신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체들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미래 신기술에 대한 농가의 수용성을 높이는 길임.

⑤ 식품산업 성장 및 수출 촉진 : 푸드테크 산업 육성, K-Food 수출산업화

○ 푸드테크 산업 정의, 기본계획 수립, 공통 규격, 안전 및 위생기준, 사업지원 근거 마련 등을 위한 ‘(가칭)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 부처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푸드테크 관련 다양한 R&D 사업의 통합관리체계구축
- 푸드테크 분야별 새로운 산업분류 코드를 부여하고, 업체와 시장에 대한 통계를 신속히 구축

○ 문체부 등과 협업하는 다부처 사업 및 한류 마케팅 대폭 확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농식품 해외 시장 정보 인프라 구축

- 수출시장 다변화에 따라 아세안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비관세장벽에 대한 DB를 확충하고 수요자 참여형 정보조사 확대를 통해 해외 정보제공
- 해외 시장 정보제공 시스템 고도화, 수출 관련 관세/비관세 장벽에 대한 상시적 대응팀 구성·운용

⑥ 경영체 소득 안정화 : 소득 변동 완화와 재해 및 가격위험 축소

○ 소득안정을 위한 위험 완충 시스템 구축, 생산성 유지로 소비자 요구 충족

- 기상 조건에 따라 작황 변동이 크고, 단수 변이가 경영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미국의 재해 보험제도 수준을 목표로 작황위험 완충제도를 정비

- 과잉생산 유발 방지, 품목별 수요변화에 따른 생산 조정, 시장기능에 따른 수급 균형 추구
- 농가단위 소득 변동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정비, 가격 변동 완충 대책 추진 등 선진국 정책 수단을 참고하여 탄력적 추진

7] 공익직불제 확대·개편 : 원칙과 목적에 맞게 확대, 시장기능의 보완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증진, 국민이 공감하는 다양한 선택형 공익 프로그램 확충
 - 농촌 환경·생태 보전은 농업의 지속가능성도 제고하고 국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농촌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견인
 - 농가별·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선택형 공익직불 프로그램을 개발, 마을과 지자체 주도의 사업계획과 공동활동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검토
- 의무이행 조건 준수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 및 정책성과 관리시스템 구축
 -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관련 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기본 의무이행 조건 준수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체제를 구축
 - 공익직불제 정책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과 지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절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성과를 관리

8] 농어촌 삶의 질 향상 : 농촌 특성에 맞는 전문 서비스 강화, 다부처 연계 사업

- 농어촌 자원에 기반하는 다양한 경제활동 기회와 일자리 창출 및 확대
 - 다양한 지역 특산물과 농촌 유·무형 자원이 융복합되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는 농촌 융복합 산업단지 조성
 - 민간 자본 투자 촉진을 위한 농촌 창업 지원 금융 조성, 농촌 스마트워크 사업 추진, 농촌형 복합 레지던스 창업 단지 확충을 통한 청년 창업 기반 조성

- 디지털 농촌뉴딜로 365생활권 고도화, 농촌형 서비스 전달체계, 고품질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디지털 농촌뉴딜로 스마트한 365생활권을 보다 고도화하고, 농촌형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농촌 특성을 반영한 제도 도입과 고품질의 전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추진
 - 최신 스마트기술을 활용하는 농어촌특성에 적합한 거점시설과 체감형 통신기반 구축을 지원
-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의 위상 강화, 삶의 질 정책의 실효성 증진 및 역할 확대
 -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삶의 질 정책의 실효성과 정책조정 능력을 갖추도록 역할과 기능을 강화
 -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와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기능 통합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영향평가제도의 강화를 통하여 정책환류 강화, 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사무국 중심의 모니터링체계 구축

I 연구배경 및 조사방법

1. 연구배경

- (대내외 환경변화) 4차 산업 혁명, 기후변화 위기, 글로벌 인플레이션, 라우전쟁 등
 - 미·중 양자 패권 갈등과 진영간 블록화 양상, 지정학적 공급망 (geopolitical supply chain)에 따른 식량수급 불안 고조
 -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이슈속에서 환경친화적 농어업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가,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농어업분야도 디지털 전환 가속화
- (중장기 비전·전략) 농정비전과 중장기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및 농정의 성공적·효율적 수행 도모
 - 정책환경의 복잡성과 이해관계의 충돌로 정부주도 정책 한계, 이해관계자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성공적 정책 추진의 열쇠
 - 국민과 농어업인이 기대와 문제의식 직접 조사·분석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의 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 정립에 방향타 역할 필요

2. 연구목적

- 윤석열정부의 농어업·농어촌 분야 중장기 비전과 정책 방향 정립 및 농어업위의 효과적인 정책자문 역할 수행을 위한 주요 근거 확보
 -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문제의식,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기대와 요구, 향후 바람직한 정책 방향
- 윤석열정부의 주요 농정 추진방향인 농어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농어업의 디지털화, 민간의 참여와 투자·금융 활성화, 농식품 수출 산업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
 - 시장지향적 수급관리, 기업의 농어업진출, 국산 농산물 지불의향 등

3. 조사대상 및 방법

- (조사대상) 농림어업 종사자 1,000명, 일반국민 1,000명, 농어업계 전문가 90명 대상 조사 (총 2,090명)

구분	농림어업 종사자		일반 국민	전문가
	농업인	임·어업인		
조사 대상	현재 농업을 주 소득원으로 하는 국민	현재 임·어업을 주 소득원으로 하는 국민	만 19세 이상 성인 남·여	농·어업 관련 전문가
표본 수	850명	150명	1,000명	9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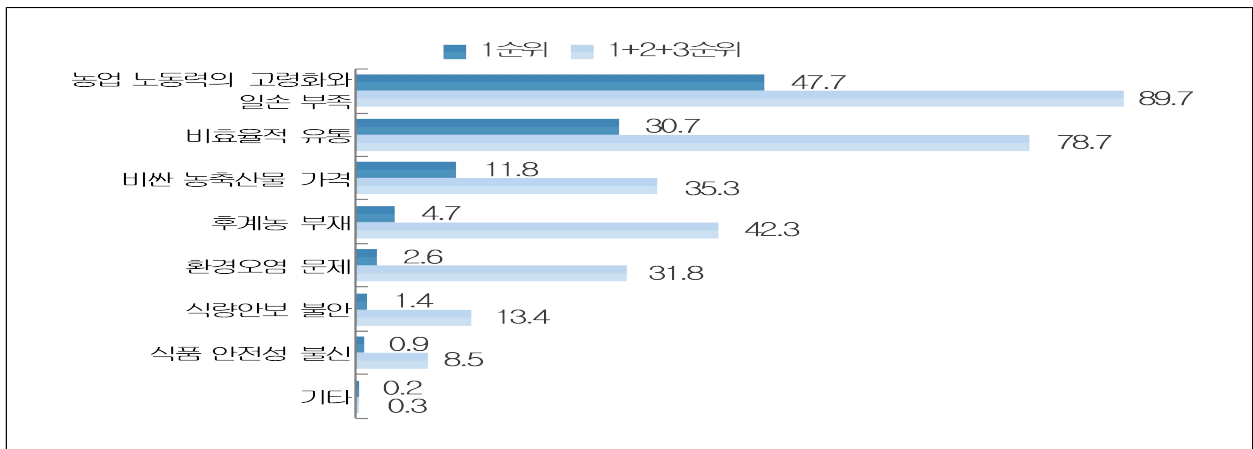
- (조사방법) 농림어업 종사자 1,000명, 일반국민 1,000명, 전문가 90명
- 농업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국 패널단 850명 활용 조사
 - 임업인 : 산림청 패널단 50명 대상 온라인 조사
 - 어업인 : 조사업체(현대리서치) 조사 요원 100명 현장 방문 조사
 - 일반국민 : 농림어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조사
 - 전문가 : 학계, 농어민단체, 전문지 기자 등 90명 이메일 조사

II | 주요 조사 결과

1. 일반국민 (도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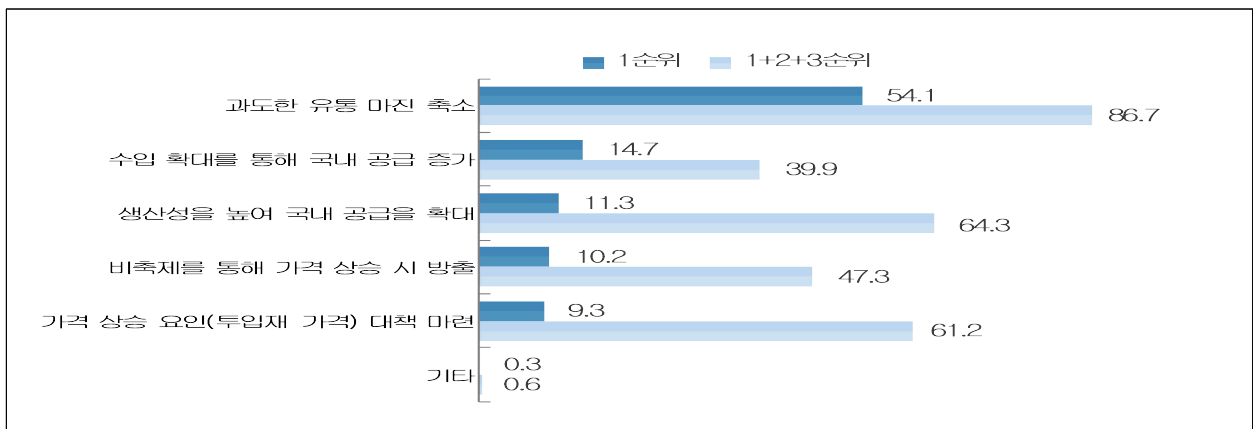
- (농업의 문제) 농업노동력의 고령화(47.7%)와 농축산물 가격과 유통문제(42.5%)를 우리 농업의 가장 큰 문제로 인식.
-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후계농 육성 및 지원(43.7%), 귀농·귀촌의 장려(25.9%), 첨단 디지털화를 통한 일손 부족 대체(19.8%) 등을 꼽음.
 - 농축산물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과도한 유통 마진의 축소(54.1%)를 가장 많이 요구

그림1-1 우리 농업의 가장 큰 문제



(Base=전체(n=1,000),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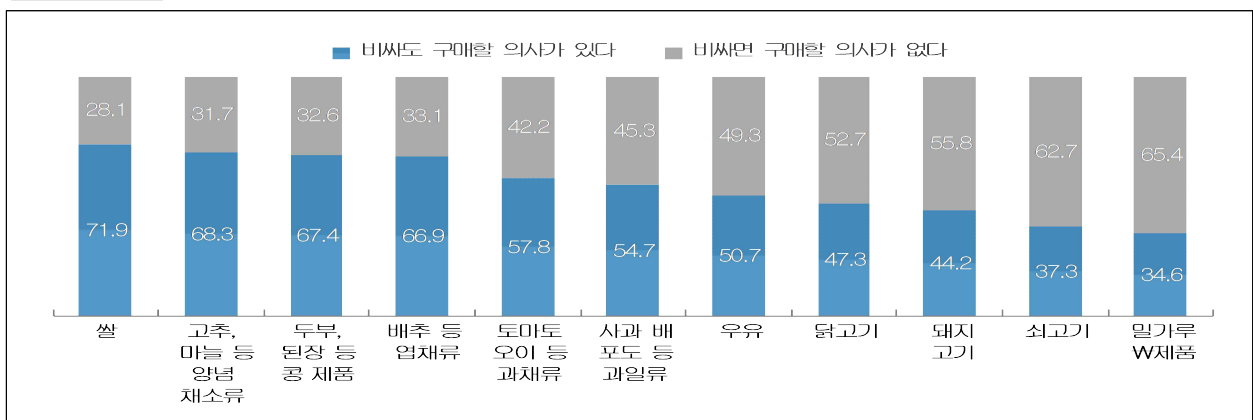
그림1-2 비싼 농축산물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중점을 둘 방향



(Base='농축산물 가격이 비싸다' 응답자(n=353), 단위 : %)

□ (지불의향) 안전성과 신선도, 품질 등의 이유로 국산 농산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선호(높은 지불의사)가 분명히 존재(품목별 평균 54.6%)하나, 일부 품목군(쇠고기, 밀가루 제품 등)은 지불의사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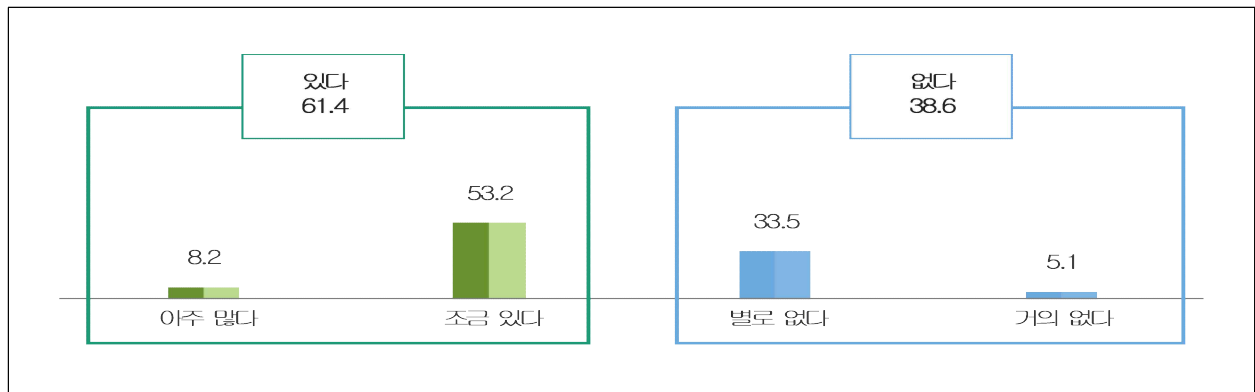
그림1-3 수입산보다 비싸도 구입할 의사 유무



(Base=전체(n=1,000), 단위 : %)

- (식량안보) 평소의 식생활에 대해 불안함을 느낀 국민(61.4%)이 많으며, 불안의 원인은 평소 자주 접하고 일정 선호가 있는 농산물의 공급(특히 국내 생산)이 불안정하여 그 결과 해당 농산물의 가격이 오를 것(82.9%)에 대한 우려가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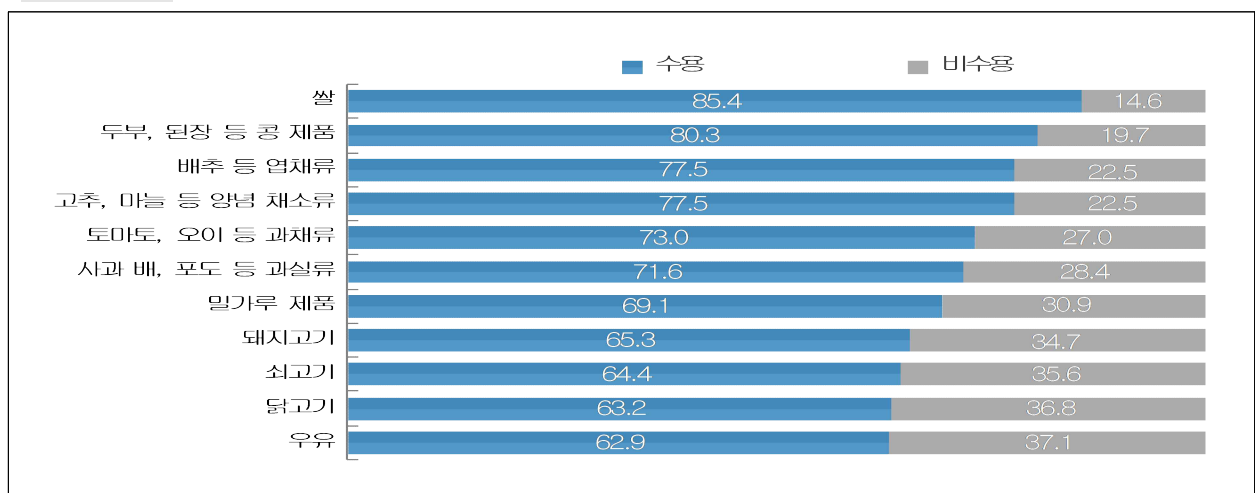
그림1-4 현재와 같은 식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까 불안하게 느낀 적이 있는가?



(Base=전체(n=1,000), 단위 : %)

- (환경농업) 환경 보호를 위해 국산 농산물의 가격 인상을 어느 정도 수용(품목별 평균 71.8%) 할 수 있으나, 이미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는 품목(예: 쇠고기 등)에 대해서는 수용 의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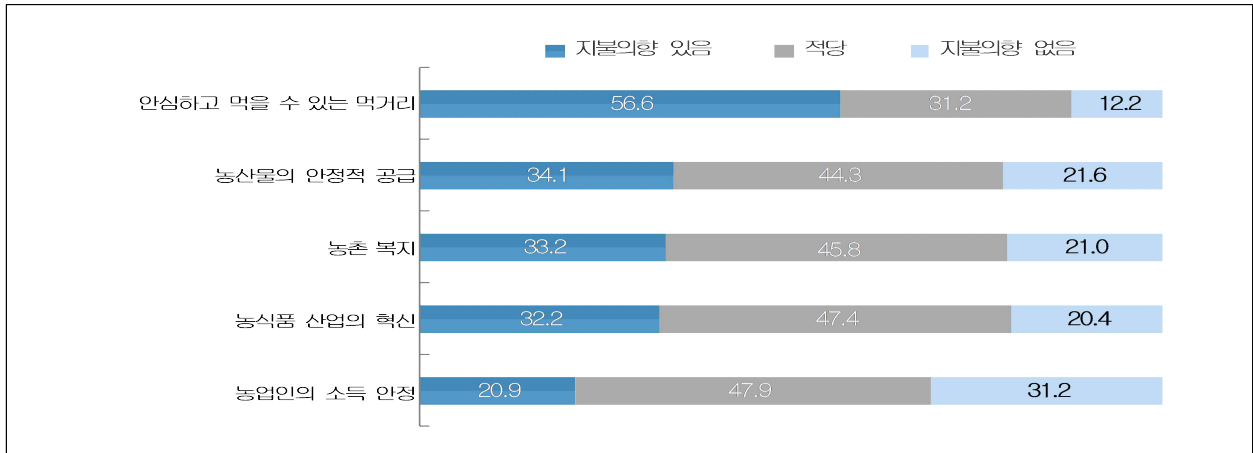
그림1-5 농어촌지역 생태환경보전을 위한 국산 농산물의 가격 상승 수용 여부



(Base=전체(n=1,000), 단위 : %)

- (세금부담) 농업 부문 세금 사용에 대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확보(56.6%)를 위해서 추가 지불의사가 있으나 그 외는 지금 수준이 적당하다는 반응

그림1-6 농업·농촌을 위한 세금 추가 지불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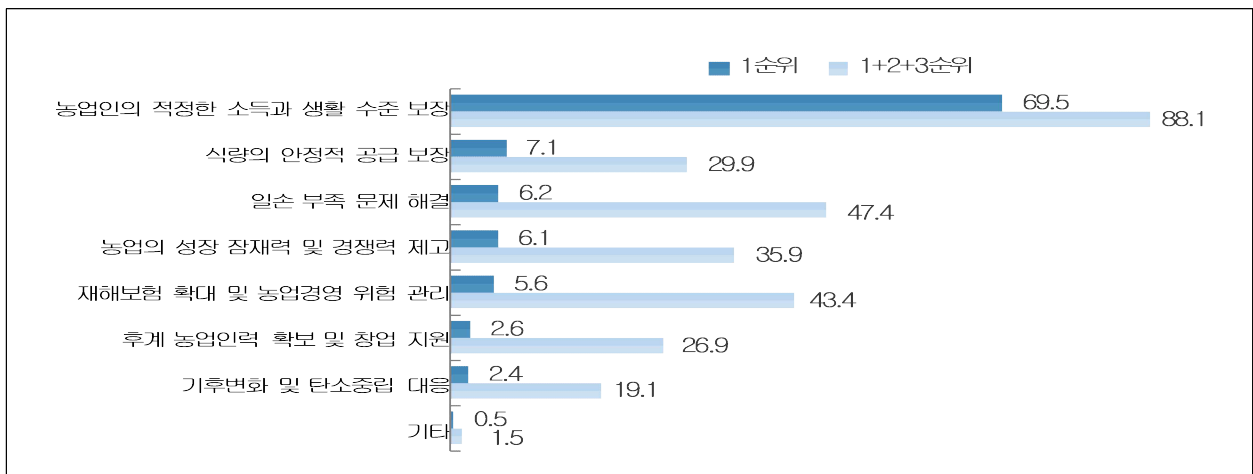


(Base=전체(n=1,000), 단위 : %)

2. 농업인

- (농업정책) 농업인들은 농업 정책 중 농업인의 적절한 소득 및 생활 수준 보장(69.5%)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 그 외 일손 부족 문제와 농업 경영의 위험 완화(재해보험 확대와 가격 불안정 해소 등)를 중요한 정책으로 생각

그림2-1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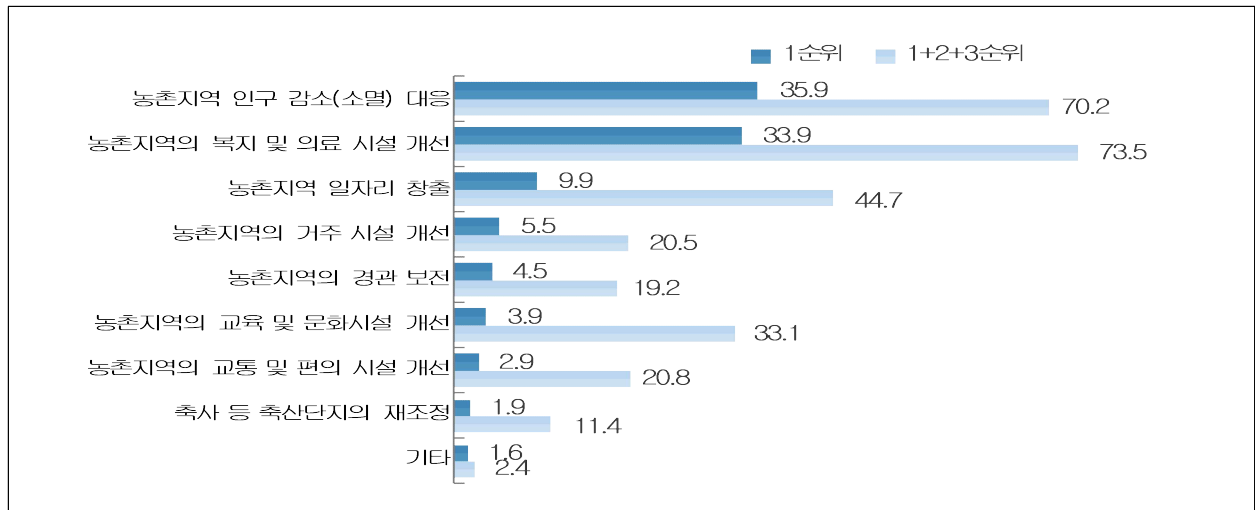


(Base=전체(n=850), 단위 : %)

- 농업 정책 중 일손 부족 대처에 가장 큰 불만(67.4%)을 표시. 반면 후계 농업 인력의 확보 및 창업지원,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대응은 만족도가 높았음.

- (농촌정책) 농촌 정책 중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대응(35.9%)과 농촌지역의 복지 및 의료 시설 확충(33.9%)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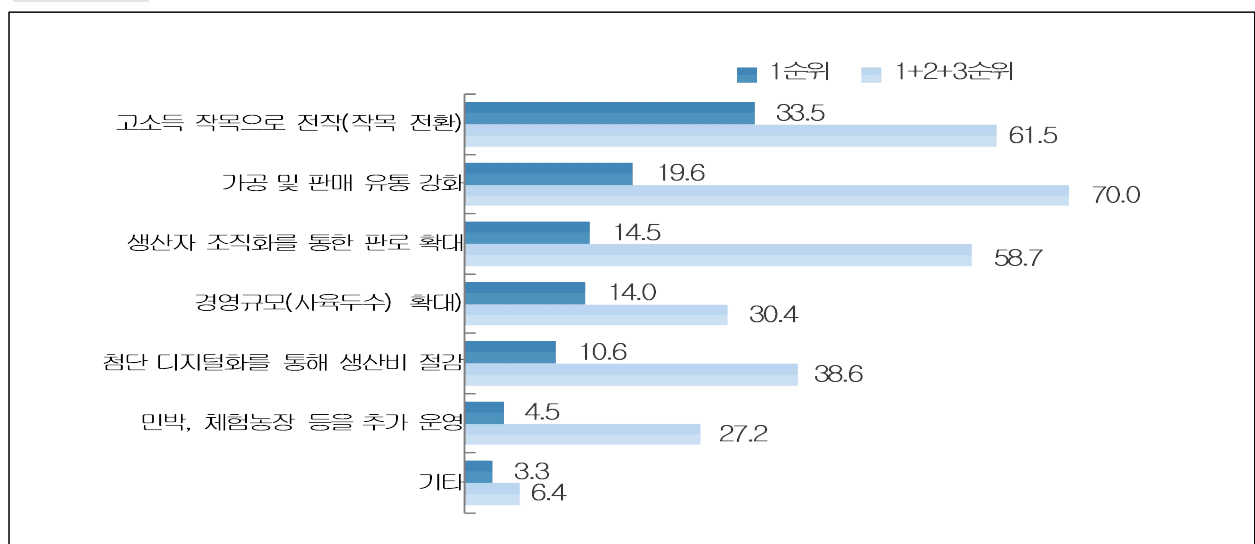
그림2-2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농촌 정책



(Base=전체(n=850),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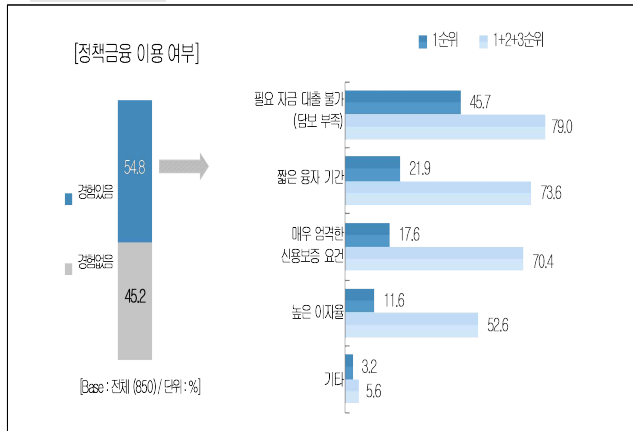
- (소득증진)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인들은 고소득 작목으로의 전환(33.5%)과 가공 및 판매유통 강화(19.6%)를 우선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농업금융과 관련하여 담보 부족 등으로 충분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호소

그림2-3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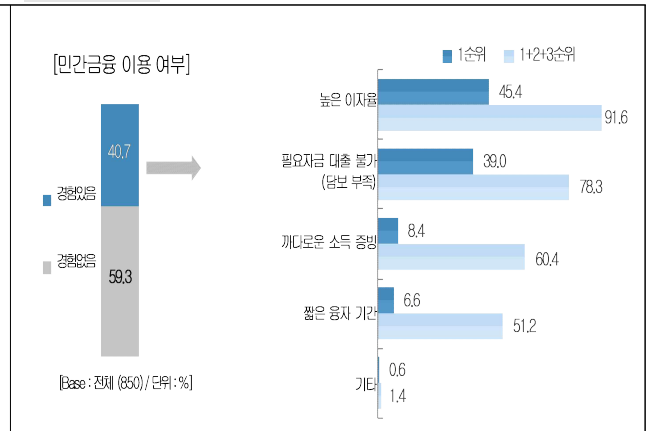
(Base=전체(n=850), 단위 : %)

그림2-4 정책금융 이용 경험과 이용 시 어려움



(Base=정책금융을 이용 경험자(=466),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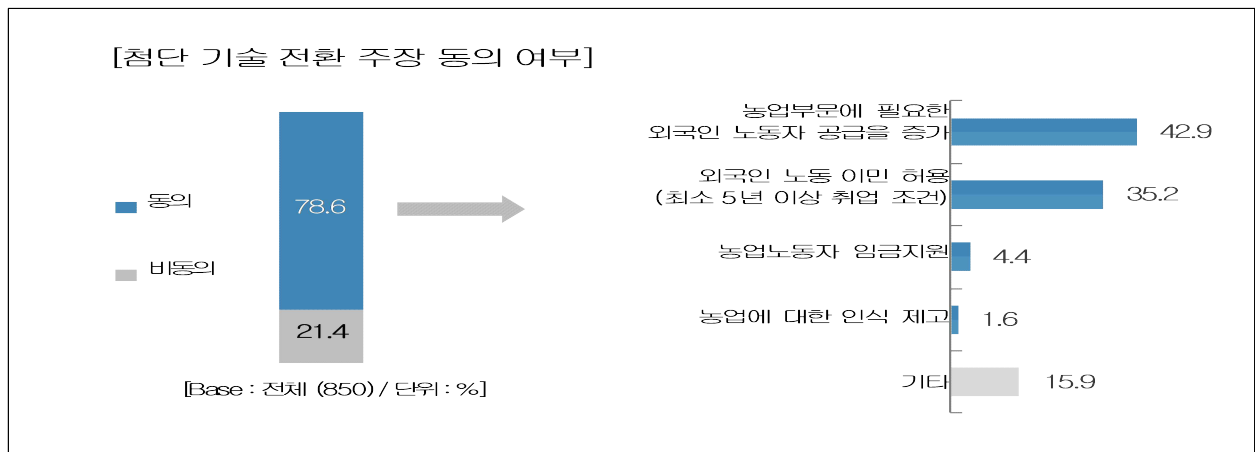
그림2-5 민간금융 이용 경험과 이용 시 어려움



(Base=민간금융 이용 경험자(n=346), 단위 : %)

- (디지털농업) 농정 개혁과 관련하여 일손 부족과 생태 환경 보호 및 탄소중립 이행 등을 위하여 첨단 디지털 기술에 근거한 스마트 정밀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부분 동의(78.6%)

그림2-6 디지털 영농으로 전환과 일손부족에 대한 해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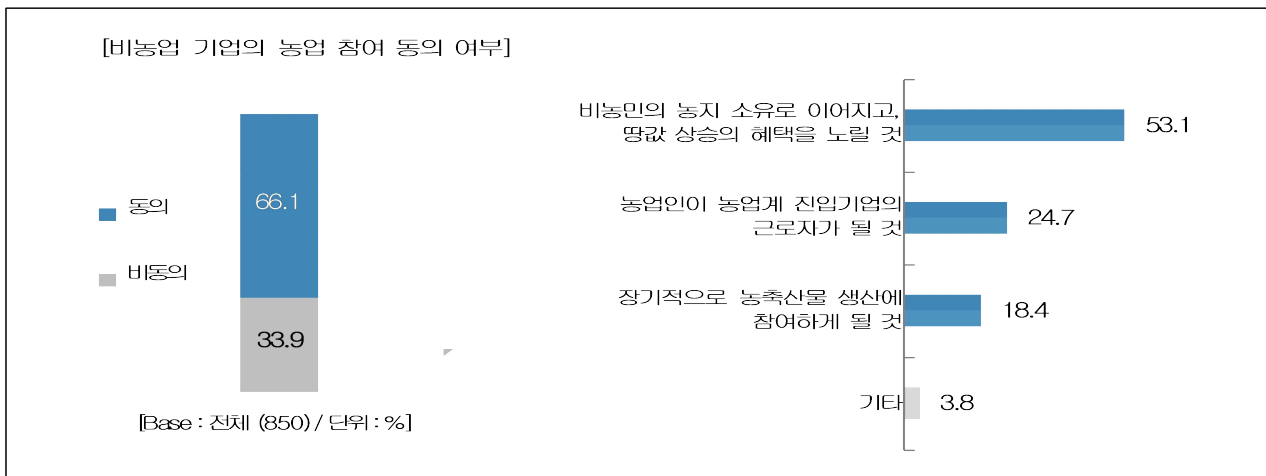


(Base=첨단 기술 전환 주장 비동의자(n=182), 단위: %)

- (기업·시장) 비농업 기업의 농업계 진입에 대해서도 생산에 참여하지 않고 기술과 자금, 노하우(know-how), 투입재 지원 등의 방식으로 진입에는 대체로 동의(66.1%)
 - 쌀문제 관련 시장 원리를 상당 부분 정확히 인지*하면서 타작물 전환 (20.8%)과 가공식품 활성화(19.4%)를 주요 이슈로 인식하여 최근 정부 쌀수급 대책에 긍정적 * 쌀가격 하락이유: 소비감소(53.1%), 쌀 수입 지속(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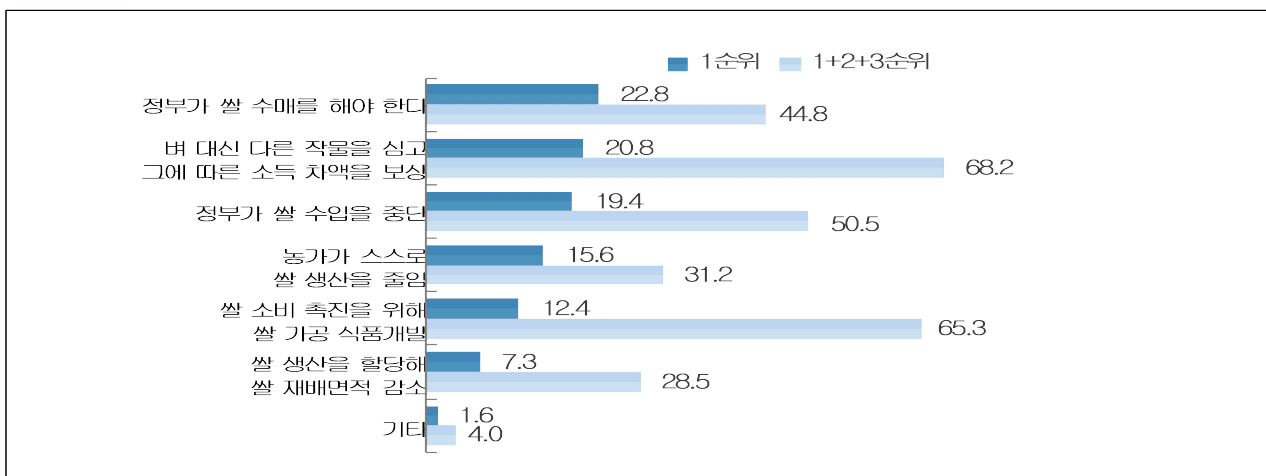
그림2-7 비농업

기업의 농업 참여에 대한 동의 여부



(Base=비농업 기업의 농업 참여 비동의자(n=288), 단위: %)

그림2-8 쌀가격 유지방안



(Base=전체(n=85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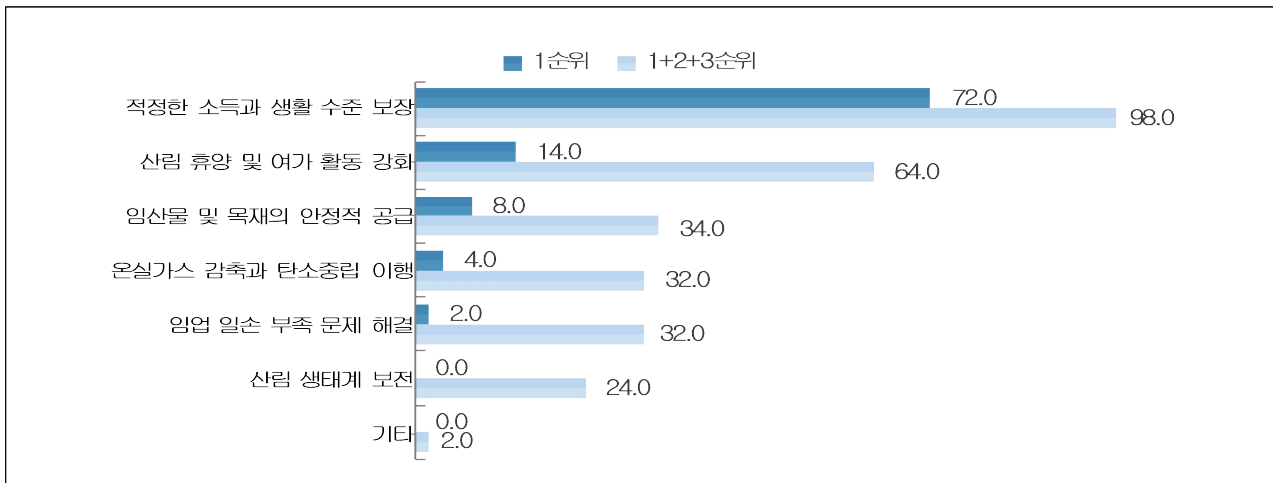
- (예산배정) 예산의 우선 배정 필요 분야로, 농업정책에서는 일손 부족(70.5%)과 농업경영위험의 완화(70.1%)를, 농촌정책에서는 친환경 축산을 위한 환경생태 보전, 쓰레기·폐기물 처리 등 환경미화, 의료비 지원 및 의료 시설의 확충 (각 69.9, 69.1, 69.1%) 등을 선택
- 농업인의 입장에서 소득 및 생활 수준 보장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
 - 농촌 정책의 방향은 농촌지역 인구감소 문제 해결이라는 큰 틀에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되, 동시에 환경생태 보전, 환경미화, 의료비 지원 및 의료 시설 확충을 병행

3. 임업인, 어업인

□ (임업인) 임업인도 적절한 소득 및 생활 수준 보장(72.0%)을 가장 중요한 정부 과제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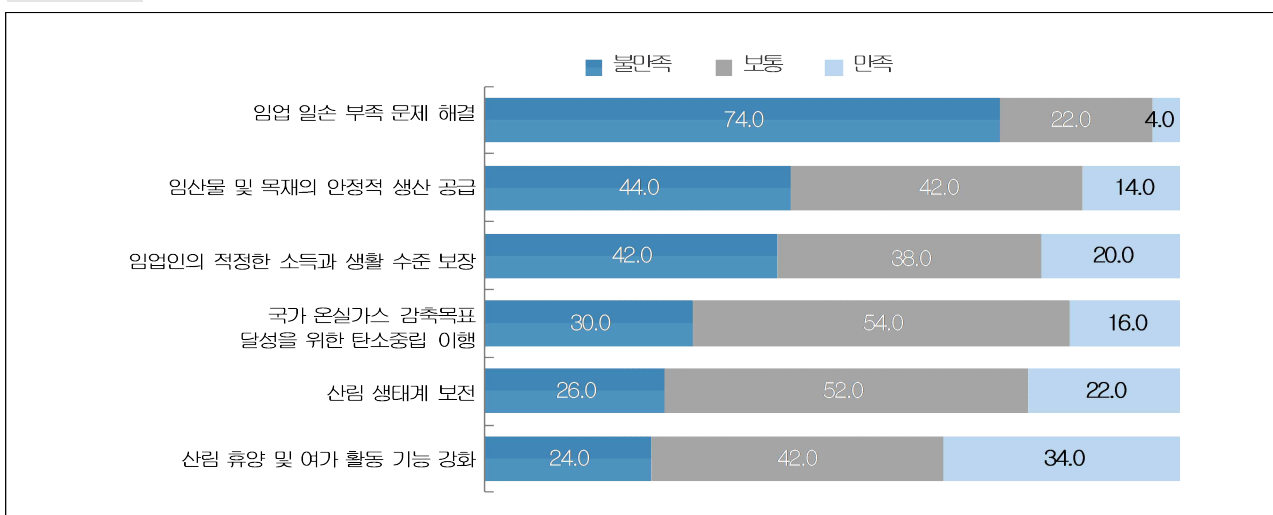
- 현재 추진 중인 산림 정책에 대해서는 농업인들과 유사하게 **일손 부족 문제 해결(74.0%)**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에 대해서도 가장 큰 불만을 표명
- 그 외, **산림 휴양 및 여가 활동 강화를 중요 정책으로 생각**, 반면 **산림 생태 보전에 대해서는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서 인식하지 않음**

그림 3-1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산림 정책



(Base=전체(n=50), 단위: %)

그림 3-2 산림 정책에 대한 평가(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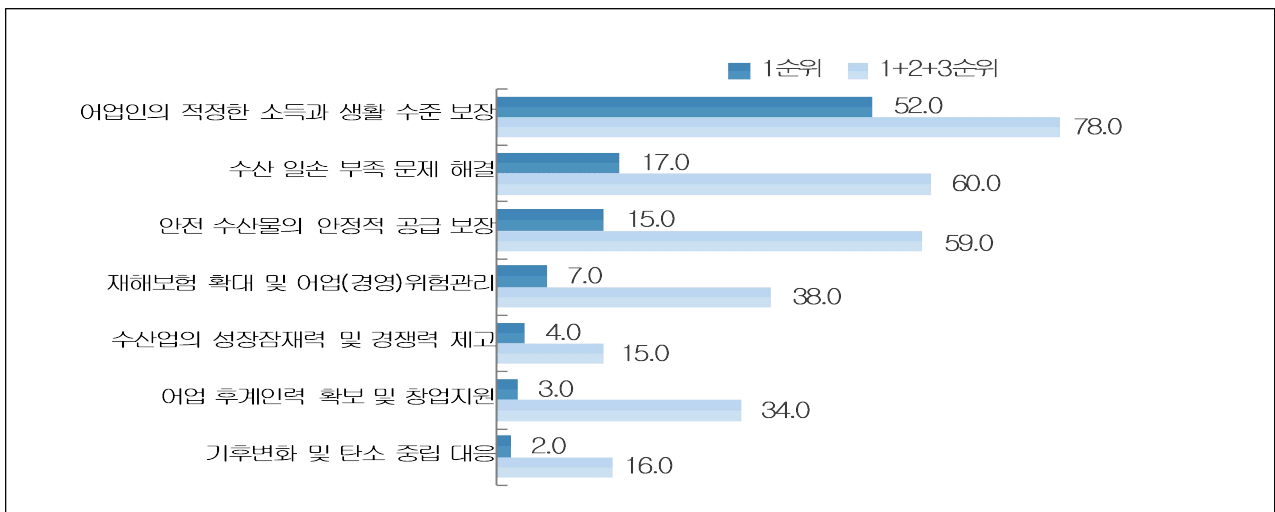


(Base=전체(n=50), 단위: %)

□ (어업인) 농업인 및 임업인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어업인의 적절한 소득 및 생활 수준 보장(52.0%)을 가장 중요한 정부 과제로 생각

- 또한 농업인 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일손 부족 문제(17.0%)를 제시
- 반면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대응이나 후계인력 확보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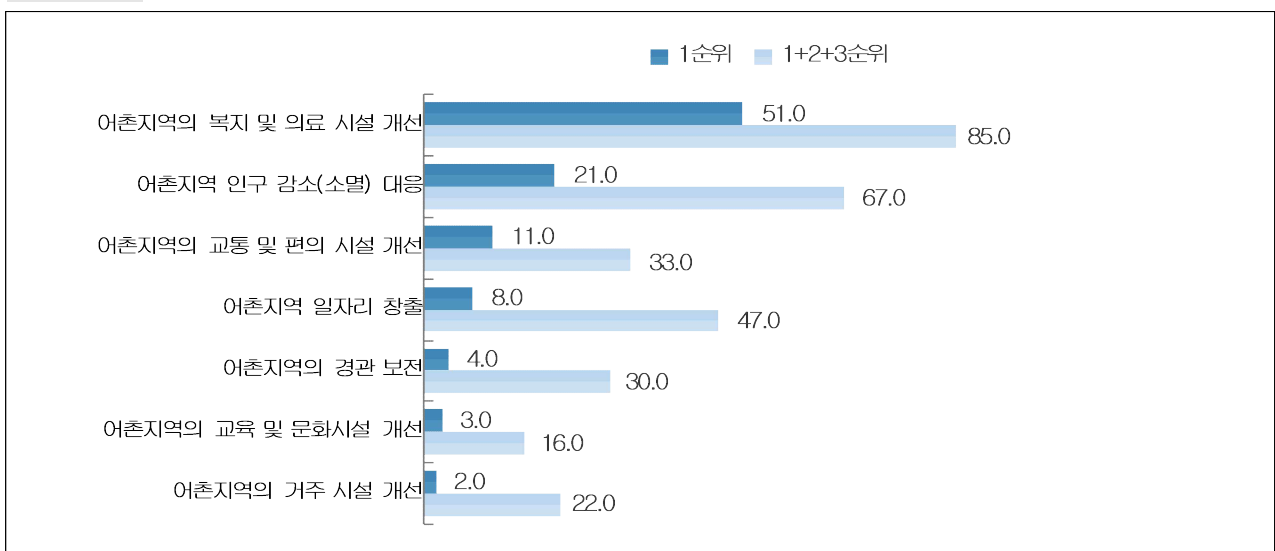
그림 3-3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수산 정책



(Base=전체(n=100), 단위: %)

- 어촌정책과 관련하여 정부가 중점 추진할 정책으로는 복지 및 의료 시설의 개선(51.0%)을 우선 선택

그림 3-47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어촌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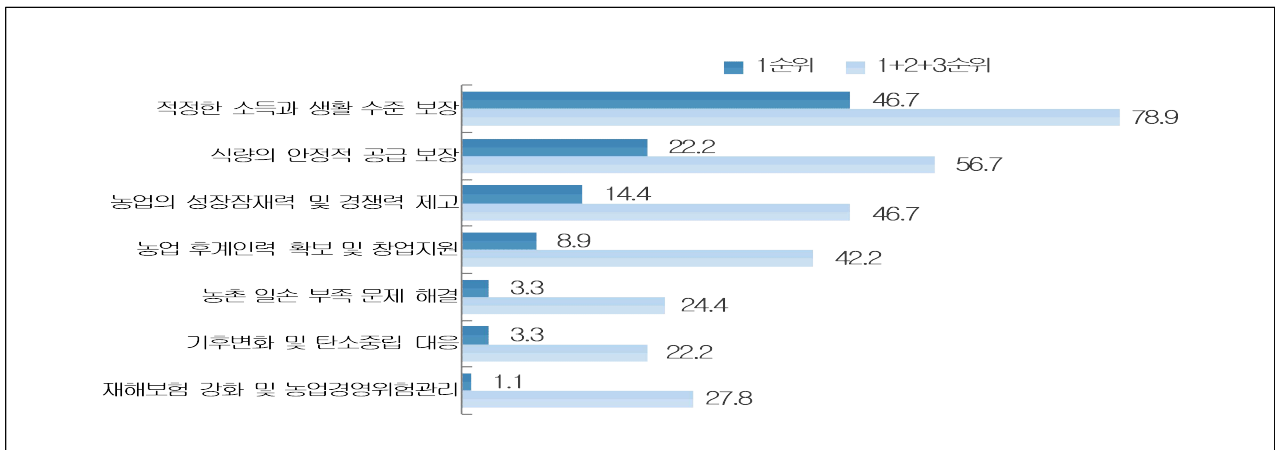


(Base=전체(n=100), 단위: %)

4. 전문가 (학계, 단체, 언론인 등)

- (농어업정책)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적절한 소득과 생활 수준 보장(46.75)이라고 응답(농림어업인 설문 결과와 동일)
- 2순위로는 농어업인 조사 결과와 달리 전문가들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 (22.2%)과 농업의 성장 잠재력 확충(14.4%)을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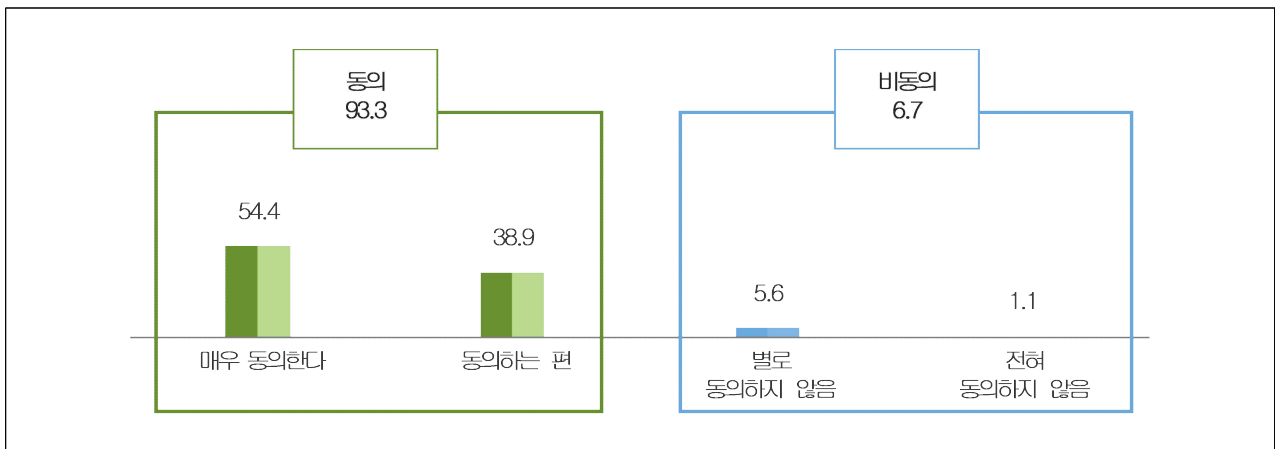
그림 4-1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할 농어업 정책(전문가)



(Base=전체(n=90), 단위: %)

- (농어업혁신) 한국 농어업의 성장을 위하여 이를 주도할 농어업 내부의 혁신 주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하여 전문가 대부분은 동의(93.3%)하고 있으며, 혁신의 주체로서 청년농(31.0%) 그리고 혁신 의지가 있는 누구나(33.3%)를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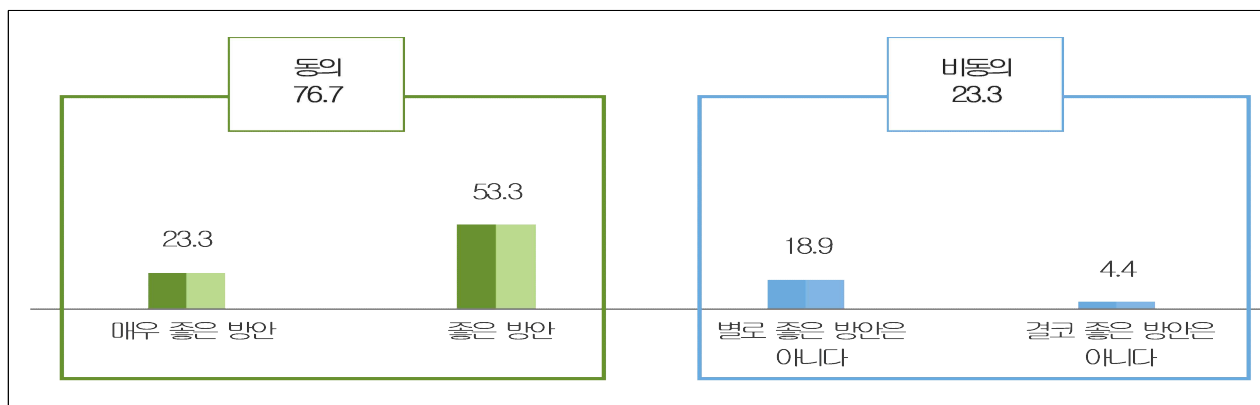
그림 4-2 농어업의 성장을 위해 내부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전문가)



(Base=전체(n=90), 단위: %)

- 또한, 스마트 정밀농업으로 생산방식을 전환해야 된다는 것과, 비농업 기업의 농업계 진출(76.7%, 농업인 66.6%)에 대해서도 농어업 종사자들 보다 높은 동의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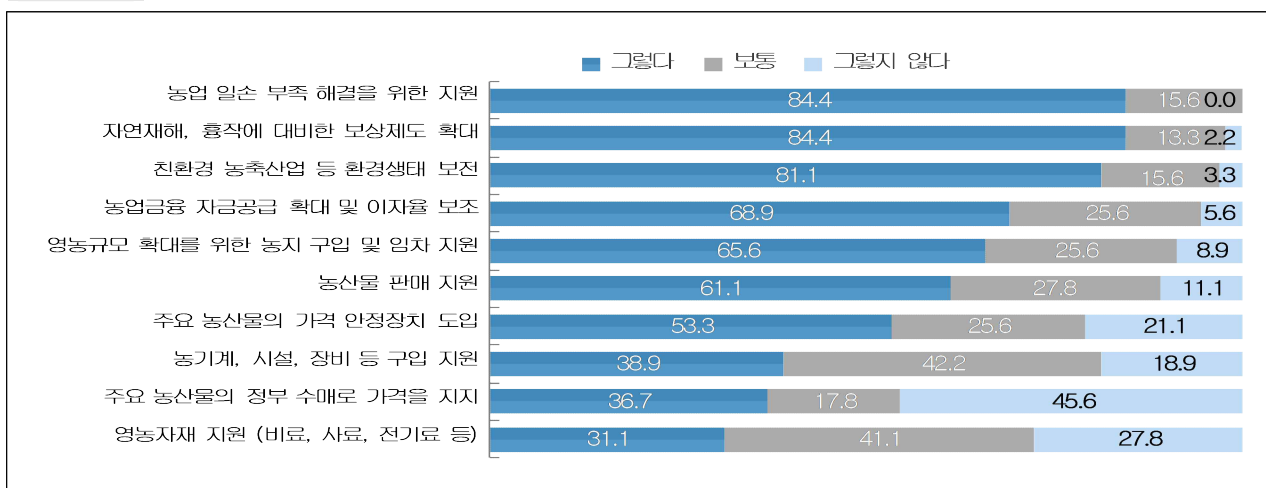
그림 4-3 비농업 기업의 농업계 진입(생산 참여는 하지 않음) (전문가)



(Base= 전체 (n=90), 단위: %)

- (예산배정) 농어업 정책에서 예산의 우선 배정이 필요한 분야로 농어업 일손 부족 지원(84.4%)과 재해 및 흉작 등에 대비한 보험제도 확대(84.4%), 친환경 농축산업 등 생태 환경 보전(81.1%) 등에 우선 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

그림 4-4 예산의 우선 배정이 필요한 농어업 정책(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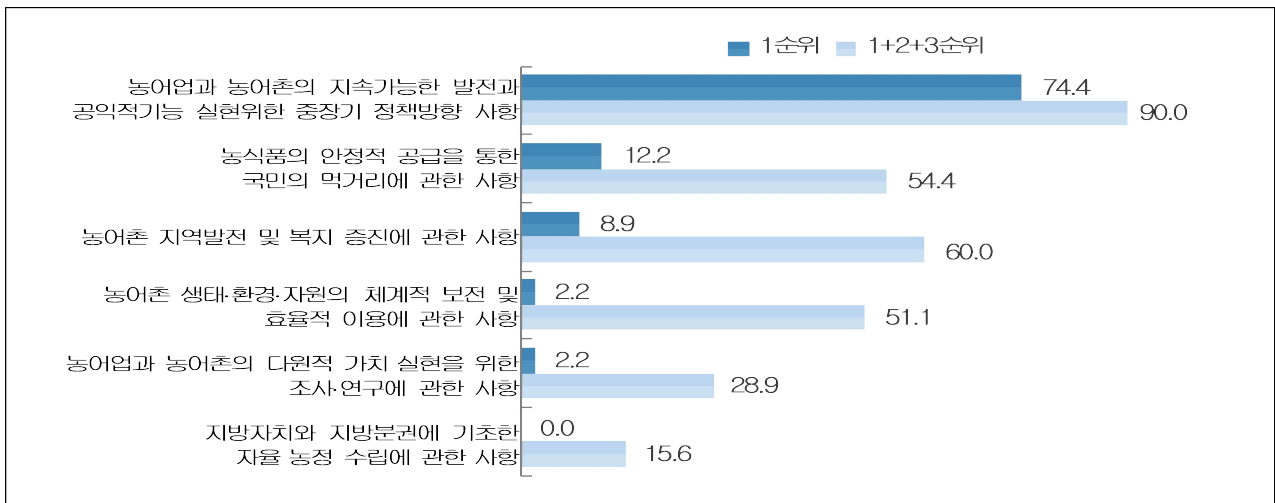
(Base= 전체 (n=90), 단위: %)

- 농어촌 분야는 의료지원 및 병·의원 시설의 확충(83.3%), 농촌 경관 보전과 개선(75.6%), 쓰레기 폐기물 처리 등 환경미화 사업(73.3%), 교통 접근성 개선(70.0%) 등을 선택

□ (농어업위과제) 농어업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으로 범부처적 농어업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 아젠더 도출(43.3%), 외 농어업 분야 투자확충을 위한 논리 개발(20.0%)을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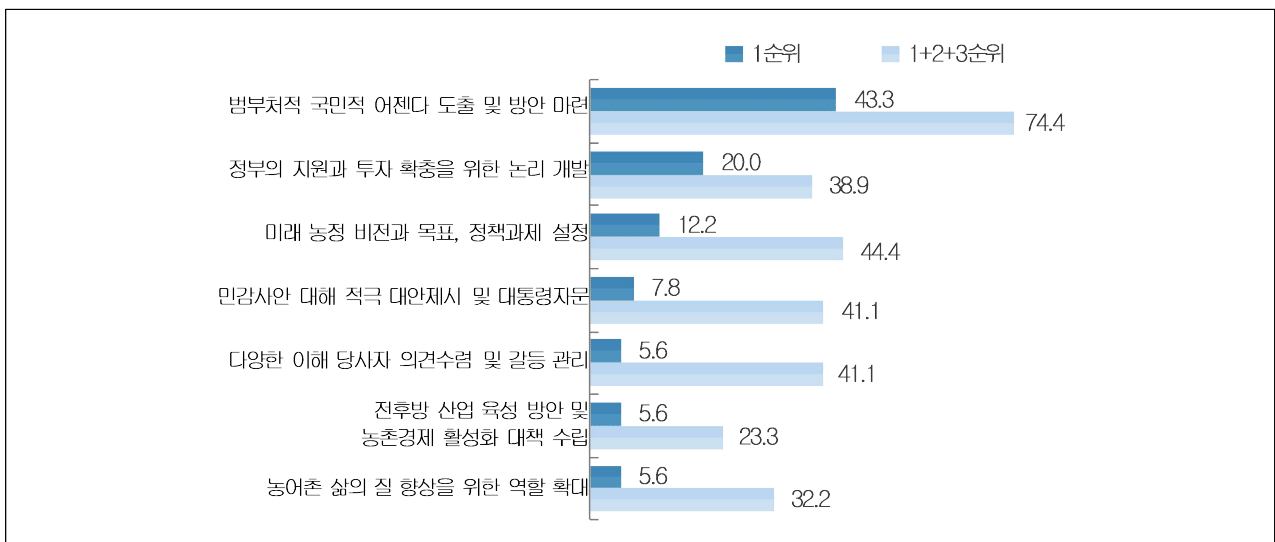
- 반면, 농정 추진 이해 당사자 의견수렴과 갈등 관리,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할 확대에는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낮았음.

그림 4-5 농어업위의 주요 기능(전문가)



(Base=전체(n=90), 단위: %)

그림 4-6 농어업위가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전문가)



(Base=전체(n=90), 단위: %)

Ⅲ | 결론 및 시사점

1. 비전과 정책 목표

-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충분한) 공급이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될 필요
 - 일반 국민이 원하는 안전 농식품의 신선도와 품질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식량안보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비싼 농축산물 공급이 아니라 저렴한 농축산물 공급으로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access)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내 생산 기반의 정비와 확충(이를 통한 생산성 제고)과 함께 유통의 비효율성 제거 등의 정책이 필요
- 동시에 모든 국민의 삶의 공간으로서 농어촌지역이 여가와 휴양의 쾌적한 터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될 필요
 - 농어촌지역의 생태 환경 보전을 위해 국산 농축산물 가격의 인상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상황
 - 농어업이 환경생태 보전과 조화를 이루면서 농어촌이 쾌적한 여가와 휴양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농어가 소득의 안정화가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될 필요
 -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은 해당 농어업인의 존재 없이는 불가능, 해당 농어업인의 존재는 안정적 소득이 뒷받침되어야 함.
 - 쾌적한 여가와 휴양 공간의 제공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활동 없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음.
 - 적절한 수준의 농가 소득 및 생활 수준 보장은 해당 농어업인은 물론, 전문가 그룹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최우선 정책으로 제시

- 위에서 언급한 i) 안전한 농식품의 한정적 공급, ii) 쾌적한 여가와 휴양 공간의 제공, iii) 농어가 소득의 안정화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연결될 필요
- 일반 국민이 농어업과 농어촌에 거는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농어업과 농어촌이 되어야 국민경제 속에서 농어업의 입지 설정이 가능
- 방대한 정부 예산과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농어업·농어촌의 존재 이유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것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와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2. 중장기 정책 방향

□ 농업 생산 기반 및 금융 여건의 정비

-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농업인은 고소득 타 작물 전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이를 위해 고소득 타 작목으로의 전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생산(기반) 및 금융 여건의 정비가 필요
- 다만, 타 작목으로 전환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하므로 모든 중장기 정책은 시장기능과 모순되지 않아야 함.

□ 농업계의 진입과 퇴출의 원활화(장벽 제거 등)

- 의욕이 있는 누구라도 농업에 진입해 제약없이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각종의 제약과 장벽을 제거(농지 유통화 촉진 및 농업금융의 접근성 확보)

□ 기술 농업으로 전환(첨단 기술의 내재화)

- 현안인 일손 부족과 고령화 문제 해결,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첨단 과학기술에 근거한 디지털 정밀농업으로 전환이 불가피 (이를 추진할 내부 혁신 주체 양성)

- 첨단 기술의 연구개발도 현장에서 요구하는 문제 해결 중심으로 전환

□ 농어가의 경영 위험을 완화

- 농업경영에 따른 위험(재해 및 이상 기후로 인한 단수 및 가격 급등락 등의 위험)을 완충해 주는 제도적 장치 필요
- 작황과 가격의 급등락으로부터 오는 리스크를 공유함으로써 축소

□ 농어업 유통구조의 혁신

- 국산 농산물의 안전성과 신선함을 확보할 수 있는 생산부터 최종 소비자까지의 체제 구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유통구조의 혁신을 추구
- 유통구조의 혁신은 비단 안전한, 신선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뿐만 아니라 국산 농식품의 가격 안정에도 도움

□ 농어촌 공간의 재구조화

- 쾌적한 농어촌 생태 환경에 대한 요구와 기대를 정책에 적절히 반영할 필요

□ 농어업 신성장 동력의 지속적 창출

- 다양한 부가가치의 창출(생산, 판매, 가공, 수출)을 통해 성장 확충하고, 이것이 농가 소득의 안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
- 푸드테크 등 식품산업의 성장을 통해 수출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농어가 소득의 안정화로 연결

참고 3

「농어업위 삶의질위 통합에 따른 추진체계 개편방안」 보고서요약

I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22.7.5)에 따라 총리 소속의 '농어업인 삶의질위원회'를 폐지하고 대통령소속 '농어업위'로 기능 이관 결정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법」 및 「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접수('22.9.30, 정부발의) 및 법안소위 계류 중('22.11.10)

- 농어업·농어촌 이슈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

- 농촌인력 부족 문제, 탄소 중립 농업 등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였지만, 부처 이행 과정에서 실제 적용 등 어려움 존재

* 농어업위 의결 6호('20.10, 제6차 본회의), 의결 23호('22.2, 제13차 본회의) 등

- 범정부 차원의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하고 4대 전략 178개 과제를 추진 중이나 도농 대비 삶의 질 격차* 여전

*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점수('22년 기준): 도시 6.4, 농어촌 5.3

- 농어업인 삶의질 대책과 농어업·농어촌 위기 대응 등 농정 주요 정책을 효과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농어업위 역할·기능에 대한 재정립 필요

- 농어업위는 다부처 연계 정책에 대한 협의기구 역할은 수행했지만, 대통령 정책자문이나 정책 조정기구로서 미비

- 삶의질위는 형식적 심의로 정책 총괄·조정기능이 미흡, 기본계획 수립 시 부처별 정책 단순 취합 및 사무국 부재로 활동 저조

⇒ 양 위원회의 미흡한 기능을 보완하고, 법 개정안 통과 후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안착** 될 수 있도록 **기능 및 운영체계 개편*** 필요

* 정책연구용역 「농어업위-삶의질위 통합에 따른 추진체계 개편방안」 추진 ('22.12.28~'23.5.31, 한국행정학회)

Ⅱ 추진방안

□ 기본 방향

- ① 효과적 정책 추진을 위한 위원회 기능 강화
- ② 전문성 제고를 위한 분과위·사무국 조직 개편
- ③ 객관적 평가·환류 시스템 구축

□ 세부 추진방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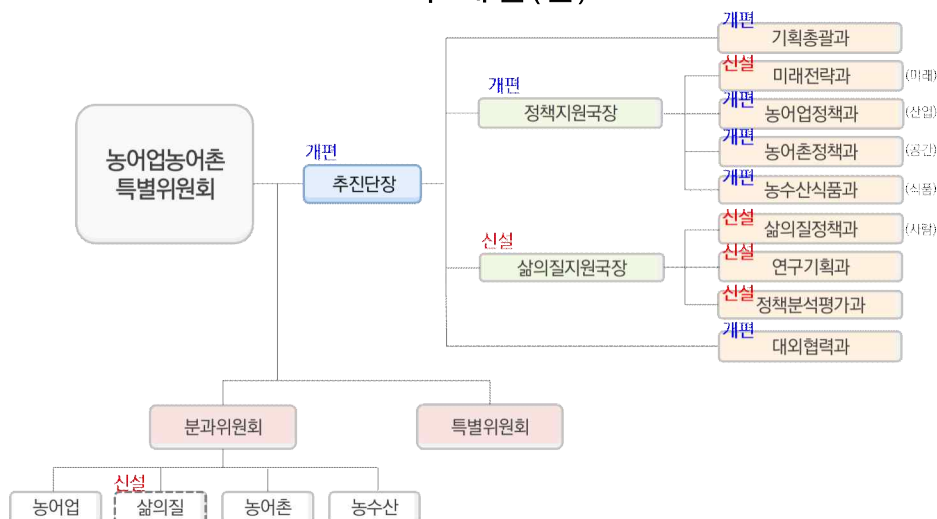
① 기능 강화

- (미래 의제 주도) 농어업·농어촌 위기 대응, 삶의 질 향상 등 다부처 협업, 중장기 정책방향, 사회적 합의 필요 과제를 논의 강화
 - 부처 제출 자료를 단순 취합·평가하는 한계에서 벗어나 현장 목소리 중심의 의제를 발굴하고, 관계기관 협의·조정이 필요한 의제 선정
 - 미래 농어업·농어촌 정책 의제를 주도하면서 원활한 농어업·농어촌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중장기 발전계획*을 담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농어업인 삶의질 기본계획 등
- (이행력 제고) 삶의 질 업무 전 과정에 관계부처 참여를 확대하고, 대통령 주재 회의(보고) 정례화 등 안건의 이행력 확보
 - 농어업위 중심 협의체 구성으로 삶의 질 정책입안·평가 및 환류 전 과정에서 관계부처 참여를 확대하여 실질적 논의 추진
 - 삶의 질 기본계획, 추진실적이 저조한 과제에 대한 개선조치 등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 주재 회의 정례화
- (협업 강화) 관계부처 및 타 위원회와의 협업으로 공감대 제고
 - 관계 부처(국장급)와 정기(반기 1회) 간담회 추진 등으로 농어업위 안건 발굴·진행 상황 공유 및 의견 수렴
- * 농어촌정책 관련 부처(농식품부, 해수부, 기재부, 국조실, 식약처 등)
- 국회, 타 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등)와의 협업으로 농어업·농어촌분야 과제의 국민적 관심도 제고

② 조직 개편

- (구성방향) 통합 위원회는 '미래, '산업, '공간, '식품, '사람' 5개 핵심영역으로 조직하고, 미래 정책과 현안 이슈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체계 구성
- (분과위) 삶의 질 업무 수행을 위해 **삶의질분과위***를 설치하고,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국장****을 당연직 분과위원으로 위촉
 - * (현행) 농어업분과위, 농어촌분과위, 농수산식품분과위 → (개편) 농어업분과위, **삶의질분과위**, 농어촌분과위, 농수산식품분과위
 - ** 분과위 관계부처 국장급(삶의질분과위: 복지부, 국토부, 교육부, 행안부 등)
- (사무국) 단-국-과* 3단계 형태로 개편(안) 검토
 - * 국(2급)→ 단(1급), 팀(4급)→ 과(3·4급), 개인사무 분화 및 팀 개편
- 정책기획·조정, 삶의질 기본계획 수립** 및 조사·분석 기능 수행을 위해 별도의 **국(삶의질지원국), 과 신설** * (현행) 1국-5팀 → (개편) 1단-2국-9과
 - ** 법정계획인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25~'29)」은 '23년 하반기부터 실무준비가 요구됨. 단, 위원회 개정법안 통과·시행이 지연될 때 농식품부 주관으로 운영 필요하며, 업무의 원활성을 위해 농어업위 별도 협력이 요구됨.
- 삶의질 업무의 조정기능 강화, 효과적 심의를 위해 **관련분야**(보건복지, 문화, 지역개발, 환경, 교육 등) 소속 공무원 **파견 및 전문인력 확보**
 - * 현재 농어업위 인력은 농식품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광역지자체 소속 공무원 및 관계기관(농협, 수협, 농어촌공사, AT, 마사회, 복지진흥원 등) 파견으로 구성

<조직 개편(안)>



③ 예산 확대

○ 통합 위원회 예산은 사무국 업무 수행과 삶의질위 조사 및 평가 분석 기능 확장에 따라 92.8억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

- 농특위 사무국 36.5억원, 삶의질위* 업무 20.0억원, 조직개편에 따른 추가 인건비 및 운영비 등 36.3억원

* 민간위탁사업비: 전문지원기관 조사 및 평가분석 업무

<농어업위 사무국 운영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분	'23년 예산	조직개편예산(안)	비고
합계	3,658	9,280	
인건비	591	997	
운영비	1,897	3,186	
여비	118	191	
업무추진비	102	174	
직무수행경비	93	111	
연구용역비	800	2,000	
민간이전	39	2,065	전문지원기관 예산
건설비	-	150	
유형자산	20	170	
무형자산	-	235	

④ 평가·환류 시스템

○ (점검·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내 삶의 질 지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각 부처 사업 이행점검·평가 실시

- 이행점검·평가는 상·하반기에 실시하는 단순 모니터링과 1년 단위 심도 있는 전문가 평가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구성

- 이행점검·평가 제고를 위해 농어촌영향평가 운용 내실화 등 실시

※ 이외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이후 협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협의제도'로 신뢰성 제고

○ (환류 체계) 이행점검·평가 결과는 각 부처에 환류하여 반영하고, 삶의 질 지표 등 도출된 결과는 시군구 단위로 공개 발표 실시

Ⅲ 향후 논의 과제

□ 법률 정비방안(안)

- (현황) ①위원회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법」, 「농어업인 삶의질법」으로 구분된 법령체계에 근거하여 운영, ②농어업·농어촌 관련 국가 기본계획이 부처 개별적으로 수립·관리* 중
- *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해양수산법에 따른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 등이 존재하며, 이 밖에도 농어업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정계획은 종류와 대상이 다양함
- (문제점) 법령체계의 분절적 설계와 농어업·농어촌 관련 국가 기본계획의 중복 수립으로 종합적인 정책 수립·조정 한계가 존재함
- (개정방향) 농어업위 근거법령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법률안으로 포함하여 정책조정 문제점을 개선하고 농어업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법 개정방향(안)

- ① "농어업위가 「농어업·농어촌 관련 국가장기발전계획」수립한다."
- ② "농어업·농어촌 국가장기발전계획은 부처별 법정계획을 수립하는데 근거가 된다."
- ③ "관계기관은 농어업·농어촌 국가장기발전계획의 농어업·농어촌 정책환경과 정책방향에 근거하여 국가법정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한다."
- ④ "농어업위는 농어업·농어촌 국가장기발전계획의 달성을 위해 관련 국가법정계획의 적정성 심의와 관련 사업의 정책평가를 수행한다." 명시
- ⑤ 농어업위에 설치되는 삶의질정책국과 삶의질정책과가 과거 삶의질위의 실무위원회를 대체한다는 사항을 포함

참고 1

농어업위, 삶의질위원회 조직 현황

< 농어업위 현행 >



< 삶의질위 현행 >

※ 삶의질위 별도 사무국 부재



※ 삶의질법 제8조 1항에 의거하여 5년마다 복지실태조사 수행 담당

참고 2

농어업위 사무국 조직개편(안) 세부내용

구분		기능	소요정원 계
기획총괄과		- 예산, 인사, 회계 등	7명
정책 지원국	미래 전략과	- 농어업·농어촌 관련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 주요 부처의 법정계획 간 조정 - 미래 아젠다 발굴(신기술, 농정전환) 및 안건개발 - 대통령실 정기보고 사항 점검 및 지시사항 대처	6명
	농어업 정책과 (산업)	- 분과위 및 특별위 지원 운영 기능 - 분과별 성과점검 사항 지원 및 보고	6명
	농어촌 정책과 (공간)	- 분과위 및 특별위 지원운영 기능 - 분과별 성과점검 사항 지원 및 보고	7명
	농수산 식품과 (상품)	- 분과위 및 특별위 지원운영 기능 - 분과별 성과점검 사항 지원 및 보고	6명
삶의질 지원국	삶의질 정책과 (사람)	- 삶의질 분과 및 특별위 지원운영 기능(보건복지, 교육 등) - 분과별 성과점검 사항 지원 및 보고	7명
	연구기획과 (시행-전)	- 농어업·농어촌 관련 중장기발전계획 연구 기획 - 삶의질, 농어촌복지 및 서비스 등 기본계획수립 기획 - 지역개발, 농어촌서비스 기준설정, 농어촌영향평가 기획 - 부처별 시행계획 사전협의 및 조정(연계·적절성)	6명
	정책분석 평가과 (시행-후)	- 삶의 질, 농어촌복지 및 서비스 시행계획 점검 및 평가환류 - 현장 모니터링 및 정책 현안과제 발굴 - 전문기관의 조사시행 및 결과분석 - 부처별 이행계획 성과점검 및 개선사항 안건 상정	6명
대외협력과		- 지방·농어촌 소통 및 협력기능 - 국회 등 대관 협조 및 지원기능 - 정책홍보 및 지방기구(조직) 협력	5명
인원 합계(단장1인, 국장 2인, 비서1인 포함)			60명

참고 4 「농어촌 삶의 질 지표 개선 및 운영체계 구축」 보고서[요약]

I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가발전에 비해 국민이 느끼는 삶의 질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도시에 비해 농어촌지역의 현실은 더욱 열악한 상황**

*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지출은 OECD 38개 가입국 중에서 35위이며, OECD 기준 Better Life Index(BLI) 종합순위는 30위(OECD, 2018)

** 군지역은 환경분야를 제외하고 시·구 지역에 비해 모든 부문이 낮은 것으로 평가(KREI, 2013)

- 정부는 '04년 FTA협정 발효를 계기로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삶의 질 위원회 및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

- 삶의 질 기본계획은 1차('05~'09) 계획수립 이후로 현재 4차('20~'24) 계획이 운영 중이지만, 농어촌의 현실은 소득, 일자리, 정주여건 등 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며 인구소멸, 지역소멸 등 새로운 위험에 봉착

- 농어업 및 농어촌 사회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도출하기 위해 과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지표·지수, 통계 기반 구축과 체계적인 평가 필요

- 각 기관에서 다양한 통계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농어촌 주민의 소득, 삶의 질 등을 적기에 보여주고 기본계획 등 정책과 연계된 지표는 미흡한 상황

< 현행 농어촌 삶의 질 관련 조사 및 종합 지표 부재 >

조사 구분	내용
농어업인복지 실태조사 (농진청)	▶ 농어업인의 복지 등 관련한 10개 부문* 실태조사 * 경제활동, 문화·여가, 교육, 지역사회 및 공동체,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등
정주만족도 (KREI, KMI)	▶ 농어촌 삶의 질 향상 4대 부문에 대한 도시·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조사 * 보건의료·복지, 교육·문화, 정주여건, 경제활동
농어촌 서비스기준 (KREI)	▶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4대 부문, 19개 항목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평가

통합적
관점에서의
지표 생산
체계 부재
↓
구축 필요

1. 기본방향

□ 구축목표 및 방향

- 농어촌 삶의 질 지표·지수를 구축하여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관리하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정책 근거 자료로 활용·평가될 수 있도록 함

□ 기본원칙

- ① (신뢰·지속가능)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통계로 구축
 - 구축된 지표·지수가 지속해서 수집·정리될 수 있도록 기존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② (정책 포괄성) 농어업·농어촌 삶의 질 기본계획 영역을 포함
 - 삶의 질 기본계획의 대분류 정책영역을 참고하여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포괄성 측면에서 삶의 질, 만족도, 행복도 등 추가 검토
- ③ (단순성) 지표, 지수 구성 시 많은 통계를 포함하지 않도록 함
 - 정책 효과성과 연계해 영역 구분 방법과 영역내 지표 규모는 어느정도가 적절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
 - 몇 개의 단순한 지표 항목으로 구축하여 지수화로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구축
- ④ (개방성) 사회 및 정책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촌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도시집중 문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역별 격차, 기후 위기 등 사회적 위험과 변화를 경험 중이며, 이를 반영한 지표·지수 체계 구축이 필요

2. 농어촌 삶의 질 지표 · 지수 구성(안)

□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구성을 위한 영역 및 항목

- 농어촌 삶의 질 지수는 5개 분류를 기반으로 19개 세부지표 도출
 - 5개 분류는 ①경제 ②보건·복지 ③환경·안전 ④문화·공동체 ⑤지역회복으로 구분
 - 분류 영역은 핵심지표와 일반지표로 구성
 - 핵심지표는 각 분류 영역에서 1개씩 선정하여 총 5개로 구성
 - 일반지표는 각 분류 영역별 지수화 시 활용

※ 핵심지표

- ① 경제 분류는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을 핵심지표로 선정
: 농어촌 주민의 삶, 생활 수준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것은 소득 관련 지표이나, 현재 시군구별로 발표되고 있는 지표가 부재하여 동 변수를 대리 변수로 활용
- ② 보건·복지 분류는 '자살사망률'을 핵심지표로 선정
: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상단에 위치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며, 중고령층과 노인의 자살률이 높은 상황임. 특히 농촌지역은 고령인구가 도시에 비해 높으므로 조치가 필요
- ③ 문화·공동체 분류는 '삶의 만족도'를 핵심지표로 선정
: 지역 내 주민 삶의 질과 지속적인 거주 의사 결정을 판단함에 있어서 활용 가능
- ④ 환경·안전 분류는 '빈집'을 핵심 지표로 선정
: 지역 내 빈집은 주거 또는 생활환경과 주변 경관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개선 및 관리 지표로 활용 가능
- ⑤ 지역회복 분류는 '합계출산율'을 핵심 지표로 선정
: 합계출산율은 지역의 소멸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며, 농어촌 사회에 있어서 여성인구의 생활과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측정 가능한 지표

□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관련 가중치 부여 방식

- 지수화 시 구축된 지표들의 서로 다른 측정 단위를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각 지표들의 값을 표준화하는 과정이 필요함
- 합산하는 과정에서 가중치 부여 방법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각 지표가 모두 같다는 가정하에 '동일 가중치*'로 진행

* OECD BLI(Better Life Index) 지수에서 적용

< 농어촌 삶의 질 지수 세부지표 >

분류	세부지표	정의	측정단위
경제	1인당 지역내 총생산 (Key Indicator)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지역내총생산(GRDP)은 시군구 별 주민등록인구로 나누어 산출	시군구
	고용률	만15세이상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시군구
	천명당 사업체 수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인구 대비 지역 사회 사업체 수	시군구
	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	시군구
보건· 복지	자살사망률 (Key Indicator)	해당 지역 내 자살사망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인구 십 만 명당)	시군구
	기대수명	특정 연도의 0세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	시군구
	긴급복지지원건수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건수	시군구
	보건복지예산비율	지자체 당해연도 전체 예산중 보건 및 복지예산이 점 유하는 비율	시군구
문화· 공동체	삶의 만족도 (Key Indicator)	지역 주민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	시군구
	문화여가 시간	주당 평균 여가활동 시간	시군구
	사회적 네트워크	도움이 필요할때 지원받을 수 있는 친척, 친구가 있는 비율	광역
	가사분담비율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비율	광역
환경· 안전	빈집(Key Indicator)	빈집(=주택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시설)비율	시군구
	인구만명당 5대 주요 범죄 발생건수	지역에서 발생하는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발생 건수	시군구
	하수도보급률	총인구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통해 처리되는 하수 처리구역 내 하수처리인구의 비율	시군구
	주민 1인당 생활계폐기물 처리량	주민 1인당 배출하는 생활계폐기물의 처리 양	시군구
지역 회복	합계출산율 (Key Indicator)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시군구
	인구순이동	인구 전입에서 전출을 제외한 인구 : 하위지표로 연령 혹은 성별 순이동수 고려	시군구
	교통접근성지표	집계구 중심에서 서비스 시설까지 승용차 또는 대중교통 등을 시간대별로 측정하여 지표화(생활시설)	시군구

III 향후과제

□ 모니터링 방안

- (필요성) 농어촌 삶의 질 지수를 운영·관리하고 농어촌 지역 사회 환경 변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
 - 지표 생산 주기 및 시점과 지표 영역의 필요에 따라 수정·보완
- (검토위원회) 경제,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환경·안전, 지속가능의 5개 영역별로 일정 규모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지수(표)검토위원회' 운영
 - * 통계개발원은 '국민 삶의 질 지표'의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영역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지표검토위원회'를 운영 중
 - 농어촌 삶의 질 지수는 시군구별 평가로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자문단으로 구성
 - * 지역 공무원, 지역 대학교수, 지방연구원 등
- (법적근거) 모니터링을 공식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농어업인삶의 질법」에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개발과 활용에 관한 조항 신설
 - 지수(표)검토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항을 설치함으로써 지수(표)의 개발, 공표, 활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 제시
 -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등 관련 법을 기반으로 통계 수집, 관리 및 공표 등의 기능 수행 중

□ 지수 평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 농어촌 삶의 질 지수가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연계 방안 모색

□ 평가 연계 방안

- (필요성) 삶의질 기본계획 시행계획 점검·평가를 위해 과제별 성과 지표체계를 구축하여 평가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필요

- (연계방안) 제5차 삶의질 기본계획부터 농어촌 삶의 질 지수를 평가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는 평가를 위한 지표뿐만 아니라 정책과제로 '청년지표' 개발이 포함되어 있음

□ 법적 및 통계적 실효성 확보 기반 마련

- 농어촌 삶의 질 지수가 안정적으로 운영·지속되기 위해서는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법」에서 통계수집·관리, 모니터링 등에 관한 법적 명시 필요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등에서는 관련 법에 통계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음

□ 후속 과제 「농어촌 삶의 질 지수 예비조사 및 모니터링 모델 마련」 추진계획

- 19개(+a) 세부지표별 조사 및 분류별 지수화(9월까지)
 - 예비조사 중 필요에 따라 일반지표 수정 및 추가 가능

참고

농어촌 삶의 질 지수 세부지표 항목의 활용사례

분류	세부지표	활용사례(국내외)	활용사례(농어촌)
경제	1인당 지역내 총생산 (Key Indicator)	UN 행복지수, OECD BLI, 사회지표, 지역사회조사, 국회행복지표	복지실태조사
	고용률	OECD BLI, 사회지표, 지역고용조사	
	천명당 사업체 수	균형발전지표, 국회행복지표	
	재정자립도	균형발전지표	
보건·복지	자살사망률 (Key Indicator)	OECD BLI, 사회지표, 한국사회조사(자살생각), 국회행복지표, 지역안전지수, 국민삶의질지표	복지실태조사
	기대수명	UN 행복지수, OECD BLI, 사회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긴급복지지원건수	보건복지부 행정 DB, 균형발전지표, 국회행복지표	
	보건복지예산비율	균형발전지표	
문화·공동체	삶의 만족도 (Key Indicator)	UN 행복지수, OECD BLI, 사회지표, 지역사회조사, 균형발전지표	복지실태조사(행복), 정주민족도
	문화여가 시간	OECD BLI, 한국사회조사, 지역사회조사	복지실태조사, 서비스기준
	사회적 네트워크	UN 행복지수, OECD BLI, 한국사회조사, 국민 삶의 질 지표	복지실태조사, 정주민족도
	가사분담비율	한국사회조사	복지실태조사
환경·안전	빈집(Key Indicator)	OECD BLI(주거의 질), 균형발전지표	
	인구만명당 5대 주요 범죄 발생건수	OECD BLI, 한국사회조사, 지역사회조사, 국회행복지표, 지역안전지수, 국민삶의질지표	복지실태조사, 서비스기준, 정주민족도
	하수도보급률	균형발전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복지실태조사, 서비스기준
	주민 1인당 생활계폐기물 처리량	OECD BLI, 한국사회조사, 국회행복지표	복지실태조사, 서비스기준, 정주민족도
지역회복	합계출산율 (Key Indicator)	OECD 사회지표	
	인구순이동		
	교통접근성지표	KTDB 국가교통 DB	복지실태조사, 서비스기준, 정주민족도

